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연구

2024. 9.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출 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연구』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한국중견기업학회)

김종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24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약

I. 서론

1.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

가. 성장사다리 정책 추진의 의의

- 본 장에서는 성장사다리 정책 추진의 의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이 국민 경제적·정책적으로 중요한 정량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현황을 각각 전체와 10분위 기준으로 살펴 보고 평균적인 상위 규모 기업들을 평균적인 하위 규모 기업들과 비교하여 기업 규모별 부가가치 비중 차이에 대해 확인

- 또한 정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중소기업이 열악하다는 기존의 편견에 대한 증거기반 반증을 제시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우수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육성할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함
- 규모도 작고 생산성도 낮은 중소기업을 규모도 크고 생산성도 높은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나, 규모는 작으나 생산성이 우수한 기업을 규모 면에서 성장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
 -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중소기업 정의와 특정 데이터 베이스의 활용에 기반한, 집단 평균 비교에 따른 이분법적 편견의 근거 없음에 대해 논함
-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중견기업으로, 우수한 중견기업이 우수한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경제 내의 자원을 대체 활용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살펴봄

나.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10분위 분석

- 소상공인을 제외한 기업들을 사실상 전수 수준으로 포함하는 한국평가데이터 자료를 기초로 부가가치 지표인 2021년 영업이익 통계를 전체, ROA 분위별로 요약하면 다음에 제시하는 표들과 같음
 - 대기업은 1,605개 기업에서 149조 7천억원, 중견기업은 5,440개 기업에서 79조 4천억원, 중기업은 82,323개 기업에서 63조 9천억원, 소기업은 537,396개 기업에서 23조 5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
 - 평균적인 대기업은 소기업 2,130개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중견기업은 소기업 333개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중기업은 소기업 16개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
 - 산술적으로 소기업 333개를 창출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으로 중견기업 한 개만 창출할 수 있어도 동일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표 1〉 2021년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영업이익 10분위

(단위: 백만원)

2021년	대기업 영업이익	중견기업 영업이익	중기업 영업이익	소기업 영업이익
상위1분위	22,600,000	31,300,000	18,200,000	7,395,323
2분위	68,400,000	16,400,000	16,500,000	8,906,902
3분위	17,900,000	13,000,000	13,200,000	8,527,577
4분위	20,500,000	10,500,000	10,300,000	7,603,582
5분위	15,000,000	7,670,221	8,123,534	6,551,637
6분위	15,400,000	6,358,074	6,484,982	5,315,833
7분위	7,817,005	3,255,616	5,127,085	3,566,750
8분위	-723,294	960,449	3,447,323	-329,651
9분위	-10,700,000	-2,560,445	-1,255,890	-8,905,601
10분위	-6,463,726	-7,446,513	-16,200,000	-15,100,000
합계	149,729,985	79,437,402	63,927,034	23,532,352

주: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의함

〈표 2〉 2021년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기업 수 10분위

(단위: 개)

	대기업 수	중견기업 수	중기업 수	소기업 수
상위1분위	161	544	8,232	53,740
2분위	161	544	8,232	53,740
3분위	161	544	8,232	53,740
4분위	161	544	8,232	53,740
5분위	161	544	8,232	53,740
6분위	161	544	8,232	53,740
7분위	161	544	8,232	53,740
8분위	161	544	8,232	53,740
9분위	161	544	8,232	53,740
10분위	161	544	8,232	53,740
합계	1,605	5,440	82,323	537,396

주: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의함

〈표 3〉 2021년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기업당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대기업당 영업이익	중견기업당 영업이익	중기업당 영업이익	소기업당 영업이익
상위1분위	140,810	57,537	2,211	138
2분위	426,168	30,147	2,004	166
3분위	111,526	23,897	1,603	159
4분위	127,726	19,301	1,251	141
5분위	93,458	14,100	987	122
6분위	95,950	11,688	788	99
7분위	48,704	5,985	623	66
8분위	-4,507	1,766	419	-6
9분위	-66,667	-4,707	-153	-166
10분위	-40,272	-13,688	-1,968	-281
전체	93,290	14,602	777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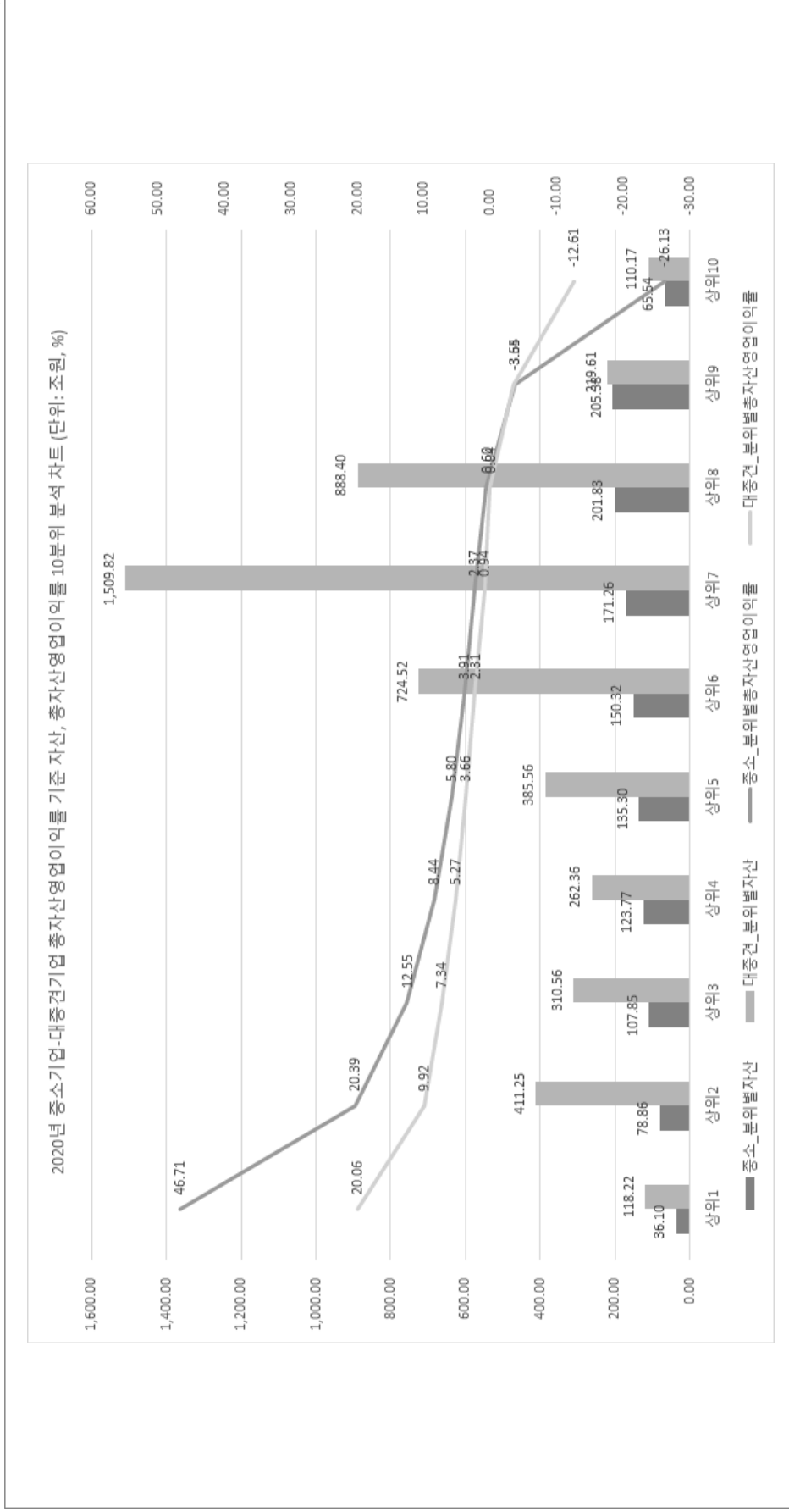
주: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의함

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중요성

- 생산성 하위 중견기업·대기업에 과다 배분된 자원을 상위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배분할 수 있다면, 시장원칙에 맞게 경제 효율성과 부가가치 제고 가능
- 2020년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총자산영업이익률 상위 1분위 중소기업은 36조원의 자산으로 46.71%의 총자산영업이익률(영업이익 16.85조원)을 나타내나, 상위 10분위(하위 1분위) 대기업은 110조원의 자산으로 -12.61%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영업손실 13.89조원)을 시현
- 이해를 위한 단순한 계산 또는 높은 정책 목표로서, 만일 수익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위 1분위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하위 10분위 대기업이 규모를 줄여 자산규모를 맞바꾼다면, 10개 분위 중 1개 분위 맞바꾸기만으로도 부가가치 증가분은 44조원에 달함

〈그림 1〉 2020년 중소기업-대중견기업 총자산영업이익률 기준 자산, 총자산영업이익률 10분위 분석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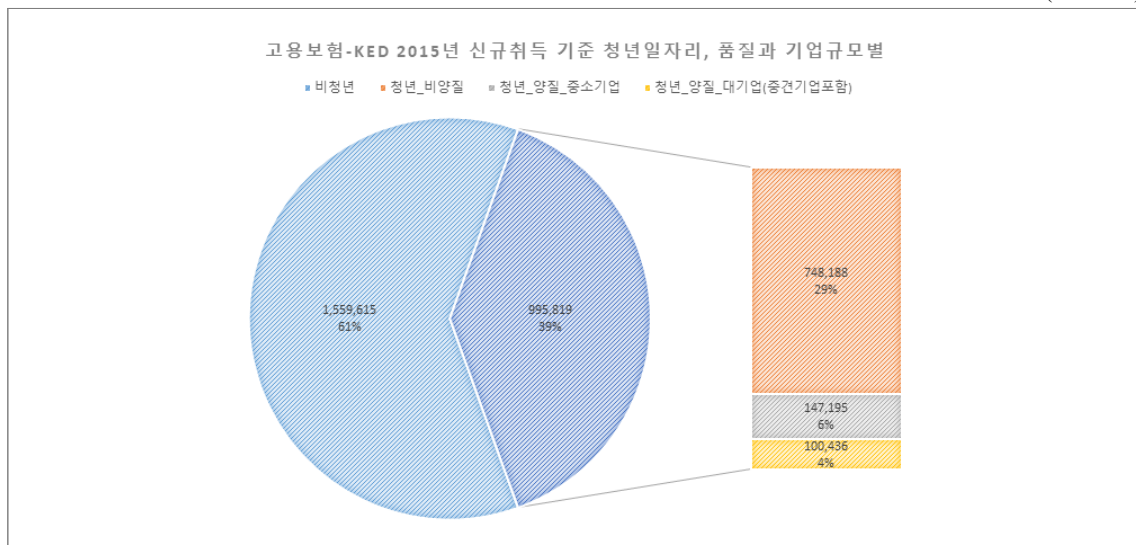


주: 한국평가데이터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분석

- 대·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능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우수함
 - 고용보험-한국기업데이터 결합 데이터에 따르면 대기업의 수는 2.2%에 불과하지만, 피보험자수 비중은 40.5%에 달하며 중소기업은 기업 수는 97.8%에 달하지만 피보험자수 비중은 59.5%에 그침
 - 2015년 신규취득(첫 취업, 이직 포함) 기준으로 청년 양질의 일자리의 40%가 소수의 대·중견기업에서 창출됨

〈그림 2〉 2015년 신규취득 기준 청년일자리: 품질과 기업규모별

(단위: %)



주: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한 경우임
 자료: 장우현(2019)에 의함

2. 역동경제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 역동경제에 있어 기본적 정책 방향은 “현상이 아닌, 변화와 도전을 지원한다” 에 입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기존의 많은 경제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보이는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있어서도 주요 장애요인임
 - 우리 경제의 장점은 개별 주체들이 끊임없이 더 나은 조합을 찾아 빠르게 변화하는 역동성에 있음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도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중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자립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정의상 주목적임에 유의할 필요

- 현재 주요 정책 방향인 역동경제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구축은 중요한 정책적 주제임
 - 우수한 중소기업에 충분한 성장 유인을 제고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은 역동경제의 실현에 있어 주요 과제가 됨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에 있어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재정·금융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SIMS)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소개

-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SIMS)에 결집되어 있음
 - 사업 수행 부처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SIMS)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관련 자료들을 제외되어 있으나, 정부의 직접대출, 보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지원 이력이 SIMS에 결집되어 있음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 본 과제에서는 2017~2023년까지의 SIMS 자료를 확보하여, 신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사실상 보증을 제외하고 전수 확보하여 지원 현황 분석을 진행
 - SIMS 자료 확인 결과, 2021년 기준 4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대출을 포함하지만 보증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아래의 표는 연도별 세부분야별 지원금액의 요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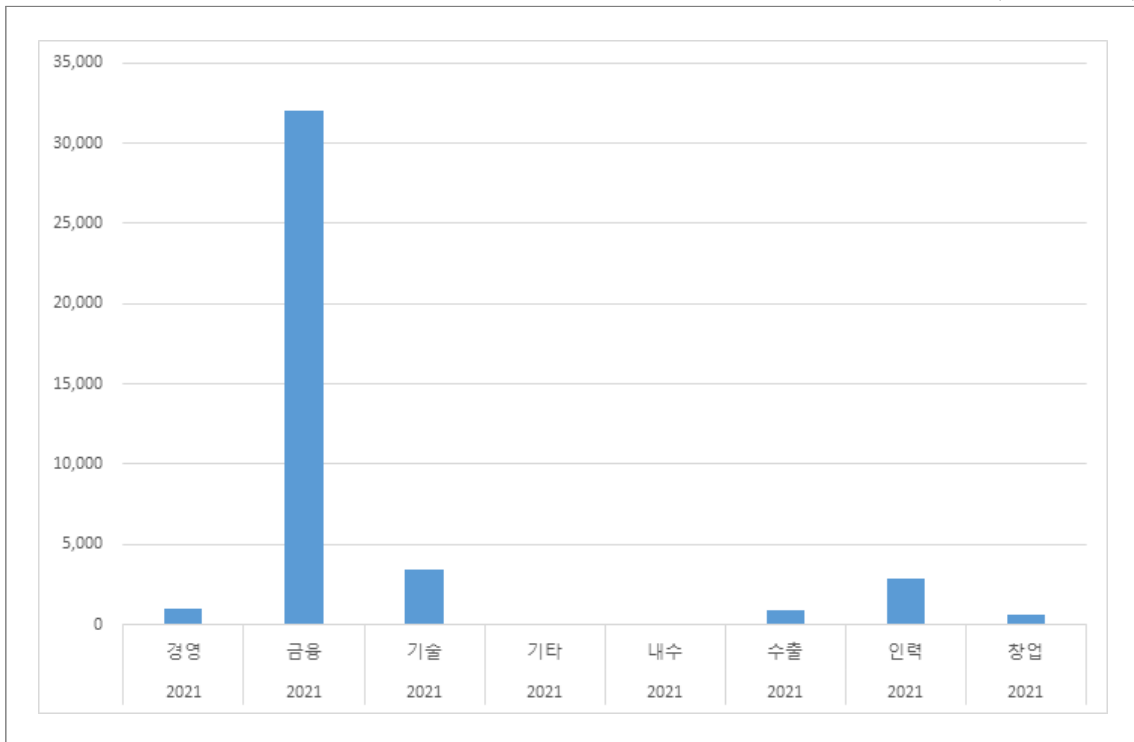
〈표 4〉 SIMS 연도별 세부 분야별 지원금액

(단위: 십억원)

세부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영	220	278	258	816	977	995	1,396
금융	21,829	23,303	24,772	28,813	32,055	28,362	30,477
기술	2,154	2,346	2,311	3,153	3,441	3,403	4,499
기타	5	9	10	56	64	31	35
내수	14	16	11	59	77	209	62
수출	202	166	1,041	1,209	919	689	3,557
인력	323	1,699	1,263	5,317	2,919	1,621	765
창업	232	348	382	614	594	492	603
합계	24,980	28,165	30,049	40,037	41,046	35,803	41,395

[그림 3] SIMS 2021년도 세부분야별 지원금액

(단위: 십억원)



다. 세부 사업별 지원 현황 예시

- SIMS의 세부 사업자료까지 확보한 바, 원하는 세부 사업에 대한 확인과 과학적 평가가 현행으로도 전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
- 1,124개의 세부 사업이 확인되며, 일부 세부 사업은 지나치게 과소하여 사업당 지원금액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어 파편화 성향이 확인됨

라. 조준 분석: 중기업, 수익성-규모별 분석 예시

- 앞서 제시한 SIMS 자료를 기업 생태계 자료인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자료와 연계하여, 실제 정책이 적절하게 조준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함
 -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진 기업들에게 정책이 조준되었는지에 대해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
 - 이를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주요 성장의 대상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10분위와 매출액 10분위로 100개의 셀을 확보하여 기업 지도 및 지원 지도를 확인하였음
- 2021년 기준 중기업 82,823개를 100개 셀로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음: 수익성 상위 1분위에 속하면서 매출(규모) 상위 1분위에 속하는 중기업을의 수는 395개이며 매출(규모)는 상위 1분위이나 수익성이 하위 10분위인 기업의 수는 560개
 - 각 셀별로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

〈표 5〉 수익성-매출 정책지원 2차원 조준 매트릭스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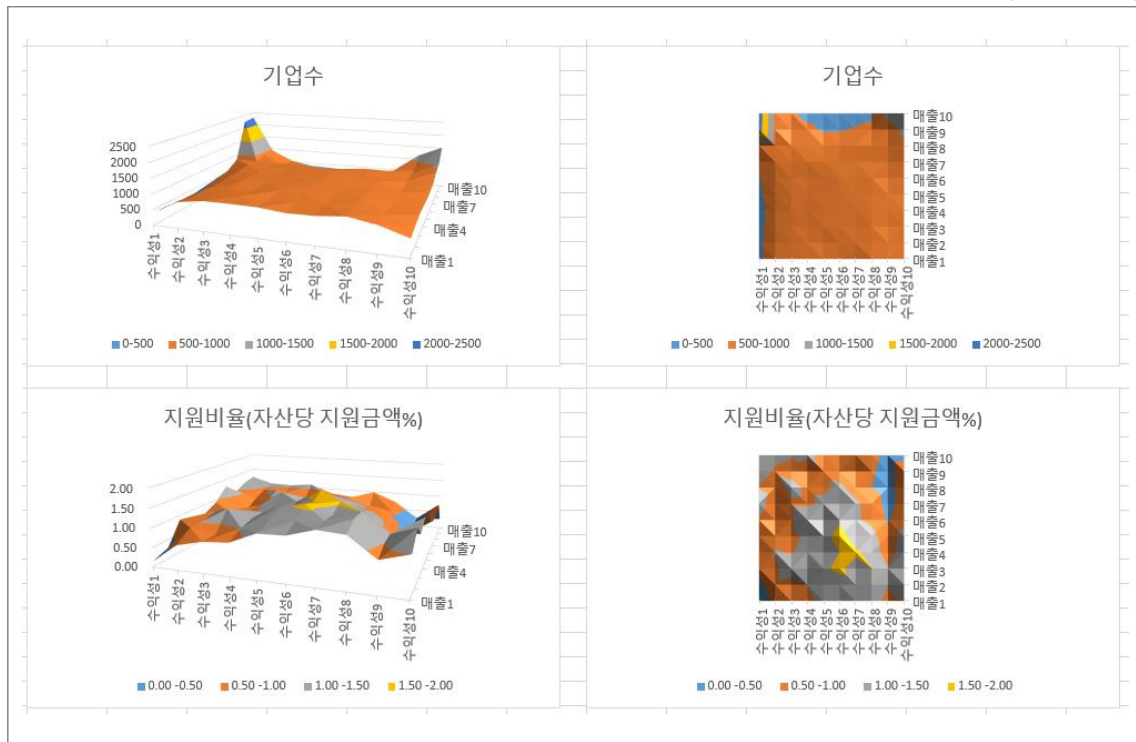
기업수	수익성1	수익성2	수익성3	수익성4	수익성5	수익성6	수익성7	수익성8	수익성9	수익성10
매출1	395	840	960	963	955	873	888	972	826	560
매출2	385	752	896	973	906	948	954	930	845	643
매출3	349	780	885	908	999	981	922	930	774	704
매출4	334	741	912	919	969	979	955	921	805	698
매출5	405	768	903	929	953	987	948	896	789	654
매출6	474	805	885	888	957	989	932	900	719	683
매출7	540	869	866	921	923	916	886	817	751	744
매출8	822	829	789	772	755	782	865	855	807	956
매출9	2240	920	598	577	453	457	535	615	770	1067
매출10	2291	928	538	383	362	320	348	396	1146	1521

- 해당 중소기업들의 총자산 규모는 1,200조원에 달하며, SIMS 지원이력에 따른 지원 금액은 12조원 규모
 - 12조원 규모가 절대적으로는 커보이지만, 지원 기업들의 자산 규모에 대비하면 1%에 그치는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음

- 기업의 규모와 지원비율(자산당 지원금액 %)을 비교함으로써, 조준 대상과 조준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에 적합한 대상들에게 정책이 주로 조준되었는지, 조준된 금액의 수준은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 가능

[그림 4] 수익성-매출 기준 기업분포와 지원분포: 2021년 중소기업

(단위: 개, %)



자료: KoDATA와 SIMS 자료를 연계하여 저자 분석

- 분석 결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대상이 될 수익성이 높은 기업, 특히 수익성과 규모가 모두 큰 기업들이 존재함에도, 실제 지원금액은 집중되지 못해 해당 기업들 중심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만일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면 더 우수한 기업들에게 투자할 것이나, 정부

- 는 상대적으로 수익성과 규모가 높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다수의 지원을 제공
- 복지정책은 개인에게 조준해야 하고 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성장성 기준으로 조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조준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개연성이 높음
- 특히 기업 자산규모 대비 지원액이 과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전적으로도 어렵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

2. 보증 등 SIMS 외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 SIMS 자료의 경우에는 정책금융의 주된 영역 중 하나인 보증사업 규모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해당 통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적 보증의 경우에는 직접대출과 달리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직접 공급하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에 대해 보증하는 정책임
 - 따라서, 지원 기업이 담보물 없이도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책금융의 목적 측면에서 직접대출과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공공부문에는 다양한 보증 정책이 있지만, 규모와 인지도, 중요성 면에서 주요한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기술보증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소상공인보다 소기업과 중기업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함
 - 이에 대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래 <표 6>은 e-나라지표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연도별 지원금액으로 2023년의 경우 세 기관의 총 잔액기준 지원 규모는 134조 3천억원 수준에 달함
 - 보증 규모를 직접적인 보조금 규모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SIMS 기준 2023년 지원규모가 41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소기업 지원 확인에 있어 누락되어서는 안될 지원 규모로 볼 수 있음

〈표 6〉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지원금액
(2017~2023년)

(단위: 조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용보증 기금	44.4	45.5	47.2	55	59.1	61.4	61.8
지역신용 보증재단	19.2	20.5	23	39.4	43.1	46.6	44.6
기술보증 기금	21.3	22	21.8	25.4	26.3	26.5	27.9

자료: e-나라지표

3. 중견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가.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계획서 기준 지원사업

- 제Ⅲ장에서 보다 자세히 중견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다루겠지만, 본 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성과계획서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확인하고 규모를 검토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2023년 기준 1,124개 세부 항목 41조원 규모에 달하는 데 비해, 명시적 중견기업 지원사업은 2024년 기준 15개 항목 405억원에 그치는데 이는 금액 측면에서 SIMS 기준 중소기업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전 부처의 지원사업을 합친 것이고 중견기업 지원은 산업부 중견국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간극 차이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재정·금융 차원에서 큰 지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재정 배정은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Ⅲ. 중소기업·중견·대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분석

1. 기업의 성장 경로 및 특성

가. 현행법상 기업의 성장단계

- 우리나라의 종래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류는 통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왔음
 -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업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법적 의미를 갖지는 못하였음
 - 그러던 「중견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중견기업의 법적 개념이 정립되었으나, 중견기업법이 한시법이었던 관계로 중견기업의 법적 지위는 다소 모호한 상황이었음
 - 따라서 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최근 「중견기업법」이 상시화되면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구분되는 법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음
 -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2005년 8월에 발의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되면서 시작되었음
 - 당시 조사 결과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등은 전무한 상황이었음
 -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견기업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동 법률안은 중견기업이 R&D투자 확대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였음
 - 그러나 당시에는 (i)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ii) 중견기업에 대해서 신

규로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iii) 중견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자율 및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친화적인 기업지원정책과의 부조화 우려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

- 중견기업이 법률상 용어로 등장한 것은 2011년 「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서임
 - 산업발전법 개정 전까지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중소기업을 벗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속하는 기업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
 - 산업발전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적으로 5년간 조세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4년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중견기업이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이었음
 - 당시 글로벌 경영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발전법」상 규정만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중견기업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진 법으로서,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음
 - 법 제정 당시에는 국내 기업 생태계를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기업 군을 충분히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점까지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이후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23년 4월 18일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명시되어 있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었음

□ 「중견기업법」이 상시화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는 구분되는 명확한 법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음

□ 정리하면, ‘중소기업 → 대기업’의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으나, 2023년 중견

기업법이 상시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의 3단계 구분이 현행법상 기업의 성장단계라고 할 수 있음

나. 기업의 성장단계별 적용 법률의 개요

□ 기업의 성장단계를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구분할 때, 각각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표 7〉 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준 및 적용 법률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주요 제외대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기준 조건	4개 모두 충족(AND)	4개 중 1개 충족(OR)	2개 중 1개 충족(OR)
규모 기준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이하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보험 및 연금업 제외)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소속회사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독립성 기준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② 「공정거래법시행령」 제 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법인(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제외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 제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2)

-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법률들이 존재하며, 중견기업의 경우는 특별법인 「중견기업법」만이 존재하고 있음
-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정의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중견기업법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 그러나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도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다소 복잡한 측면도 존재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법적 정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다. 중소기업의 정의 및 적용 법률

(가)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상 (i) 규모기준과 (ii)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 규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평균매출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간주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종전에는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로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 3년 평균매출액을 단일기준으로 채택하였음. 기존의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의 투입지표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

적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활동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매출액 지표로 변경됨

- 다만,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 자산총액은 (i)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하고, (ii)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분할,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규모기준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경우라 하여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음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국내총생산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2024년의 경우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기업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는 2020년 2,284개에서 2024년 3,318개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버금가는 큰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모법인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

- 유하고 모법인의 임원과 합하여 최대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이때 최대출자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합산하여 판단함
- 직접적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소유하는 경우(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에도 적용됨
- 다만,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함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와 합산한 규모기준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 개별 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업 제도가 마련되었음
 - 관계기업제도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지배·종속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다만,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고, 관계기업에 속한다고 하여도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었던 세제, 자금, 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
 - 다만, 다음 사유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음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을 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 ③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④ 유예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당초 3년이었으나,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5년으로 연장되었음

(나) 중소기업 적용 법률

- 중소기업중앙회의 분류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법률은 헌법 외에 총 20여개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
- 우리 「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199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범위 및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관련 법률 현황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은행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중소기업사업전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3. 유통산업발전법
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6.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9. 도시형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20.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의 범위 및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방향

- 중소기업의 범위 및 기본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기본 방향성에 대해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가 행하여야 할 중소기업 관련 시책

- 「중소기업기본법」
 -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위한 시책(제5조)
 - 경영합리화와 기술향상을 위한 시책(제6조)
 - 판로확보를 위한 시책(제7조)
 -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제8조)
 - 중소기업의 구조전환에 필요한 시책(제9조)
 - 중소기업과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시책(제10조)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시책(제11조)
- 공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시책(제12조)
- 중소기업자의 조직화를 위한 시책(제13조)
- 국제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제14조)
-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시책(제15조)
- 소기업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시책(제16조)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제17조)
- 금융 및 세제지원을 위한 시책(제19조)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제19조의2, 제20조)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20조의2)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제20조의3)

라. 중견기업의 정의 및 적용 법률

(가) 중견기업의 정의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의미(제2조 제1호)
 - 즉, 동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i) 규모기준 및 (ii)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iii) 공공기관 등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규모기준에 따른 중견기업의 범위
 - 규모기준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말함
 - 구체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i)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ii)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중견기업에 해당됨

- 이러한 기준들은 「중견기업법」에서 따라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즉,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함

- 중견기업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독립성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독립성 기준에 따른 중견기업의 범위

-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기업과의 관계(독립성)를 고려하여 중견기업에 포함시키거나, 중견기업에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음

- 먼저 매출규모 등 규모기준으로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대출자자(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산)인 기업의 경우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또한, 관계기업과 합한 규모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견기업으로 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나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 중견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규모라 할지라도,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으로서, 이에 속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아울러 (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도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 기업 유형에 따른 중견기업의 범위

- 「중견기업법」은 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과 관계없이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 (i)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ii)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iii)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iv)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v)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가 이에 해당함

(나) 중견기업 적용 법률

-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i) 중견기업의 범위 및 특례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과 (ii)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로 구분할 수 있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범위를 상술한 바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각종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중견기업자의 책무

제5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제6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제6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7조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8조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9조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제10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 제11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제12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 제13조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 제14조 대기업인 이력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 제15조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 제15조의2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 제16조 중소기업 음부즈만에 관한 특례
- 제1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2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3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4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5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6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7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8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 제18조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 제19조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 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제21조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 제22조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제23조 전문기관
- 제24조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 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 제25조의2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 제26조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27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 제28조 인식개선 등

제28조의2 중견기업 주간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과태료

□ 기타 개별 법률

- 「중견기업법」 외에 개별 법률에서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들이 다수 있음
 - 예를 들어 「대외무역법」 제8조의2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출확대를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기준으로 할 때(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견기업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함) 대략 26여개의 법률이 존재함

중견기업 관련 법률 현황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관세법
3. 국가전력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8.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9. 대외무역법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무역보험법
1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13. 발명진흥법

1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 산업발전법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소득세법
19.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 신용보증기금법
21. 여신전문금융업법
2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3. 조세특례제한법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5. 지방세특례제한법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마. 대기업의 정의 및 적용 법률

(가) 대기업의 정의 및 범위

- 대기업의 법적 정의 및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중견기업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상술한 바와 같이 「중견기업법」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기준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많은 법률들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를 규정하면서, 대기업의 기준을 종업원 수 또는 자산규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방위산업발전법」에서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

로 보고 규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규제를 하고 있음

- 「중견기업법」이 한시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법상 기준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별 법률들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 중소기업과 규제대상 대기업을 분류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짐

- 정리하면 대기업을 정의 및 범위는 (i) 「중견기업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 (ii)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위한 개별법상의 분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나) 대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 본 연구의 경우 기업의 성장단계별 차등규제가 주된 연구테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종업원 수나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포괄하여 대기업 관련 법률 및 규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개별 법률에서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근로자 수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음

〈표 8〉 법률별 대기업 분류기준

법률	대기업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 3% 이내 건설업자
고령자 고용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정책 기본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공정거래법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표 8〉의 계속

법률	대기업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투자일임재산 5천억원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업협동조합법	자산총액 1,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뉴스통신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방송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방위산업발전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투자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보험업법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소프트웨어진흥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법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생협력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생계형 적합업종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신문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용정보법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신탁법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표 8〉의 계속

법률	대기업 기준
연구실안전법	상시연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외부감사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은행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이러닝산업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인터넷방송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인터넷전문은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임금채권보장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자본시장법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장애인고용법	근로자 300명 이상
전기공사업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전기사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자금융거래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신건강복지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지방계약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방대육성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체육시설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하도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이처럼 많은 법률에서 대기업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차등규제 현황 분석

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규제 변화

(가) 개요

-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관련한 법률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그 결과 2024년 현재 중소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둔 법률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률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률들이며, 따라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는 주어지지 않는 특례들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일 때 지원받았던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려하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로 지적되는 것이 조세혜택, 금융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공공조달의 특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졸업을 5년간 유예하고 있음
 - 「중견기업법」 및 기타 법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견기업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받던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규제가 증가하고 있음

(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규제변화의 현황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i)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그 지원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와 (ii) 지원조치가 중단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i) 지원조치가 연장되는 경우는 「중견기업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지원이 연장되는 경우와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외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치가 중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지원조치가 중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후에도 적용되는 지원제도

법률	내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 대기업인 이력사업자 참여 제한의 특례
	-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 중견기업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연구기관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관세법	- 세관검사 비용 지원
	-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특례

법률	내용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등의 혁신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관한 지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기술료 전부 또는 일부의 감면 조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 허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 지원
대외무역법	-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무역보험법	-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 시기 등의 우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공동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발명진흥법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뿌리기업에 중견기업 포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연구인력의 지원 -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산업발전법	- 중견기업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특례 - 특수관계법인과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특례 - 연부납부 기간 특례
소득세법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범위의 특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신용보증기금법	-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 운영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기술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법률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외 다수(이하 생략)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민관협력형 신산업, 기술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투자세액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등 다수(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종료되는 지원제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견기업법이나 개별 법령에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 조치는 종료될 수밖에 없음
- 이하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단되는 지원제도 중에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는 법률의 내용을 (i) R&D 및 기술지원, (ii) 고용 및 인력, (iii) 금융 및 회계, (iv) 세제 및 (v) 공정거래·하도급/판로·수출/입지·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봄¹⁾

1) 이에 대한 내용은 중견기업연구원, 『중견기업 성장에 부담이 되는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 2020.10을 바탕으로 최근 법률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R&D 및 기술지원

지원/규제	법령	내용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가능 * 지원사항: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미취업 이공계 졸업자를 수습연구원으로 채용시 인건비 보조, 연구전담요원의 국내외 연수기관 교육·훈련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비용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중소기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일부 지원 가능
청정생산기술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9조	○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 지원 및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산업융합촉진법 상 중견기업 정의	「산업융합촉진법」 제24조제1항제3호	○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아닌 기업에 산업융합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중견기업의 중소·벤처 인수시 중소·벤처 지위 유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7조의4, 제9조; 「중견기업법」	○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중소·벤처로서의 지원 상실(단, 3년간 유예)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정부출연금 차등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등,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제22조	- 중소기업: 공동수행 3/4 이내, 단독수행 1/2 이내 - 대기업: 공동수행 3/4 이내, 단독수행 1/3 이내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참여기업 연구 개발비 부담기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농림축산식품연구 개발사업운영규정」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차등적용: 대기업(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기업(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복합구성 시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는 40%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지원/규제	법령	내용
	별표2	<p>25%(2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담금(현금) 차등적용: 대기업(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제14조 제10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인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내) 및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시설비(대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기술료 감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기술료 감면 차등 적용: 중소기업 70%(해당 과제 참여 시 80%), 중견 50%(해당 과제 참여 시 60%),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0%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차등 징수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대한 기술료 징수기준 차등적용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농림식품과학기술연구 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기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제5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료 징수(시행령 제13조, 규정 제35조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2. 기술료감면(시행령 제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100%, 중소기업 70%(연구과제 참여시 80%), 중견 50%(연구과제 참여시 60%), 상출제한집단 30%(연구과제 참여기업에 한함)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 시행령 제12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실용화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제3항, 제7조 제6항, 시행령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 지원

지원/규제	법령	내용
항공우주산업 사업자 대상 제한 및 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제12조, 제13조,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6호~제8호, 제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 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소기업, 벤처기업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 실시자에 대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출연금 지급 등) * 법 제12조: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항공우주 과학기술 연구·개발, 항공우주과학기술 관련 전시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장기저리자금과 연구 개발비 등을 지원 * 법 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 허용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가초고성능컴 퓨팅 활성화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나노기술연구개발 지원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육성을 지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통신 연구개발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 예산의 15%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중소기업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 제공 및 자문,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경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

□ 고용·인력지원 및 규제

지원/규제	법령	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 지원대상 범위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12조(별표1)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시행에 있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우선지원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업분류</th> <th>상시근로자 수</th> </tr> </thead> <tbody> <tr> <td>1.제조업</td> <td>500명 이하</td> </tr> <tr> <td>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td> <td>300명 이하</td> </tr> <tr> <td>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td> <td>200명 이하</td> </tr> <tr> <td>13.그 밖의 업종</td> <td>100명 이하</td> </tr> </tbody> </table>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500명 이하	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500명 이하									
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등	○ 사업 규모의 축소,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주가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에게 차등*하여 필요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20.7): 지원 비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20.2월~3월 3/4; 20.4월~9월 9/10) 과 대기업(20.2월~9월 2/3)으로 차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	○ 합법적인 외국인 채용을 위한 제도로서,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규모별 * 채용쿼터를 발표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어업)연근해어업 등, (농축산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이공계 인력 채용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협동조합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원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고용보험법」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16조	○ 중소기업체가 특정 목적(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 양성,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을 할 수 있음(시행령 제9조)										

지원/규제	법령	내용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고용보험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장비 자금 대부규정	○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지원 * 우선지원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업분류</th> <th>상시근로자 수</th> </tr> </thead> <tbody> <tr> <td>1.제조업</td> <td>500명 이하</td> </tr> <tr> <td>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td> <td>300명 이하</td> </tr> <tr> <td>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td> <td>200명 이하</td> </tr> <tr> <td>13.그 밖의 업종</td> <td>100명 이하</td> </tr> </tbody> </table>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500명 이하	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500명 이하									
		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원	「고용보험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 자금 대부규정	○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3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 학습조직화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과 체계적 현장 훈련 등 지원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직업훈련 실시, 시설·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 또는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역고용촉진 지원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제22조,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제5항	○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증설하여 지역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지원/규제	법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기업은 1/3)으로 설정 * 지정기간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 중 30/100에 대해서만 지급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에서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기준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 200명 이하, 그 외 100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 「고용창출장려 금·고용안정장려 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 출산전후 휴가 등의 부여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단, 지원금(근로자 지급* 및 대체인력 인건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차이 *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연간총액: 360만원, 1개월 지급액: 30만원)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한 근로자에 대해 적용) 적용 시 (연간총액: 480만원,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연간총액: 360만원, 1개월 지급액: 30만원) ② 대규모기업(연간총액: 120만원, 1개월 지급액: 1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20만원, 1개월 지급액: 80만원) ② 대규모기업(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30만원, 1개월 지급액: 30만원) - 단,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금융지원

지원/규제	법령	내용
신용보증 (우선)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우선적 보증 대상을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규정 (제3조) -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보증 대상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기술사업자(기술보증)’와 ‘종업원 수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 기업(신용보증)’ 등으로 한정 (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에 대한 최소 보증비율제 도입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제26조, 시행령 제5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의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총 보증금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보험업 포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금융업, 보험·연금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히 이유없이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

□ 세제지원

지원/규제	법령	내용
중견기업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의 개선	「조세특례 제한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가업상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3호 등에서 중견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3천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는 2015년부터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4항에서도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 연구·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당기분) 확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지출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증가분 또는 당기분 방식* 중 선택) * 증가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기업규모별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외 25%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기업 규모별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그 외 0~2%

지원/규제	법령	내용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업유형 등에 따른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중소 30%, 코스닥 상장 중견 25%, 그 외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코스닥 상장 중견 15%, 그 외 10% 한도) × 3}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시행령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배제 또는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중소기업 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경영권 프리미엄)가 있다고 간주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는 것임
결손금의 소급공제의 허용	「법인세법」 제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 결손금의 소급공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결손금 공제한도액의 증액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76조의 13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고 있음 *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 유지, 1인당 시간당 임금 유지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1.12.31.까지) * 공제금액(①+②):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중견기업 취업자에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

지원/규제	법령	내용
대한 소득세 감면의 확대 적용	제30조	<p>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p> <p>*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p> <p>* 과세기간별로 감면 한도액: 150만원</p>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p>○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p> <p>* ①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100분의 100</p> <p>* 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100분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p>
중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의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1항	<p>○ 「조세특례제한법」은 최소한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항목에서 제외</p> <p>*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중견기업 8~9%, 그 외 기업 10~17%</p>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방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5	<p>○ 중소기업만 내일채움공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지원</p> <p>*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수령 시 개인 지방소득세 50% 감면</p>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령 제71조	<p>○ 중소기업이 '18.12.31이 속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5%(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10%, 신성장서비스업 중소기업 7.5%)를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p> <p>*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p>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p>○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p>

지원/규제	법령	내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간 10~19년 : 200억원 한도 - 경영기간 20~29년 : 300억원 한도 - 경영기간 30년 이상 : 500억원 한도 ○ 상속공제 후 7년 이내 사후관리요건(고용유지의무: 평균 기준 총급여액 80%) 미충족 시 상속세 추정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지방세특별제한법」 제102조, 시행령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별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금액의 10%를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20~30%(중소 30%) '18.12.31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 -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과 당기분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분: 40%(중소 50%), * 당기분: 중소 25%, 중견 1~3년차 15%, 중견 4~5년차 10%, 중견(매출 5천억원 미만) 8%, 그 외 2~3%
청년고용증대 기업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별제한법」 제115조의4 제1항, 시행령 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20만원(중소, 중견기업(매출 3천억 미만)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17.12.31까지)
고용창출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별제한법」 제114조, 시행령 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2.31까지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사업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공제: 중소기업 0.3%, 중견기업(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 0.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0.2%) ② 추가공제: 수도권 0.3%(중소·중견기업: 0.4%), 비수도권 0.4%(중소·중견기업: 0.5%)
중소기업 신규 채용에 따른 공제	「지방세법」 제84조의5, 시행령 제85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단,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신고한 달 종업원 수·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월 적용급여액
근로소득증대 기업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별제한법」 제115조의3 제1항 및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7.12.31까지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상 증가하거나 같은 경우 평균임금 증가분의 0.5%[중소/중견(3천억 미만) 1%] 세액공제 ② '17.12.31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0.5% 공제(중소 2%, 매출 3천억 미만 중견 1%)

지원/규제	법령	내용
연결납세법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범위 차등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 시행령 제120조의14, 제120조의17	연결납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 범위는 각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60%로 제한(중소/회생계획 중 연결법인 등 전액) (중소 우대: 중소기업 100%-중견 60%-대기업 60%) *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3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경영가 및 경영가의 친족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경영가 및 친족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50%, 중견40%)를 초과할 것, ③ 지배주주와 친족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 10%)를 초과할 것 (단, 중소기업 간 거래 과세대상 제외) * 중견기업 기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기존 계산식: 수혜법인의 세후이익*정상거래비율의 1/2(중소·중견기업은 정상거래비율) 초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식보유비율 - 개정된 계산식: 수혜법인의 세후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중소: 정상거래비율/중견: 정상거래비율 1/2 초과분/대기업: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5 초과분)*주식보유비율(중소: 한계보유비율 초과분/중견: 한계보유비율의 50% 초과분/대기업:주식보유비율)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시행령 제34조의4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 제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등)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이익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 중소기업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18.12.31(공장신설 시 '20.12.31)까지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시행령 제75조	○ 중소기업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전환전사업”)을 '18.12.31까지(공장 신설시 '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업(동법 제100조 제3항)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4년간 개인 지방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전환전사업을 양도·폐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공장신설시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지원/규제	법령	내용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24조, 시행령 제7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17.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 개인 지방소득세의 100%, 다음 3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4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20.12.31까지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후 7년간(수도권 내 5년간) 100%, 그 후 3년간(수도권 내 2년간) 50% 세액감면 - 합병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는 세액감면하지 않음(시행령 제 60조 제7항)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12.31까지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기술이전 소득·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104조, 시행령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중소·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18.12.31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개인 지방소득세 50% 경감, ○ (제2항) 내국인이 특허권 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 부터 '18.12.31까지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10% 한도(중소기업: 10%,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 취득 시 중견기업: 5%), ○ (제3항)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18.12.31까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25%를 경감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중에서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금 등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제1호 제1항 가목으로 중소기업 혜택 명문화
중소기업 세울불균형 물품 면세	「관세법」 제89조, 시행규칙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제조,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면제
특정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관세법」 제93조 제8호, 시행규칙 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 대상물품: 동식물 번식 및 종자개량 물품, 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외국 원수와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의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물품 등

지원/규제	법령	내용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 '18년 말까지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0.3%(신규상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0.4%) 공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중소기업 우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1,200만원[중소: 3,600만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중소 우대: 중소기업 3,600만원-중견 1,200만원-대기업 1,200만원)
설비투자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 '20.06.30까지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 금액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 가능 ① 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 사업용 고정자산 ② 그 외 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1항, 시행령 제90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개인 지방소득세액 공제 * 중소기업: 1%, 그 외: 0.7% **1. 무주택 종업원 임대를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시설 4.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5. 종업원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경단녀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 중소기업이 경단녀 근로자를 '17.12.31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17.12.31까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 (정규직 전환 1인당 20만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 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3항	○ 상생협력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22.12.31까지),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대기업 1%)

지원/규제	법령	내용
산업수요맞춤형고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시행령 제68조	○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병역 이행 후 '17.12.31까지 복직시킨 경우 복직 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6조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18.12.31까지) * 중소기업: 1%, 중견기업: 0.8%, 대기업: 0.7%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2조, 시행령 제104조	○ (기존) 해외진출기업이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5년말까지 국내(수도권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이전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개인 지방소득세의 100%, 다음 2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①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②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연구·인력 개발 설비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시행령 제57조	○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18.12.31까지) * 중소기업: 0.6%, 중견기업: 0.3%, 대기업: 0.1%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시행령 제64조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 ('19.12.31까지) * 중소기업: 0.6%, 중견기업: 0.3%, 대기업: 0.1%
환경보전시설 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시행령 제65조	○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 ('19.12.31까지) * 중소기업: 1%, 중견기업: 0.5%, 대기업: 0.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시행령 제66조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 ('19.12.31까지) * 중소기업: 0.7%, 중견기업: 0.5%, 대기업: 0.3%

지원/규제	법령	내용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지방세 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1항, 시행령 제5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향상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 ('17.12.31까지) * 중소기업: 0.7%, 중견기업: 0.5%, 대기업: 0.3%
안전설비 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 시행령 제6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설비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 ('17.12.31까지) * 중소기업: 0.7%, 중견기업: 0.5%, 대기업: 0.3% **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3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개인 지방소득세액 공제('19.12.31까지) * 중소기업: 1%, 그 외: 0.7%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 중소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관세분할납부 대상 및 요건	「관세법」 제107조 제2항, 시행규칙 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분할납부 허용 - 대상: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장비 물품, 2. 정부나 지자체 수입물품 3.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 연구기관 등 수입 기술개발 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 물품 4.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는 수입물품 등 - 요건: 1. 부분품이 아닐 것 2. 관세감면을 받지 않았을 것 3.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중소기업 100만원 이상) 3. 덤핑방지 관세나 계절관세 물품이 아닐 것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21.12.31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 세액감면 ○ [기술대여] -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을 '21.12.31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25% 상당 세액감면
상속/증여세 물납 한도 차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장기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지원/규제	법령	내용
	시행령 제70조 제2항	연부연납기간 중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하여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유치 요청 및 통관·유치 해제요청 시 담보제공 의무	「관세법」 제235조 제3항~제5항, 시행령 제2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통관 및 유치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120% (중소 40%) 상당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중소 우대: 중소 40%-중견 120%-대기업 120%)

□ 공정거래 관련 규제

지원/규제	법령	내용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상생협력법 제정
중소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7조의2, 시행령 76조의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31조의2, 시행령 92조의4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대규모유통업자 범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 “대규모유통업자”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또는 대기업 계열사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 포함
과태료 부과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7조(별표3)	○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구입비용 고지 규정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때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

□ 판로지원

지원/규제	법령	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참여 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대기업(「상생협력법」상 대기업, 중견기업 포함)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로 정의 * 적합업종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사실상 확장 자제, 진입자 제, 시장축소 등의 규제로 작동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1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발주시 필요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9조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주식교환, 합병절차 간소화, 컨설팅 지원, 자 금지원, 고용안정지원,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드론기술 포함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 소기업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 른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중소SW기업 품질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 품에 대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 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지 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은 해당 제품을 수 의계약을 통해 구매
녹색제품 구매촉진 지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내·외 판매 지원, 생산·유통·판매 자금 지원, 기업 간 기 술이전 지원, 품질향상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원/규제	법령	내용
		<p>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 등 수행</p> <p>* 녹색제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p>
우수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발명진흥법」 제39조	<p>○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음</p>
중소기업 물류현대화사업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p>○ 중소기업 제조업자가 생산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개선하는 물류현대화사업 추진 시 자금, 지도·연수 및 정보제공 등 지원</p>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5조	<p>○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p>
중소기업 혁신기업에 물기업 포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4조	<p>○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p> <p>* 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3% 이상 2. 매출액 대비 수출액 5% 이상 3. 외국정부,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소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	<p>○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시 중소기업정보사업자에 대한 수주기회 증대 노력 의무</p>
품질인증 중소기업 생산제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	<p>○ 공간정보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해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리기관이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 가능</p>
중소기업자 공간정보관련 창업의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의2	<p>○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지원을 제공</p> <p>*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공간정보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법률·세무·회계 상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p>

나.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규제 변화

(가) 개요

-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지원은 대부분 제외되고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됨
 -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대표적인 예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음
 - 아울러 「상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규제 및 「자본시장법」상 규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그 밖에 개별적인 법률에서 근로자 수, 자산규모, 상호출제한기업집단 여부에 따라 ‘진입 및 영업규제’, ‘소유·지배구조 규제’, ‘고용규제’, ‘시설규제’ 및 ‘차별적 대우’ 등의 규제가 강화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나)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들이 새롭게 적용됨

공정거래법상 규제기준 및 내용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2조	(소유·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1%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
제11조	(공시규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의 신고 의무
제17조	(소유·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의무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18조 2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금지 - 지주회사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상장회사는 30%, 벤처지주회사는 20%) 소유해야 함 -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외의 국내회사 주식 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3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상장회사는 30%, 벤처지주회사는 20%) 소유해야 함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금지
제18조 4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보유 금지
제18조 5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보유 금지
제18조 7항	(공시규제)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와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 의무
제20조 2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함
제20조 3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금지 -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금지 등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제한 등
제20조 4항	(공시규제)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일반지주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 의무
제20조 5항	(공시규제)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의무
제19조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려는 경우 채무보증을 해소
제21조 1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금지
제21조 2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특정 사정에 의해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는 6월 이내에 처분의무
제21조 3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됨
제22조 1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순환출자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됨
제22조 2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특정 사정에 의해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6월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함
제23조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제24조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금융업/보험업은 제외)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25조 1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제25조 2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 허용)
제26조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할 의무 있음
제27조 1항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할 의무
제28조 1항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집단 현황에 대해 공시할 의무
제28조 2항 1호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사항을 공시해야 함
제28조 2항 2호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이나 순환출자 현황 등 공시해야 함
제29조 1항 1호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함
제29조 1항 2호 가목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함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29조 1항 2호 나목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함
제29조 1항 2호 다목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함

(다) 대기업에 대한 상법상 규제

- 상법의 경우 자본금이나 자산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을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하여 그 지배구조 요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음

상법상 규제기준 및 내용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542조의6 2항	(소유·지배구조)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시 요건 0.5% 이상(일반 상장회사는 1% 이상)
제542조의6 3항	(소유·지배구조)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이사, 감사 해임청구권 행사 시 요건 0.25% 이상(일반 상장회사는 0.5% 이상)
제542조의6 4항	(소유·지배구조)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회계장부 열람권 행사 시 요건 0.05% 이상(일반 상장회사는 0.1% 이상)
제542조의6 5항	(소유·지배구조)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 시 요건 0.025% 이상(일반 상장회사는 0.05% 이상)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542조의7 2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자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실시 청구 가능
제542조의8 1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제542조의9 3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일정 규모 이상 거래시 이사회 사전 승인 필요
제542조의9 4항	(공시규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거래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등을 보고하여야 함
제542조의10 1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사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선임
제542조의10 2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등은 상근감사가 될 수 없음
제542조의11 1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2/3 이상이어야 함
제542조의11 2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함
제542조의11 3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등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제542조의12 2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제542조의12 3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이때 상장회사에서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함
제542조의12 4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함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상장사	산하여 3%, 그 외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됨 ②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됨
제542조의12 7항	(소유·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준용함. 이때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 그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
제542조의13 1항	(소유·지배구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
제542조의13 2항	(소유·지배구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제542조의13 5항	(소유·지배구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중에 임명해야 함
제542조의13 9항	(자료제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제542조의13 10항	(소유·지배구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라) 대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

- 「자본시장법」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소유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달리 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상 규제기준 및 내용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28조의2	(고용규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근 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제31조제3항	(소유·지배구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금융위원회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제87조 3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15% 이내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5조의20	(소유·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9조18 1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함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249조18 2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함
제249조18 3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됨
제249조18 4항 1호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제249조18 4항 2호-1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제249조 제2항 4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제249조18 4항 2호-2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제249조 제2항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제335조의13 1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이 신용평가회사주식의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의결권은 해당 한도 내로 제한
제335조의13 2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음
제345조 1항 2호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 또는 회사와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됨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345조 1항 3호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 또는 회사와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등을 해서는 아니 됨
제345조 2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 제3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제345조 4항-1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345조 제1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제345조 4항-2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34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대기업에 대한 기타 법률상의 규제

- 그 외에도 다양한 개별 법률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규제가 필요한 대기업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9〉 개별 법률상 규제기준 및 내용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건설산업 기본법」	시공능력 3% 이내 건설업자	-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음
「고령자 고용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대기업은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 고용에 노력 - 사업주는 매년 고용자 고용현황을 제출 -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명령 - 사업주는 매년 정년 제도의 운용현황을 보고 등
「고용정책 기본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표 9〉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근로자 수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차등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 운용 - 운용능력 및 전문성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공정거래법」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세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음
「근로복지 기본법」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비상장법인의 경우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로 지정
「금융지주 회사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자본감소 및 정관 변경 시 금융위에 사전 신고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지배관계 형성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영리목적 업무 제한 - 다른 회사의 출자지원을 위한 신용공여의 금지 - 비금융지주회사의 신용공여 합계액의 제한 -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 - 비금융지주회사의 부채총액 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4/100 초과소유 금지 - 보유한도 초과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보유한도 초과한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
「금융복합 기업집단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금융위원회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표하는 금융기관 선정 - 내부통제정책 등에 관한 평가 및 점검 -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및 평가, 점검 -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표 9〉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건전성의 확보 - 재정건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자기자본 확충 - 자본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평가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협의체 운영 -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 -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의 조치 명령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위원회 설치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준법감시인 선임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완화(75/10000)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 감사 1명 이상 선임
	투자일임재산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준법감시인 1인 이상 선임
「남녀고용평등법」	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기준 미달 시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감면 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 농업경영체 100%,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0%, 대기업 30%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자산총액 150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아닌 이사 선임 의무 - 상임이사 선임 의무 - 상임감사 선임 의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임조합장 선임 의무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농촌융합산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 등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정하는 경우 사업조정 신청 가능
「뉴스통신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및 계열사의 뉴스통신사 지분 1/2 초과 취득 금지 - 1/2 초과하여 취득 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1/2 초과취득 시 6개월 내에 시정 - 소유제한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부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대주주에게 일정 한도 이상 신용공여하는 경우 금융위에 보고 및 공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징수 기술료 차등부과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표 9〉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방송광고 판매대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과 계열사는 광고판매대행자 지분 10/100 초과 소유 금지
「방송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과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분 10/100 초과 소유 금지 등
「방위산업 발전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연기 또는 조정 등을 권고 가능
「벤처투자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투자 금지 - 창업기획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 금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 금지 등
「산업안전 보건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차등 - 사업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보험업법」	자산총액 1조원 이상	-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 필요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상법」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생협력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대기업 사업조정신청 가능 - 대기업에 대해 확장 자제, 진입자제 등 권고 가능 -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내용 공포 가능 - 특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 의무 등
「생계형 적합업종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공포 - 대기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수산업협동 조합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일정 기준 이상의 조합에 대한 외감법상 감사 의무화

〈표 9〉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신문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 등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1/2 초과 소유 금지 - 일반일간신문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1/2 초과 소유한 경우 의결권행사 불가 - 신문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법」	공시대상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등에 속하는회사가 10%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1인을 임원으로 선임 -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신탁법」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유한책임신탁은 외감법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함
「양식산업 발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양식업 면허 금지
「연구실 안전법」	상시연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안전 관련 업무만 담당토록 해야 함
「영유아 보육법」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부감사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의무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보 파기 등 제한 - 내부회계관리자 1인 선임 - 회사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무 등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및 변경선임 요구권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주식현황 등 증권선물 위원회에 제출의무
「유통산업 발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서 지자체장에게 제출 -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절 점검 및 개선 권고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명령 가능 - 회계감사결과의 공개 등
「은행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은행주식 4/100(지방은행 15/100) 초과보유 제한
「이러닝 산업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 등
「인터넷 방송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 제한

〈표 9〉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인터넷전문은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34/100 이내에서 보유 가능
「임금채권보장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및 용자의 제한 등
「자본시장법」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장애인고용법」	근로자 300명 이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 갖춘 자에 의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전기공사업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을 정할 수 있음
「전기사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전자금융거래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종원원수 300명 이상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음
「정신건강복지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구성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지방계약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지방대육성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 -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서 그 채용실적 공개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요청
「체육시설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 의무
「하도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은 때에는 언제나 ‘원사업자’로 봄 - 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할지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수급사업자’로 보지 않음

〈표 9〉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해양수산 과학기술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기술료 차등 감면 * 상출제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어업 경영체 10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술료 차등 납부 * 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

다. 소결

- 현행 법률상 기준에 따라 기업의 성장단계를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의 3단계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단계별로 법률의 목적에 차이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세제 등의 지원과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 내지는 특례 규정들이 주로 마련되어 있음
 - 대기업의 경우는 경제력 집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 이슈가 주로 문제가 되다 보니,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주로 규제적 관점에서의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중견기업은 새롭게 법적 개념으로 정립 되다보니, 중소기업의 연장선상에서의 지원제도와 함께 사실상 대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기업의 성장이 곧 지원의 중단 및 규제의 강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그리고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단계별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IV. 중소기업 성장지원정책 성과 평가

1. 성과지표별 증거기반 정량정책 성과평가

가. 2017년~2022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증 평가: 중소기업, 전체

- 제Ⅱ장에서 구축한 KoDATA-SIMS 결합 패널 자료를 기초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해당 지원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 평가를 진행
 - 고정효과 패널 모형을 활용하여, 지원기업이 지원받지 않은 유사기업에 대해 총자산영업이익률, 매출 등 성과지표에서 거둔 성과 차이에 대해 분석함

-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전체 평가는 아쉽게도 이전 기간을 분석한 기존 사례에 비해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남
 - SIMS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지원받지 않은 유사기업에 비해 총자산영업이익률이 감소하며 매출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고 있음
 - 장우현 외(2014), 장우현(2017) 등 이전 분석에서는 수익성은 감소하지만 매출이 늘어났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우려스러운 결과

<2기간 정책지원 수익성/규모 영향 추정식 예시>

$$y_{i,t} = \alpha + \beta P_{i,t-1} + x_{i,t-2}\gamma + I_{i,t-2}\delta + \nu_i + v_t + \epsilon_{i,t}$$

$y_{i,t}$: 기업 i의 t-2 연도부터 t연도까지 총자산영업이익률(매출액) 증분

$P_{i,t}$: 기업 i의 t연도 정책지원 여부

$x_{i,t-1}$: 기업 i의 t-2연도의 특성(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 총자산영업이익률)

$I_{i,t-1}$: 기업 i가 속한 산업 I의 t-2연도의 특성

(평균 매출액, 평균 총자산, 평균 영업이익, 평균 총자산영업이익률, 평균연구개발비)

ν_i : 기업고정효과

v_t : 시간고정효과

<표 10> 정책평가 결과: 고정효과 패널모형, 2017~2022, 중기업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L.지원여부	-0.775*** (0.128)	49.95 (65.76)
L2.매출액	-0.000128*** (7.35e-06)	
L2.총자산	9.36e-05*** (5.89e-06)	0.0337*** (0.00295)
L2.영업이익	-0.00142*** (2.33e-05)	-1.413*** (0.0101)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9.77e-05*** (3.68e-05)	0.152*** (0.0189)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1.89e-05 (5.70e-05)	-0.642*** (0.0290)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00157*** (0.000186)	1.849*** (0.0952)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0.00300*** (0.00109)	4.880*** (0.561)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1.170*** (0.0272)	-60.31*** (14.03)

〈표 10〉의 계속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2019.Year	-0.247* (0.144)	-703.6*** (73.77)
2020.Year	-1.081*** (0.148)	-1,116*** (76.02)
2021.Year	-0.724*** (0.163)	252.0*** (83.28)
2022.Year	-1.164*** (0.177)	1,615*** (90.48)
L2.총자산영업이익률		-18.70*** (1.472)
Constant	14.42*** (0.668)	8,245*** (342.7)
Observations	337,677	337,682
R-squared	0.040	0.092
Number of FirmID	87,853	87,85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 위의 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 가능함. 87,000여개의 중기업에 대해 2017~2022년, 각 2기간간 정책평가를 수행한 결과, 지원받은 중기업은 지원받지 않은 유사 중기업 대비 2년 후 총자산영업이익률은 0.775%p 낮고(유의도 0%), 매출액은 증가했다고 볼 수 없음
- 지원기업이 비지원기업보다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은 지난 연구의 결과와 일관적이나,
 - 지원기업이 비지원기업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상당히 특이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에 있어 현재 정책의 성과는 상당히 우려스러움을 의미함

나. 2017~2022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증 평가: 중소기업, 전체

- 중소기업 전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지원기업의 수익성과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지원기업의 성과는 유사한 비지원기업의 성과에 비해 지원 후 2기간 후 총자산 영업이익률 -1.315%p, 매출액 5,800만원 감소로 도출됨

〈표 11〉 정책평가 결과: 고정효과 패널모형, 2017~2022, 중소기업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L.지원여부	-1.315*** (0.0885)	-57.87*** (7.756)
L2.매출액	-0.000329*** (1.58e-05)	
L2.총자산	0.000141*** (1.80e-05)	-0.190*** (0.00151)
L2.영업이익	-0.00813*** (5.88e-05)	-1.914*** (0.00467)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000656*** (0.000143)	0.230*** (0.0126)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00147*** (0.000220)	-0.843*** (0.0193)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00293*** (0.00103)	1.162*** (0.0904)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0.0311*** (0.00521)	-3.595*** (0.456)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920*** (0.0147)	-2.593** (1.293)
2019.Year	0.220** (0.0948)	-190.6*** (8.301)
2020.Year	-1.675*** (0.103)	-424.4*** (8.973)
2021.Year	-1.065*** (0.122)	-184.1*** (10.68)
2022.Year	-1.613*** (0.135)	91.94*** (11.82)

〈표 11〉의 계속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L2.총자산영업이익률		0.0115 (0.106)
Constant	13.70*** (0.615)	3,138*** (53.92)
Observations	2,105,271	2,105,453
R-squared	0.024	0.139
Number of FirmID	727,070	727,15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2. 수익성 · 규모 · 사업별 세부 정량정책 성과 평가

가. 2017~2022년 수익성-규모별 분석(중기업)

- 앞선 결과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수익성 상하위, 매출액 상하위로 중기업을 분류하여 각 세부 분류그룹에서 발생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매출 상하위에 무관하게 수익성이 상위인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수익성이 하위인 기업들에 지원된 경우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강하게 확인됨
 - 수익성이 상위인 경우, 매출이 하위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지원된 경우에는 2기간 후 매출액이 9,400만원 수준 증가함이 확인됨
 - 이는, 전체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수익성이 하위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서 강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줌

- 만일 정책 조준을 개선하여, 수익성이 상위인 기업들에게 정책을 보다 더 많이 조준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개연성이 존재함
 - 수익성이 낮은,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주된 정책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해당 결과는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2〉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o) 영향(중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전기 지원여부	0.112 (0.164)	0.286 (0.315)	-0.990** (0.392)	-0.497*** (0.154)
2기전 매출액	-0.000196*** (9.62e-06)	-0.000847*** (0.000150)	-0.00221*** (0.000123)	-2.08e-05*** (6.81e-06)
2기전 총자산	0.000404*** (1.14e-05)	0.00840*** (0.000169)	-0.000119*** (1.58e-05)	-5.65e-05*** (5.37e-06)
2기전 영업이익	-0.00111*** (2.79e-05)	-0.0478*** (0.000662)	-0.00448*** (0.000184)	-0.00218*** (2.99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4.42e-05 (6.04e-05)	-8.87e-05 (0.000191)	-1.14e-05 (9.29e-05)	-4.74e-05 (3.61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000155** (7.84e-05)	0.000599** (0.000254)	0.000226 (0.000166)	-0.000118** (6.00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000681** (0.000283)	-0.000335 (0.00120)	0.000743* (0.000431)	0.000830*** (0.000210)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00486*** (0.00187)	-0.00173 (0.00396)	0.00165 (0.00322)	0.000597 (0.00100)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629*** (0.0496)	-0.419*** (0.0567)	-0.811*** (0.0728)	-0.325*** (0.0434)

〈표 12〉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019년	-0.997*** (0.189)	-0.319 (0.356)	0.893** (0.408)	0.574*** (0.169)
2020년	-2.240*** (0.206)	-2.407*** (0.396)	2.054*** (0.431)	0.236 (0.178)
2021년	-2.669*** (0.233)	-2.189*** (0.478)	4.388*** (0.490)	1.587*** (0.193)
2022년	-3.912*** (0.267)	-2.917*** (0.539)	5.315*** (0.531)	2.248*** (0.210)
상수	3.454*** (1.066)	5.622*** (2.017)	19.79*** (1.719)	7.120*** (0.847)

관측치수	83,125	82,762	78,895	92,895
결정계수	0.079	0.137	0.030	0.101
기업수	34,950	36,963	37,325	33,630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다음과 같음: *** p<0.01, ** p<0.05, * p<0.1

〈표 13〉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23.72 (150.9)	2기간 매출액	93.90*** (28.17)	2기간 매출액	39.07 (95.69)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전기 지원여부								
2기전 총자산	-0.167*** (0.0104)		-0.0146 (0.00385)		0.122*** (0.00385)		-0.0740*** (0.00615)	
2기전 영업이익	-1.470*** (0.0242)		-1.132*** (0.0615)		-0.563*** (0.0453)		-0.391*** (0.0401)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69.76*** (7.403)		-2.881*** (0.649)		1.486 (1.749)		-8.799 (9.994)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411*** (0.0553)		0.339*** (0.0171)		0.177*** (0.0227)		0.267*** (0.042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701*** (0.0716)		0.0543** (0.0225)		-0.0990** (0.0404)		-1.196*** (0.070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1.651*** (0.259)		-0.428*** (0.107)		-0.328*** (0.105)		2.871*** (0.249)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7.418*** (1.713)		-1.203*** (0.354)		0.721 (0.784)		3.278*** (1.18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151.2*** (45.57)		-51.01*** (5.063)		-22.88 (17.78)		-228.3*** (51.56)	

〈표 13〉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상위 수익성상위		(2)매출하위 수익성상위		(3)매출하위 수익성하위		(4)매출상위 수익성하위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019년	-1,772*** (173.2)	110.6*** (31.64)	95.57 (98.95)	-269.2 (200.3)				
2020년	-2,897*** (188.2)	389.0*** (34.74)	736.2*** (103.5)	-1,002*** (211.0)				
2021년	-1,285*** (212.7)	692.4*** (41.52)	1,701*** (116.3)	1,659*** (228.7)				
2022년	552.7** (244.1)	705.7*** (46.39)	2,242*** (124.7)	4,759*** (249.1)				
상수	13,204*** (982.4)	392.9** (180.8)	968.9** (417.7)	17,621*** (1,005)				
관측치수	83,125	82,764	78,898	92,895				
결정계수	0.167	0.048	0.065	0.032				
기업수	34,950	36,964	37,326	33,630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나. 2017~2022년 사업별 분석(중기업)

-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인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의 정책분류 항목에 따라 경영, 금융, 기술, 내수, 수출, 인력, 창업, 기타로 나누어 중기업 수익성과 매출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였음
 - 분야별 지원 비중은 금융이 대다수이지만, 다른 분야들의 조준 차이와 성과 결과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중기업 대상 평가 결과 전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지만 세부 분야 중 창업 분야는 수익성에서 지원기업의 성과 개선이 확인되며 경영, 기술, 수출 분야는 지원기업의 매출성과 개선이 확인되었음
 - 창업²⁾ 분야의 경우 지원기업이 유사 비지원기업에 비해 1.37%포인트 높은 총자산영업이익률 증가가 확인됨
 - 경영과 기술, 수출 분야에서는 매출 증가가 확인되며 특히 수출 지원의 경우는 지원기업이 유사 비지원기업 대비 4억 9천만원 추가 매출이 확인됨
 - 그러나, 가장 비중이 높은 금융 분야의 경우 지원기업이 유사 비지원기업에 비해 총자산영업이익률이 1.27%포인트 낮아지며, 매출 증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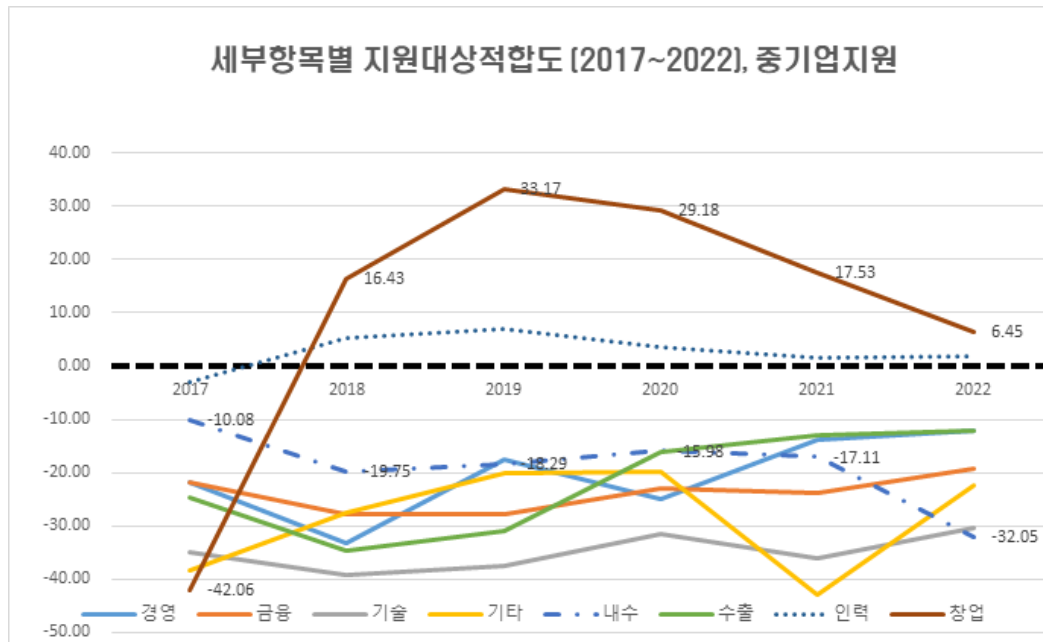
- 고성과 분야의 경우, 수익성 상위 기업에게 지원된 비중이 하위 기업에게 지원된 비중보다 높았던 반면, 금융 등 저성과 분야는 수익성 하위 기업에게 지원된 비중이 높았던 점에 주목할 필요
 - 앞선 분석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성과가 매우 미흡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지원한 정책의 성과에서는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 주목해 볼 때,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진 세부 분야의 성과가 높은 것은 일관적
 - 지원적합도 지표로, 수익성 상위 50% 기업들에 지원한 비중에서 수익성 하위 50% 기업들에 지원한 비중을 차감하여 살펴본 결과 창업은 33.17, 금융은

2) 통념과 달리 중기업의 경우에도 창업기업들이 있으며, 해당 지원은 규모를 갖춘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음

-27.95, 내수는 -32.05으로 확인됨

- 해당 지표의 최댓값은 100, 최솟값은 -100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낼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14〉 지원대상 적합도(100~-100) 세부 분야별, 연도별 변화(중기업)



연도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2017	-21.79	-21.75	-34.97	-38.30	-10.08	-24.73	-3.14	-42.06
2018	-33.17	-27.74	-39.33	-27.41	-19.75	-34.81	5.23	16.43
2019	-17.64	-27.95	-37.65	-20.00	-18.29	-31.05	6.93	33.17
2020	-24.99	-22.90	-31.44	-19.72	-15.98	-16.14	3.58	29.18
2021	-13.75	-23.80	-36.16	-43.02	-17.11	-13.07	1.67	17.53
2022	-12.02	-19.24	-30.49	-22.35	-32.05	-12.01	1.93	6.45

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 정책효과 분석

-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 앞선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해 보기로 함
 - 전체 평가 결과는, 지원받은 소기업은 유사 소기업 대비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유의수준 1%에서 1.52%p 낮고 매출액에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음
 - 이는 앞선 중기업, 중소기업 전체의 정책효과 분석 결과와 일관적인 것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관리에 있어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함의함

〈표 15〉 정책평가 결과: 고정효과 패널모형, 2017~2022, 소상공인 제외 소기업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L.지원여부	-1.519*** (0.115)	4.060 (7.627)
L2.매출액	0.000487*** (2.41e-05)	
L2.총자산	7.74e-05*** (1.62e-05)	-0.0534*** (0.00105)
L2.영업이익	-0.00795*** (9.57e-05)	-3.062*** (0.00455)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000584*** (0.000131)	0.113*** (0.00867)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00193*** (0.000305)	-0.172*** (0.0201)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00717*** (0.00209)	2.484*** (0.138)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0.0190*** (0.00643)	-8.387*** (0.425)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926*** (0.0170)	-3.034*** (1.128)
2019.Year	-0.00651 (0.125)	-202.4*** (8.295)

〈표 15〉의 계속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2020.Year	-2.284*** (0.134)	-361.2*** (8.871)
2021.Year	-1.758*** (0.159)	-253.8*** (10.48)
2022.Year	-2.257*** (0.183)	-92.84*** (12.10)
L2.총자산영업이익률		2.457*** (0.0959)
Constant	10.79*** (0.420)	658.6*** (27.74)
Observations	1,482,268	1,482,377
R-squared	0.014	0.344
Number of FirmID	528,039	528,09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의 경우에도 총자산영업이익률과 매출액 기준으로 4개 분면을 만들어 각 분류별 총자산영업이익률과 매출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에 조준된 정책에서 부정적 효과들이 유의하게 확인되었음
 - 수익성 상위 기업들에게 정책이 조준된 경우 총자산영업이익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수익성 하위 기업들에게 조준된 경우 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의 경우 -1.24%p, 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의 경우는 -0.494%p의 총자산영업이익률 효과가 확인됨
 - 수익성 상위 기업들의 경우 2사분면의 경우 매출액에 있어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성장 지원에 있어서도 수익성 조건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함

〈표 16〉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소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피설명변수(성과지표)				
전기 지원여부	-0.112 (0.132)	-0.592 (0.406)	-1.240*** (0.395)	-0.494*** (0.114)
2기전 매출액	3.09e-05 (3.53e-05)	-0.0173*** (0.00166)	-0.0184*** (0.000840)	5.70e-05*** (1.88e-05)
2기전 총자산	0.00214*** (4.06e-05)	0.107*** (0.00147)	-0.000442*** (3.32e-05)	-0.000125*** (1.52e-05)
2기전 영업이익	-0.00801*** (0.000151)	-0.490*** (0.00641)	-0.0130*** (0.000445)	-0.00947*** (9.55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000749*** (0.000226)	0.000571 (0.000627)	0.000162 (0.000366)	0.000318*** (0.00011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000958** (0.000443)	0.000430 (0.00160)	0.00174* (0.000970)	-0.000193 (0.00025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00358 (0.00327)	-0.000206 (0.0105)	1.85e-05 (0.00590)	0.00926*** (0.0019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0208* (0.0118)	0.0231 (0.0289)	-0.0634*** (0.0140)	-0.0228*** (0.0083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278*** (0.0358)	-0.206*** (0.0755)	-0.881*** (0.0321)	-0.395*** (0.0234)

〈표 16〉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019년	-0.884*** (0.152)	-0.811** (0.401)	1.495*** (0.375)	-0.0387 (0.129)
2020년	-2.437*** (0.170)	-5.753*** (0.477)	1.293*** (0.417)	-1.011*** (0.138)
2021년	-2.419*** (0.208)	-4.656*** (0.616)	3.404*** (0.501)	0.205 (0.160)
2022년	-2.087*** (0.244)	-5.313*** (0.753)	4.284*** (0.585)	1.745*** (0.183)
상수	-6.737*** (0.709)	-3.027 (2.011)	17.92*** (1.100)	5.046*** (0.445)
관측치수	426,045	288,112	386,918	381,193
결정계수	0.023	0.090	0.016	0.053
기업수	207,808	176,372	214,097	162,104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17〉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소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전기 지원여부	10.18		5.237***		22.35*		-29.77	
	(13.88)		(1.997)		(11.84)		(20.26)	
2기전 총자산	-0.166***		0.000343		0.00178*		0.00958***	
	(0.00418)		(0.00754)		(0.000993)		(0.00264)	
2기전 영업이익	-2.994***		-1.670***		-0.103***		-0.897***	
	(0.0125)		(0.0300)		(0.0132)		(0.0175)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0.894***		-0.109***		-0.290***		-0.870	
	(0.347)		(0.0238)		(0.107)		(0.697)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345***		0.0189***		0.0419***		0.186***	
	(0.0239)		(0.00308)		(0.0109)		(0.020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349***		-0.0864***		-0.0305		-0.200***	
	(0.0468)		(0.00785)		(0.0290)		(0.0460)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3.862***		0.331***		0.743***		3.186***	
	(0.345)		(0.0514)		(0.177)		(0.34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3.700***		-0.0985		0.178		-5.261***	
	(1.250)		(0.142)		(0.420)		(1.49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12.54***		-1.271***		-1.567		-23.27***	
	(3.782)		(0.372)		(0.963)		(4.174)	

〈표 17〉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019년	-314.9*** (15.99)	11.79*** (1.969)	42.17*** (11.20)	-241.4*** (22.91)				
2020년	-545.8*** (17.99)	8.221*** (2.344)	91.83*** (12.46)	-421.3*** (24.54)				
2021년	-381.0*** (21.96)	42.34*** (3.027)	152.5*** (14.99)	-143.7*** (28.56)				
2022년	-171.3*** (25.80)	75.26*** (3.705)	218.0*** (17.49)	259.1*** (32.68)				
상수	1,157*** (75.26)	296.8*** (9.840)	92.67*** (32.73)	182.8** (79.10)				
관측치수	426,061	288,153	386,959	381,204				
결정계수	0.443	0.053	0.002	0.021				
기업수	207,813	176,399	214,121	162,112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 다음으로는 소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 분야별 효과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총자산영업이익률은 부정적인 정책효과가 확인되고 매출액의 증가는 크게 확인되지 않아, 중기업 지원과 일관적인 결과가 확인됨
 - 경영, 금융, 기술, 수출, 인력, 창업 등 다양한 지원분야에 있어 총자산영업이익률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확인되는 등 우려스러운 결과들이 확인됨
 - 중기업과 달리 매출액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유의도 높은 증분을 나타낸 경우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분석 결과는 규모 성장에 있어서는 분류별로 중기업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는 점을 함의함

라. 중기업 대분류 산업별 분석

- 다음으로는 중기업 정책효과를 주요 대분류 산업별로 동일한 방법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정책 결과를 도출
- 본 분석의 해석에 있어 유의할 점은, 해당 분석은 해당 대분류 산업 내에서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산업 간 정책효과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임
 - 전반적으로 일관적인 결과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이는 해당 대분류에만 해당하는 결과로 해석할 필요
 - 중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대분류 산업 간의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대분류를 전제한 경우에는 대분류 산업 내의 정책함의만을 도출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V.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수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원수요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조사목적: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발굴
 - 조사시기: 2023년 9월
 - 조사대상: 중소·중견기업 210개사
 - ① 중소기업(2021년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 ② 중소기업(졸업 유예 상태 기업)
 - ③ 중견기업

2. 응답 기업 기초통계

가. 기업규모 유형

- 응답 기업의 기업규모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³⁾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졸업 유예기업(27.6%),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의 초기 중견기업(22.4%), 졸업 후 3년 이상의 후기 중견기업(2.9%) 순

나. 소재지

- 응답 기업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49.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어서 부울경(15.7%), 대경권(11.9%) 순

3) 중견기업에서 회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응답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졸업을 경험한 기업은 없음

다. 수출기업 여부

- 응답 기업의 수출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기업 중 63.8%는 수출기업이었으며, 36.2%는 2022년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 기업규모 유형별로 구분하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은 52.5% 수준이었으며, 졸업 유예기업(62.1%), 초기 중견기업(87.2%) 등 기업규모가 클수록 수출기업 비율이 높아짐

라. 주요 판매처 유형

- 응답 기업의 주요 판매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B2B 기업이 6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주요 판매처가 해외인 기업(16.7%), B2C 기업(12.4%) 순
- 중소기업 중 B2C 기업은 20.2%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B2C 기업 비중이 높았으며, 졸업 유예기업, 중견기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B2C 기업 비율이 감소

마. 영위 업종

- 응답 기업의 영위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도소매업(20.0%), 건설업(7.6%) 순

3.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관련 의견

가. 중소기업 우호적 제도적·정책적 혜택에 대한 인식

-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제도적·정책적 혜택의 존재에 대해, 응답 기업의 81.0%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혜택이 존재한다고 응답

-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에 우호적 혜택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3.7%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졸업 유예기업 중에서는 91.4%가 중소기업에 우호적 혜택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나. 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 우호적인 제도적·정책적 혜택 유형

- 중소기업에 우호적 제도적·정책적 혜택의 유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조세감면이 8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어서 중소기업 정책금융(59.4%),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제 부담(40.6%), 공공조달 참여 기회(32.9%) 순
- 중소기업 조세감면의 경우, 기업규모 유형에 상관없이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중 가장 크게 인식
- 공공조달 참여 기회의 경우, 참여 기회가 혜택이라는 응답은 중소기업 중에서 19.2%에 불과했으나, 졸업 유예기업(47.2%), 초기 중견기업(38.5%) 등에서는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혜택이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 규모별로 인식 차이가 큰 것을 확인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우, 수출기업은 정책금융이 혜택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5.2%였던 데 반해, 내수기업은 48.3%에 불과하여 수출 여부에 따라 정책금융 혜택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다. 중견기업의 적절한 조세감면 수준

- 응답 기업은 평균적으로 중견기업에는 중소기업의 75% 수준에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
-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70.3%, 유예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은 평균적으로 70% 후반대로 인식하여 기업규모별 차이는 있으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70%대에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

-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감면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34.3%,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32.9%로 각각 1/3 정도 수준을 차지

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 차이

- 응답 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규제 차이 중에서 고용 분야의 규제(30.0%)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졸업 유예기업(39.7%)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임
- 영업활동 규제 차이가 크다는 응답은 전체 기업 중에서는 21.0%에 불과하였으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면 3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영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크게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마. 중소기업 성장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 중소기업 성장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모든 기업군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 다만, 졸업 유예기업은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견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규제 차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아 기업규모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 방향성에 다소 차이 존재

4. 요약 및 시사점

- 본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위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업 및 중견기업 등 피터팬 증후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피터팬 증후군 현황을 확인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81.0%는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혜택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조세 감면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정책금융, 규제 차이 순으로 나타남
 - 적절한 중견기업 조세감면 수준은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75%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되었으나, 75%에 응답이 밀집된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이 적절하다는 비율(34.3%)과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이 적절하다는 비율(32.9%)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면서 중간인 75%에서 평균이 형성
 - 규제 분야 중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규제는 고용 분야 규제(3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졸업 유예기업(39.7%)에서 이러한 인식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정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기업과의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조세부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 두 번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졸업 유예기업은 조세부담에 이어 유예기업 확대를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준비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정
 - 반면 중견기업은 조세부담에 이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규제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두 번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조세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서는 재정정책보다는 ‘조세정책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조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으로 안전과 보건 등 ‘고용에 대한 규제’가 나타났으며, 이에 고용 분야의 규제를 중점 점검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불합리한 규제 차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

-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후보군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향후 중소기업 생산성 대책 마련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VI.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중소기업의 중견기업·대기업 성장 시의 인센티브 개선 필요

가. 중소기업 정책 지원규모와 중견기업 정책 지원규모의 격차 완화 필요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정책 설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격차가 크게 설계되어 절벽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향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단계형·연속형 정책설계로 전환할 필요
 - 근로장려금(EITC) 설계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절벽형으로 설계해 왔음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절벽이 존재하는 한 피터팬 효과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바, 계단형-연속형 정책 설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함

- SIMS 기준 중소기업 지원금액이 2023년 41조원, 보증지원규모는 134조원에 달하는 반면, 명시적인 중견기업 지원금액은 2024년 기준 405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SIMS와 보증지원의 포괄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격차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제고하고 중견기업의 성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은 규모에 따라 점감하되 중견기업 진입 시 충격은 되도록 줄이도록 정책 설계를 개선할 필요

나. 중견기업정책의 대상과 규모 조정 필요

- 중견기업정책은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비해 규모나 설계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 외부효과가 높은,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규모는 패키지화하여 지원할 필요
 - 경쟁력이 높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대상을 선정하거나, 파편화하여 지원할 경

우 중소기업 정책과 마찬가지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원샷법)과 같이 성장 및 구조조정 계획을 심의하고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입법단계까지 목표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공급 과잉업종의 기업들이 변화를 추구할 때 변화 계획을 받아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운사이징과 전환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공정거래, 규제 차등화 등의 정책을 기업 신청에 따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음⁴⁾
 - 중소기업을 유지하겠다는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시장 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정책성과를 기대 가능함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장사다리 기능 보완 필요

가. 지원 파편화 개선

- 현재 중소기업 정책 지원 조준을 평가한 결과, 사업의 수와 지원기업의 수가 과도하여 실제 지원금액이 파편화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을 기대하기 힘든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 적절한 규모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은 정량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의 선택과 집중도를 개선하여 지원 파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1년 소기업 1개당 지원금액은 2,500만원, 중기업 1개당 지원금액은 1억 4,800만원에 그쳐, 총매출 대비 각각 2.05%, 1.0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원기업에 한정하여 살펴봐도 매출액 대비 지원액이 소기업은 3.49%, 중기업은 1.63%에 그쳐 효과를 보기에 지나치게 과소함

4) 「기활법」이 축소를 지원한다면, 새로운 법은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여 완결성을 기할 수 있음

나. 지원 적합도 개선

- 세부 분야는 물론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규모가 큰 온렌딩,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의 사업에서 낮은 지원 적합도가 확인되는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됨
 - 7조 8천억원 규모로 가장 큰 세부 사업인 온렌딩대출은 2019년 지원 적합도가 -45.66으로 심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 고수익성 기업이 아닌 저수익성 기업에 조준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부가가치, 규모 측면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에게 조준된 지원은 명확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반면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조준된 지원은 성장과 부가가치에 도움이 되므로, 정책조준 변경 필요
 - 수익성 상위 50%에 지원되는 지원을 70%, 하위 50%에 지원되는 지원을 30%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제언함(적합도 지표 기준 40)
 - 해당 지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세부 분야, 세부 사업별로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충족되는 사업의 예산을 증가시킬 필요
 - 참고로 상위 하위 기준 총자산영업이익률 중간값은 6~7%로 높지 않으며, 금융이나 유통처럼 산업 특성상 낮을 수 있는 경우는 산업 중간값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함

목 차

I. 서 론	1
1.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	1
가. 성장사다리 정책 추진의 의의	1
나.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10분위 분석	2
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중요성	5
2. 역동경제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	11
II. 재정·금융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13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SIMS)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13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소개	13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13
다. 세부 사업별 지원 현황 예시	15
라. 조준 분석: 중기업, 수익성-규모별 분석 예시	20
2. 보증 등 SIMS 외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23
3. 중견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24
가.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계획서 기준 지원사업	24
III. 중소·중견·대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분석	28
1. 기업의 성장 경로 및 특성	28
가. 현행법상 기업의 성장단계	28
나. 기업의 성장단계별 적용 법률의 개요	31
다. 중소기업의 정의 및 적용 법률	32
라. 중견기업의 정의 및 적용 법률	44

마. 대기기업의 정의 및 적용 법률	51
2.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차등규제 현황 분석	54
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규제 변화	54
나. 중견기업에서 대기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규제 변화	78
다. 소결	94
IV. 중소기업 성장지원정책 성과평가	95
1. 성과지표별 증거기반 정량정책 성과평가	95
가. 2017~2022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증 평가: 중기업, 전체	95
나. 2017~2022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증 평가: 중소기업, 전체	97
2. 수익성·규모·사업별 세부 정량정책 성과평가	99
가. 2017~2022년 수익성·규모별 분석(중기업)	99
나. 2017~2022년 사업별 분석(중기업)	104
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 정책효과 분석	112
라. 중기업 대분류 산업별 분석	127
V.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수요 분석	201
1. 설문조사 개요	201
2. 응답 기업 기초통계	202
가. 기업규모 유형	202
나. 소재지	203
다. 수출기업 여부	204
라. 주요 판매처 유형	205
마. 영위 업종	206
3.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관련 의견	207
가. 중소기업 우호적 제도적·정책적 혜택에 대한 인식	207
나. 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 우호적인 제도적·정책적 혜택 유형	208

다. 중견기업의 적절한 조세감면 수준	209
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 차이	211
마. 중소기업 성장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212
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	213
4. 요약 및 시사점	216
VI.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218
1. 중소기업의 중견기업·대기업 성장 시의 인센티브 개선 필요	218
가. 중소기업 정책 지원규모와 중견기업 정책 지원규모의 격차 완화 필요	218
나. 중견기업정책의 대상과 규모 조정 필요	220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장사다리 기능 보완 필요	220
가. 지원 파편화 개선	220
나. 지원 적합도 개선	221
참고문헌	223

표 목차

<표 I-1> 2021년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영업이익 10분위	2
<표 I-2> 2021년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기업 수 10분위	3
<표 I-3> 2021년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기업당 영업이익	3
<표 I-4> 2021년 기업규모별 ROA 상위 50%와 하위 50% 영업이익	4
<표 I-5> 매출액 성장률 분위별 매출액 합계와 영업이익 증분(2020~2021)	4
<표 I-6> 매출액 성장률 분위별 상시근로자 증분(2015~2016)	5
<표 II-1> SIMS 연도별 세부 분야별 지원금액	14
<표 II-2> 2023년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과 빈도	15
<표 II-3> KoDATA 자료 빈도	21
<표 II-4> 수익성-매출 정책지원 2차원 조준 매트릭스	21
<표 II-5>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지원금액	24
<표 III-1>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30
<표 III-2> 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준 및 적용 법률	31
<표 III-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33
<표 III-4> 법률별 대기업 분류기준	52
<표 III-5>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후에도 적용되는 지원제도	56
<표 III-6> R&D 및 기술지원제도	58
<표 III-7> 고용·인력지원 및 규제	62
<표 III-8> 금융지원	65
<표 III-9> 세제지원	66
<표 III-10> 공정거래 관련 규제	75
<표 III-11> 판로지원	75
<표 III-12> 공정거래법상 규제기준 및 내용	78
<표 III-13> 상법상 규제기준 및 내용	83
<표 III-14> 자본시장법상 규제기준 및 내용	85

<표 III-15> 개별 법률상 규제기준 및 내용	88
<표 IV-1> 정책평가 결과: 고정효과 패널모형, 2017~2022, 중기업	96
<표 IV-2> 정책평가 결과: 고정효과 패널모형, 2017~2022, 중소기업	98
<표 IV-3>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00
<표 IV-4>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02
<표 IV-5>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05
<표 IV-6>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08
<표 IV-7> 지원대상 적합도(100~-100) 세부 분야별, 연도별 변화(중기업)	111
<표 IV-8> 정책평가 결과: 고정효과 패널모형, 2017~2022, 소상공인 제외 소기업	112
<표 IV-9>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소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14
<표 IV-10>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소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16
<표 IV-11>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소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19
<표 IV-12>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소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24
<표 IV-13>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제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28
<표 IV-14>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제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30
<표 IV-15>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제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32
<표 IV-16>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제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36
<표 IV-17>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건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39
<표 IV-18>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건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41

<표 IV-19>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건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43
<표 IV-20>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건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46
<표 IV-21>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도소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49
<표 IV-22>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도소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51
<표 IV-23>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도소매업) : 고정효과 패널모형	153
<표 IV-24>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도소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56
<표 IV-25>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59
<표 IV-26>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61
<표 IV-27>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고정효과 패널모형	163
<표 IV-28>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66
<표 IV-29>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69
<표 IV-30>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71
<표 IV-31>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 고정효과 패널모형	173
<표 IV-32>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77
<표 IV-33>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80

<표 IV-34>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82
<표 IV-35>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고 정효과 패널모형	184
<표 IV-36>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 고정효과 패널모형	188
<표 IV-37>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91
<표 IV-38>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193
<표 IV-39>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 (%p) 효과(중기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고정효과 패널모형	195
<표 IV-40>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고정효과 패널모형	198
<표 V-1> 기업규모 유형	202
<표 V-2> 소재지	203
<표 V-3> 수출기업 여부	204
<표 V-4> 주요 판매처 유형	205
<표 V-5> 영위 업종	206
<표 V-6> 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 우호적 제도-정책 혜택 존재 여부	207
<표 V-7>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제도적·정책적 혜택 유형(복수응답)	208
<표 V-8> 중소기업 대비 중견기업의 적절한 조세감면 수준	210
<표 V-9>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 차이	211
<표 V-10> 중소기업 성장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212
<표 V-11>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214
<표 V-12>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1, 2순위)	215
<표 VI-1> 기업규모별 지원금액 비중	221
<표 VI-2> 연도별 상위, 하위 총자산영업이익률 기준	222

그림 목차

[그림 I-1] 202년 중소기업-대·중견기업 총자산영업이익률 기준 자산, 총자산영업이익률 10분위 분석	7
[그림 I-2] 기업규모/연령그룹별 2015년 취업자 평균월평균보수액	9
[그림 I-3] 기업규모/연령그룹별 2015년 취업자 평균월평균보수비율	10
[그림 I-4] 2015년 신규취득 기준 청년일자리: 품질과 기업규모별	11
[그림 II-1] SIIMS 2021년도 세부 분야별 지원금액	14
[그림 II-2] 수익성-매출 기준 기업분포와 지원분포: 2021년 중기업	22
[그림 III-1] 연도별 공시집단 계열회사 수 추이	36
[그림 VI-1] 단계형-연속형 정책 설계의 예시: 손실보전금 개선안 설계	219

I. 서론

1.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

가. 성장사다리 정책 추진의 의의

- 본 장에서는 성장사다리 정책 추진의 의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기업과 소기업의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이 국민 경제적·정책적으로 중요한 정량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의 현황을 각각 전체와 10분위 기준으로 살펴 보고 평균적인 상위 규모 기업들을 평균적인 하위 규모 기업들과 비교하여 기업 규모별 부가가치 비중 차이에 대해 확인

- 또한 정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중소기업이 열악하다는 기존의 편견에 대한 증거기반 반증을 제시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우수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육성할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함
 - 규모도 작고 생산성도 낮은 중소기업을 규모도 크고 생산성도 높은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나, 규모는 작으나 생산성이 우수한 기업을 규모 면에서 성장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
 -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중소기업 정의와 특정 데이터 베이스의 활용에 기반한, 집단 평균 비교에 따른 이분법적 편견의 근거 없음에 대해 논함
 -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중견기업으로, 우수한 중견기업이 우수한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경제 내의 자원을 대체 활용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살펴 봄

나.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10분위 분석

- 소상공인을 제외한 기업들을 사실상 전수 수준으로 포함하는 한국평가데이터 자료를 기초로 부가가치 지표인 2021년 영업이익 통계를 전체, ROA 분위별로 요약하면 다음에 제시하는 표들과 같음
- 대기업은 1,605개 기업에서 149조 7천억원, 중견기업은 5,440개 기업에서 79조 4천억원, 중소기업은 82,323개 기업에서 63조 9천억원, 소기업은 537,396개 기업에서 23조 5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
- 평균적인 대기업은 소기업 2,130개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중견기업은 소기업 333개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중소기업은 소기업 16개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
- 산술적으로 소기업 333개를 창출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으로 중견기업 한 개만 창출할 수 있어도 동일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표 I-1〉 2021년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영업이익 10분위

(단위: 백만원)

2021년	대기업 영업이익	중견기업 영업이익	중기업 영업이익	소기업 영업이익
상위1분위	22,600,000	31,300,000	18,200,000	7,395,323
2분위	68,400,000	16,400,000	16,500,000	8,906,902
3분위	17,900,000	13,000,000	13,200,000	8,527,577
4분위	20,500,000	10,500,000	10,300,000	7,603,582
5분위	15,000,000	7,670,221	8,123,534	6,551,637
6분위	15,400,000	6,358,074	6,484,982	5,315,833
7분위	7,817,005	3,255,616	5,127,085	3,566,750
8분위	-723,294	960,449	3,447,323	-329,651
9분위	-10,700,000	-2,560,445	-1,255,890	-8,905,601
10분위	-6,463,726	-7,446,513	-16,200,000	-15,100,000
합계	149,729,985	79,437,402	63,927,034	23,532,352

주: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의함

〈표 I -2〉 2021년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기업 수 10분위

(단위: 개)

	대기업 수	중견기업 수	중기업 수	소기업 수
상위1분위	161	544	8,232	53,740
2분위	161	544	8,232	53,740
3분위	161	544	8,232	53,740
4분위	161	544	8,232	53,740
5분위	161	544	8,232	53,740
6분위	161	544	8,232	53,740
7분위	161	544	8,232	53,740
8분위	161	544	8,232	53,740
9분위	161	544	8,232	53,740
10분위	161	544	8,232	53,740
합계	1,605	5,440	82,323	537,396

주: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의함

〈표 I -3〉 2021년 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 기업당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대기업당 영업이익	중견기업당 영업이익	중기업당 영업이익	소기업당 영업이익
상위1분위	140,810	57,537	2,211	138
2분위	426,168	30,147	2,004	166
3분위	111,526	23,897	1,603	159
4분위	127,726	19,301	1,251	141
5분위	93,458	14,100	987	122
6분위	95,950	11,688	788	99
7분위	48,704	5,985	623	66
8분위	-4,507	1,766	419	-6
9분위	-66,667	-4,707	-153	-166
10분위	-40,272	-13,688	-1,968	-281
전체	93,290	14,602	777	44

주: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의함

- 분위별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ROA 상위 50%와 하위 50%의 부가가치를 각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위 50%가 전체 영업이익의 사실상 전부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상위 50%가 대기업은 149조 7천억원 중 144조 4천억원, 중견기업은 79조 4천억원 중 78조9천억원, 중기업은 64조 9천억원 중 66조 3천억원, 소기업은 23조 5천억원 중 39조원을 기록함
- 이는 스케일업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규모만 키우는 스케일업을 할 경우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나타냄

〈표 I -4〉 2021년 기업규모별 ROA 상위 50%와 하위 50%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분류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상위 50%	144,400,000	78,870,221	66,323,534	38,985,021
하위 50%	5,329,985	567,181	-2,396,500	-15,452,669

주: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의함

- 고성장기업의 부가가치 성과를 보기 위해 2020~2021년간 매출액증가율 기준으로 10개 그룹을 나누어본 결과, 매출 증가율 상위 10% 중기업의 영업이익 증분이 전체 중기업 증분의 109.47%를 차지5)
- 성장성 상위 10%의 기업들이 전체 기업 부가가치 증가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인상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I -5〉 매출액성장률 분위별 매출액 합계와 영업이익 증분(2020~2021)

(단위: 백만원)

매출액 성장률 분위	분위별 매출액합계	영업이익증가분
상위1	174,000,000	13,100,000
2	153,000,000	5,571,393
3	148,000,000	4,085,375
4	147,000,000	2,555,604
5	127,000,000	1,324,764
6	117,000,000	776,163
7	110,000,000	-350,842
8	107,000,000	-1,779,036
9	104,000,000	-4,268,566
10	31,100,000	-9,048,614
합계	1,218,100,000	11,966,242

주: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의함

5) 11~100%의 영업 증분 합계가 음수이기 때문에 10%까지의 기업의 경우 100% 이상의 수치가 도출되었음

- 고성 장기기업의 고용 성과를 보기 위해 2015~2016년간⁶⁾ 매출액 증가율 기준으로 10개 그룹을 나누어 본 결과, 매출 증가율 상위 50% 중기업의 고용 증분이 전체 중기업 고용 증분의 73.14%를 차지
 - 고성 장기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고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저성장 기업들보다 높은 고용 증분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
 - 해당 자료 기준으로 보면 고성 장기기업들에 있어서는 고용 절약형 성장이 아닌, 고용 친화형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6〉 매출액 성장률 분위별 상시근로자 증분(2015~2016)

(단위: 명)

매출액 성장률 분위	분위별 고용 증분	상위/하위 50% 비교
상위1	10,948	72,464
2	18,353	
3	18,680	
4	17,519	
5	6,964	
6	5,279	26,605
7	11,511	
8	4,102	
9	2,096	
10	3,617	
합계	99,069	99,069

주: 한국평가데이터와 고용보험 연계자료에 의함

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중요성

- 생산성 하위 중견기업·대기업에 과다 배분된 자원을 상위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배분할 수 있다면, 시장원칙에 맞게 경제 효율성과 부가가치 제고 가능
 - 2020년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총자산영업이익률 상위 1분위 중소기업은 36조원의 자산으로 46.71%의 총자산영업이익률(영업이익 16.85조원)을 나타내나, 상위 10분위(하위 1분위) 대기업은 110조원의 자산으로 -12.61%의 총자산영업이익률

6) 한국평가데이터 단독자료가 아닌 고용보험자료와 한국평가데이터 연계자료에 의하므로, 해당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연도이지만 시점이 다소 과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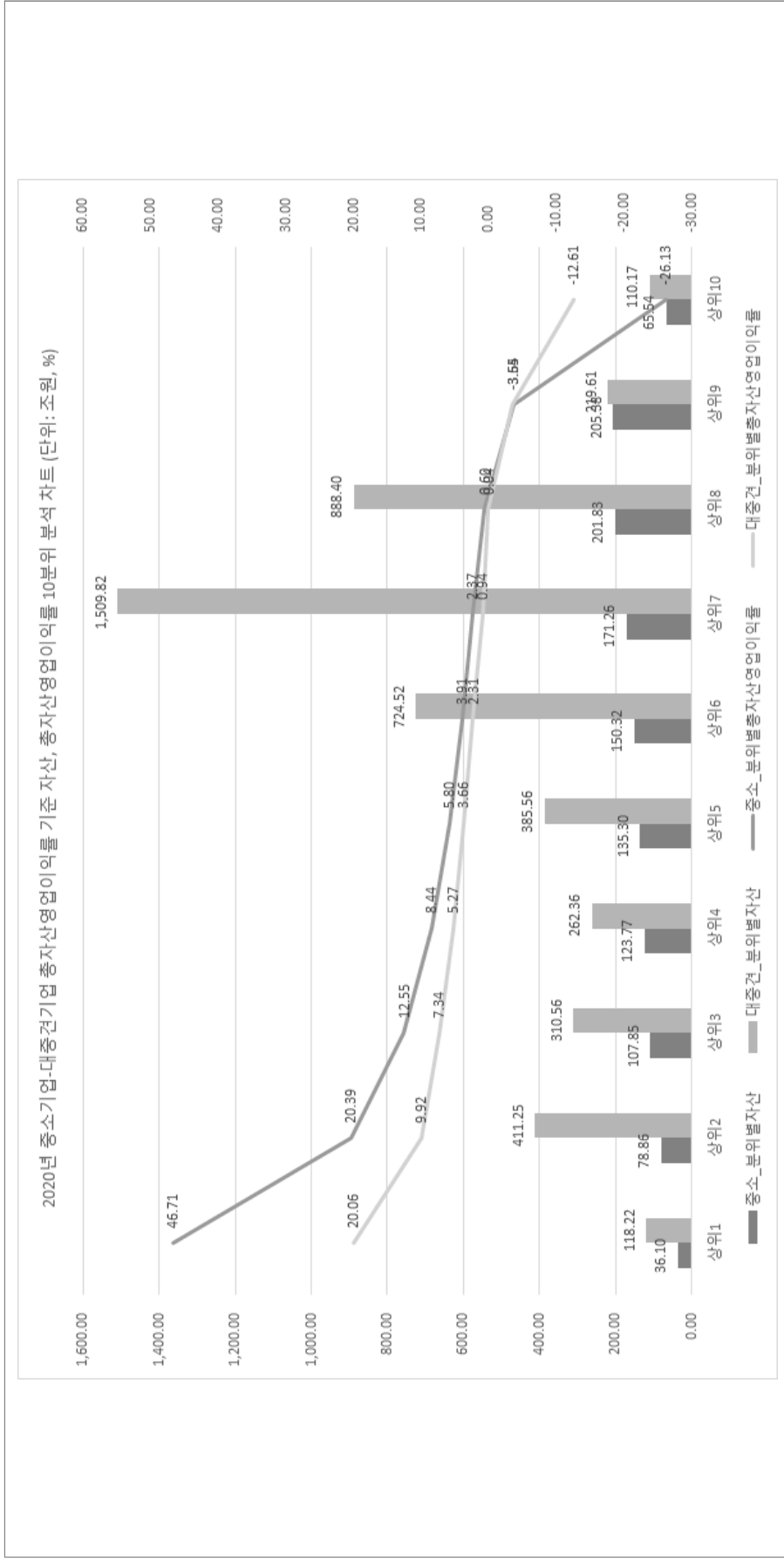
(영업손실 13.89조원)을 시현

- 이해를 위한 단순한 계산 또는 높은 정책 목표로서, 만일 수익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위 1분위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하위 10분위 대기업이 규모를 줄여 자산규모를 맞바꾼다면, 10개 분위 중 1개 분위 맞바꾸기만으로도 부가가치 증가분은 44조원에 달함⁷⁾

7) 이해를 위한 단순한 계산(概算) 수치이지만, $(-16.85+13.89)+110 \times 46.71\% - 36.10 \times 12.61\%$ 에 따라 도출

[그림 I -1] 2020년 중소기업-대·중견기업 총자산영업이익률 기준 자산, 총자산영업이익률 10분위 분석

(단위: 조원, %)



자료: 한국평가데이터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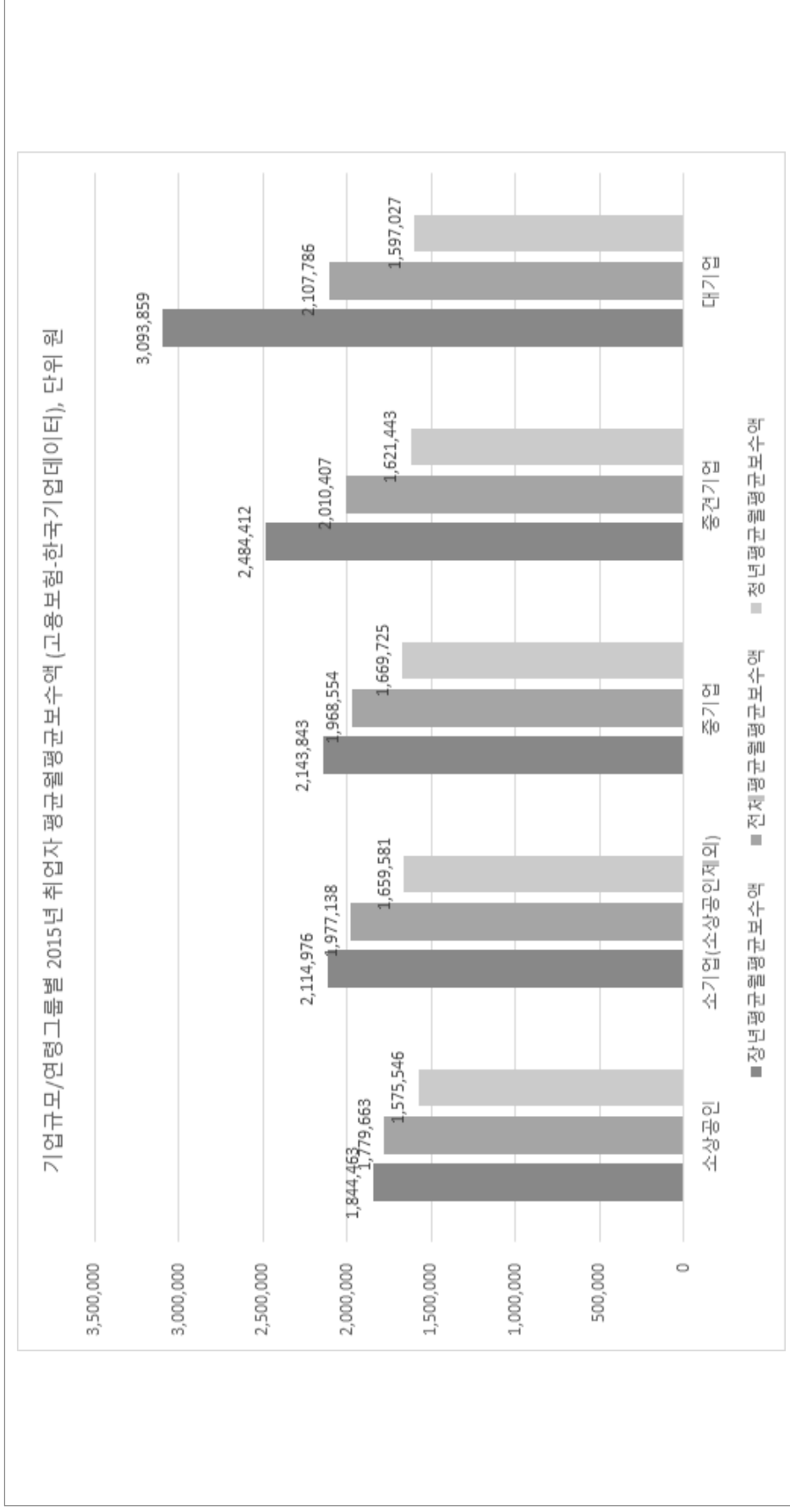
- 대·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능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우수함
 - 고용보험-한국기업데이터 결합 데이터에 따르면 대기업의 수는 2.2%에 불과하지만, 피보험자 수 비중은 40.5%에 달하며 중소기업은 기업 수는 97.8%에 달하지만 피보험자 수 비중은 59.5%에 그침⁸⁾
 - 2015년 신규취득(첫 취업, 이직 포함) 기준으로 특히 비청년층⁹⁾에서 대기업 일자리 평균 임금이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이 확인됨

8) 장우현(2019) 참고

9)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은 15~29세로 정의

[그림 I -2] 기업규모/연령그룹별 2015년 취업자 평균월평균보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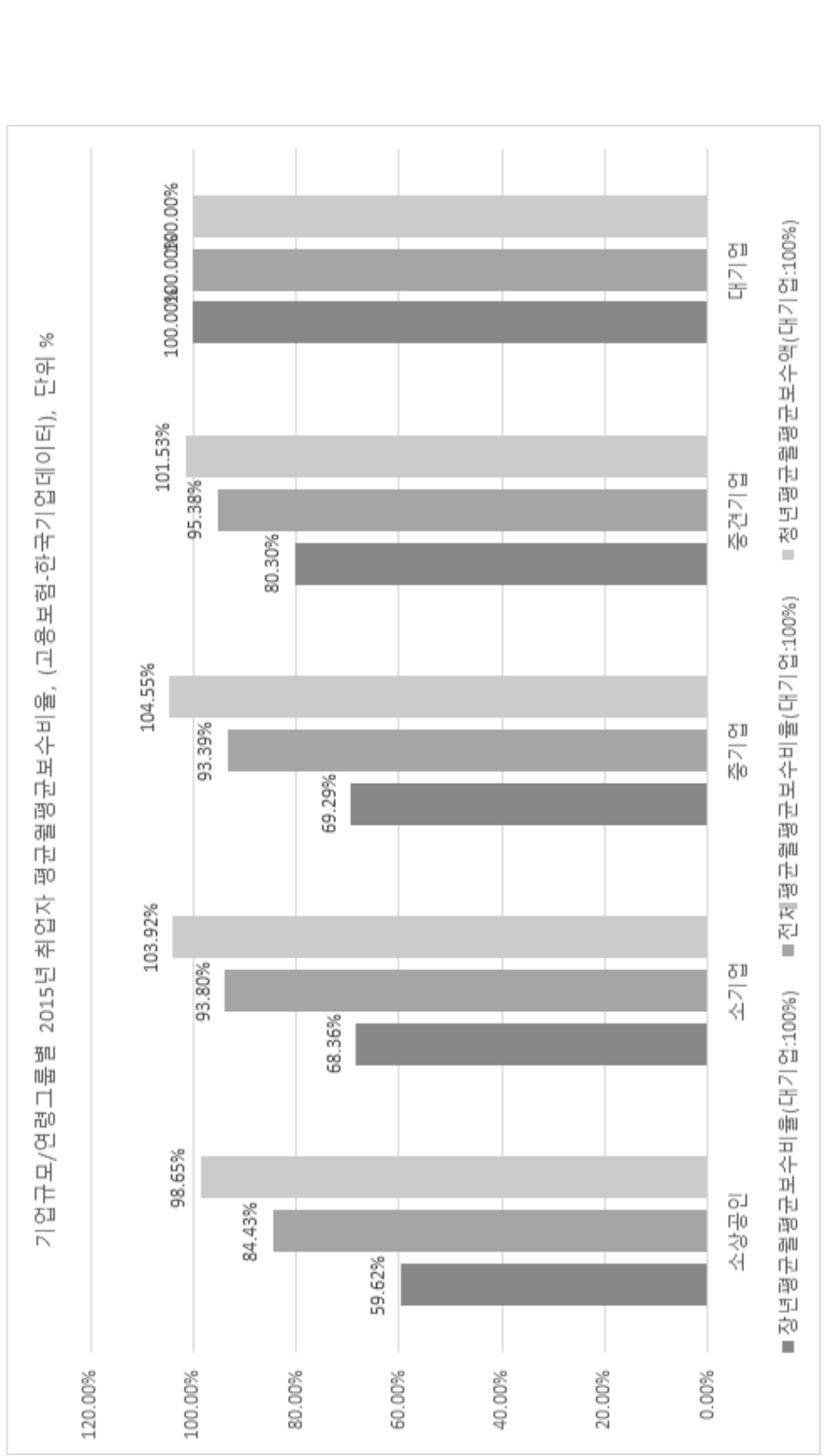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고용보험 및 한국기업데이터 연계 자료로 저자 분석

[그림 I -3] 기업규모/연령그룹별 2015년 취업자 평균월평균보수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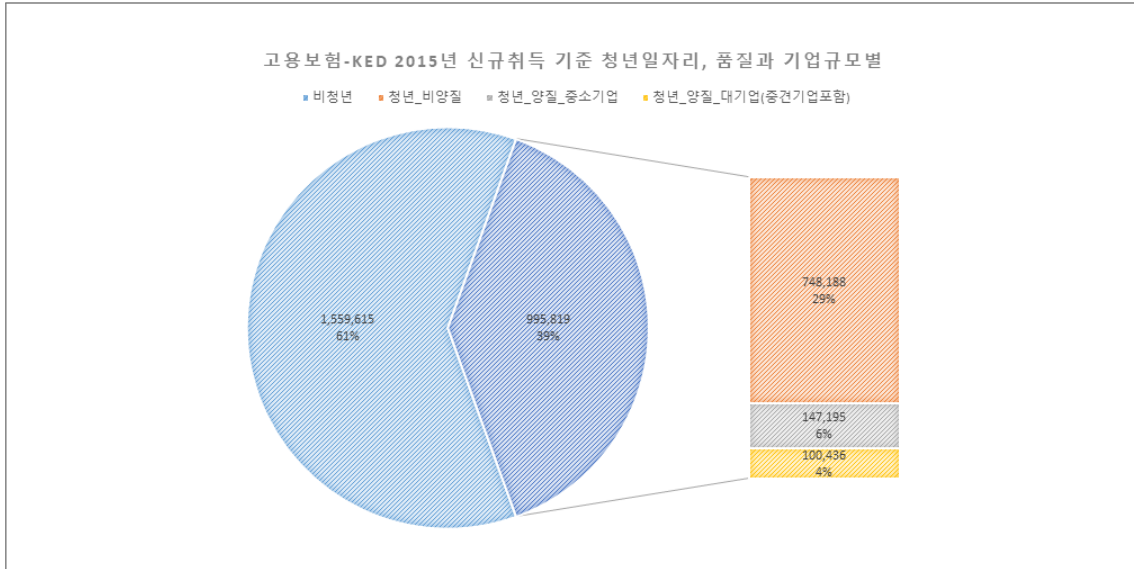


자료: 고용보험 및 한국기업데이터 연계 자료로 저자 분석

- 2015년 신규취득(첫 취업, 이직 포함) 기준으로 청년 양질의 일자리의 40%가 소수의 대·중견기업에서 창출됨

[그림 I-4] 2015년 신규취득 기준 청년일자리: 품질과 기업규모별

(단위: %)



주: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한 경우임
 자료: 장우현(2019)

2. 역동 경제와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

- 역동 경제에 있어 기본적 정책 방향은 “현상이 아닌, 변화와 도전을 지원한다”에 입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기존의 많은 경제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보이는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있어서도 주요 장애요인임
 - 우리 경제의 장점은 개별 주체들이 끊임없이 더 나은 조합을 찾아 빠르게 변화하는 역동성에 있음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도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중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자립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정의상 주목적임에 유의할 필요

- 현재 주요 정책 방향인 역동경제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구축은 중요한 정책적 주제임
 - 우수한 중소기업에 충분한 성장 유인을 제고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은 역동경제의 실현에 있어 주요 과제가 됨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에 있어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II. 재정·금융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SIMS)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소개

-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SIMS)에 결집되어 있음
 - 사업 수행 부처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SIMS)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관련 자료들을 제외되어 있으나, 정부의 직접대출, 보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지원 이력이 SIMS에 결집되어 있음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 본 과제에서는 2017~2023년까지의 SIMS 자료를 확보하여, 신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사실상 보증을 제외하고 전수 확보하여 지원 현황 분석을 진행
 - SIMS 자료 확인 결과, 2021년 기준 4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대출을 포함하지만 보증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아래의 표는 연도별 세부분야별 지원금액의 요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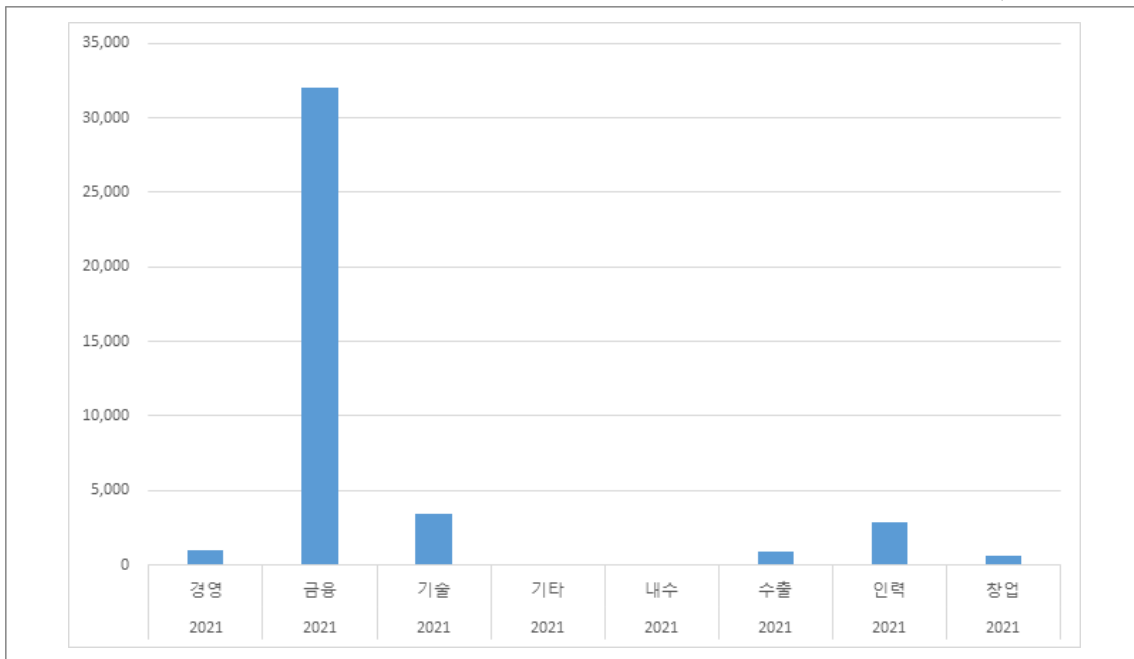
〈표 II-1〉 SIMS 연도별 세부 분야별 지원금액

(단위: 십억원)

세부 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영	220	278	258	816	977	995	1,396
금융	21,829	23,303	24,772	28,813	32,055	28,362	30,477
기술	2,154	2,346	2,311	3,153	3,441	3,403	4,499
기타	5	9	10	56	64	31	35
내수	14	16	11	59	77	209	62
수출	202	166	1,041	1,209	919	689	3,557
인력	323	1,699	1,263	5,317	2,919	1,621	765
창업	232	348	382	614	594	492	603
합계	24,980	28,165	30,049	40,037	41,046	35,803	41,395

[그림 II-1] SIMS 2021년도 세부 분야별 지원금액

(단위: 십억원)



- 참고로 세부 분야가 대부분 금융인 것은, 장우현(2023)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배반적이지 않은 분류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개선할 필요
- 예컨대 수출을 위한 금융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금융이나 수출로 강제로 하나로만 분류하게 하여 발생하는 문제임

- 분류체계를 MECE 기준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중복은 허용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즉각 개선 가능함

다. 세부 사업별 지원 현황 예시

- SIMS의 세부 사업 자료까지 확보한 바, 원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확인과 과학적 평가가 전부 가능한 상황임
- 1,124개의 세부 사업이 확인되며, 일부 세부 사업은 지나치게 과소하여 사업당 지원금액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어 파편화 성향이 확인됨
-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추가적인 실제 정책 성과 분석을 진행

〈표 II-2〉 2023년 세부사업별 지원금액과 빈도

(단위: 백만원, 회수)

연도	세부 사업명	지원금액	빈도	연번
2023	온렌딩대출	7,757,981	9,600	1
2023	소상공인지원(융자)	4,875,171	134,871	2
2023	무역보험금지급	3,248,515	4,223	3
2023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235,486	11,395	4
2023	무역보험기금출연	1,573,198	4,857	5
2023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1,465,318	39,261	6
2023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1,235,252	23,510	7
2023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192,101	2,403	8
2023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대구)	932,075.3	10,672	9
2023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919,650.7	1,384	10
2023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624,428	10,421	11
2023	중소기업금융지원	490,519.8	5,979	12
2023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38,251	23,877	13
2023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	432,551	1,094	14
2023	창업성장기술개발(R&D)	426,419.2	3,846	15
2023	제도약지원자금(융자)	419,335	1,447	16
2023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418,856.8	2,564	17
202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	391,835.7	371	18

〈표 II -2〉의 계속

(단위: 백만원, 회수)

연도	세부 사업명	지원금액	빈도	연번
2023	소재부품기술개발(R&D)	378,682.3	1,270	19
2023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57,216.6	456	20
2023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충북)	353,692.9	916	21
2023	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자금지원	308,740.6	1,373	22
2023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301,039.1	7,025	23
202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290,323	328	24
2023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및창업자금지원	273,999.1	1,301	25
2023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5,370	1,486	26
202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253,650.3	1,944	27
202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253,052.9	1,596	28
2023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245,340	1,334	29
2023	녹색혁신금융(출연)	237,857.1	201	30
2023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29,759	1,195	31
2023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224,546.8	165	32
2023	창업사업화지원	210,591.6	2,956	33
2023	경영개선자금지원	195,474.1	13,248	34
2023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182,400	3	35
2023	골목상권살리기지원	172,545	7,331	36
2023	여성기업육성	167,916.9	575	37
2023	중소기업직접융자	167,692.9	3,500	38
2023	민관협력창업자육성	154,933.6	1,239	39
2023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153,586.5	287	40
2023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148,281.5	14,816	41
2023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143,457.6	116	42
2023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37,393.7	23,508	43
2023	고용안정장려금	130,667.5	51,693	44
2023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118,248.3	3,511	45
2023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16,066	555	46
2023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R&D)	113,405.2	95	47
2023	지역특화산업육성+(R&D)	108,930.2	787	48
2023	고용유지지원금	106,760.1	6,320	49

〈표 II -2〉의 계속

(단위: 백만원, 회수)

연도	세부 사업명	지원금액	빈도	연번
2023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105,216.5	313	50
2023	ICT융합산업혁신기술개발(R&D)	103,537.1	89	51
2023	지역특화산업육성	101,090.8	3,359	52
2023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97,265.63	100	53
2023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95,681	411	54
2023	우수수산물지원(용자)	93,741	114	55
2023	고용창출장려금	91,352.05	19,957	56
2023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88,342.07	5,666	57
2023	친환경설비투자	86,955	67	58
2023	ICT융합제조운영체제개발및실증(R&D)	82,158.24	6	59
2023	소상공인금융지원	81,992.9	4,602	60
2023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R&D)	77,945.4	214	61
2023	스포츠산업금융지원(용자)	76,917.98	676	62
2023	수출지원기반활용(중기부)	74,956.41	10,206	63
2023	ICTR&D혁신바우처지원	72,995.25	185	64
202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특별)	70,527.58	460	65
2023	스마트생태공장구축	67,520.12	75	66
2023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조성	65,604	33	67
2023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 개발(R&D)	65,243.77	11	68
2023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64,881.84	199	69
2023	창업성공패키지	62,405.06	955	70
2023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61,328.08	423	71
2023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R&D)	60,348.97	206	72
202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8,487.42	10,098	73
2023	수산물수매지원(용자)	56,653.9	112	74
2023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	54,998.37	19,362	75
2023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53,968.33	5,774	76
2023	이자차액보전금지원	53,857	1,634	77
2023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	53,139	78	78

〈표 II -2〉의 계속

(단위: 백만원, 회수)

연도	세부 사업명	지원금액	빈도	연번
2023	소상공인재기지원	51,861.66	214,752	79
2023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R&D)	51,552.78	221	80
2023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51,520.1	176	81
2023	6G핵심기술개발	50,486.61	28	82
2023	중소기업맞춤형품질경쟁력강화	25	5	1070
2023	정부출연연구기관협력사업	25	7	1071
2023	지역특성화산업육성(전환사업)	25	38	1072
2023	화학소재산업육성지원	25	5	1073
2023	중소기업환경개선을위한이자지원	24.83666	13	1074
2023	무역인육성및통상진흥지원	24.28	3	1075
2023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특화사업발굴 지원	24	2	1076
2023	지역SW품질역량센터운영지원 (국가직접지원)	24	8	1077
2023	온라인플랫폼운영마케팅지원(자체/지원)	23.98382	34	1078
2023	수소전기차부품산업육성기술지원(전환)	23.7872	2	1079
2023	사회적경제성장지원	23.59	4	1080
2023	녹색산업육성지원	22.8	42	1081
2023	대경권SW품질역량강화지원 (국가직접지원)	22.52478	11	1082
2023	지역특화산업육성기업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21.183	4	1083
2023	중소기업녹색인증컨설팅지원사업	21.0246	10	1084
2023	품질경진대회개최및참가지원	21	5	1085
2023	창업보육활성화지원	20.985	11	1086
2023	유기가공식품인증비용지원	20.8115	34	1087
2023	중소기업과견기술지원단운영	20.8	8	1088
2023	섬유수출상담참가지원	20.22388	10	1089
2023	서울창업센터관악운영	20.2	35	1090
2023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보조)	20	1	1091
2023	한방·천연물연구개발강화	20	4	1092
2023	중소기업육성활성화	19.98	120	1093

〈표 II -2〉의 계속

(단위: 백만원, 회수)

연도	세부 사업명	지원금액	빈도	연번
2023	중소기업품질경영진단및기술지도지원	19.2	8	1094
2023	수산물지자체연계마케팅	18.7	1	1095
2023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세종) (사회보험료)	17.46561	3	1096
2023	굴뚝자동측정기설치·운영관리지원(보조)	16.92706	2	1097
2023	여성친화기업환경조성	16	4	1098
2023	경기도창업플랫폼운영(자체/직접)	15	2	1099
2023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부산)	15	3	1100
2023	기업애로지원센터운영	14.4	24	1101
2023	에너지산업전시회참가지원사업	13.3	7	1102
2023	창업및경영개선지원	12.1824	27	1103
2023	대·중소기업동반성장	11.2	45	1104
2023	기업제품품질분임조활성화지원	10.8	2	1105
2023	IT여성취창업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0	2	1106
2023	마을기업고도화	9.5	6	1107
2023	공예품상품화개발및마케팅지원 (전환사업)	8.7622	5	1108
2023	수산물소비촉진지원및해외시장개척	8.434121	6	1109
2023	부산섬유패션미래시장창출지원	8.4	4	1110
2023	경남중소·벤처기업판로지원사업	8	4	1111
2023	수산물가공업HACCP지원	7.8	129	1112
2023	치의학산업육성지원	7.5	1	1113
2023	화학물질취급안전관리,지원	6.18487	349	1114
2023	지역SW성장지원사업	5.288	4	1115
2023	제주지역ICT신기술개발및고도화	4.746	3	1116
2023	수출기반조성	4	1	1117
2023	1인문화콘텐츠창조기업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4	1	1118
2023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6	1	1119
2023	품질경영대회개최지원	2.4375	2	1120
2023	전라북도해외통상거점센터운영	2.415346	10	1121

〈표 II-2〉의 계속

(단위: 백만원, 회수)

연도	세부 사업명	지원금액	빈도	연번
2023	중소기업연구개발(R&D)사업화지원사업	0.41	51	1122
2023	대전창업성장캠퍼스활성화	0.245	7	1123
2023	서울특별시소상공인종합지원	0.003	3000	1124

라. 조준 분석: 중기업, 수익성-규모별 분석 예시

- 앞서 제시한 SIMS 자료를 기업 생태계 자료인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자료와 연계하여, 실제 정책이 적절하게 조준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함
 -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진 기업들에게 정책이 조준되었는지에 대해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
 - 이를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주요 성장의 대상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10분위와 매출액 10분위로 100개의 셀을 확보하여 기업 지도 및 지원 지도를 확인하였음

- 참고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자료 확인 결과, 해당 생태계 자료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충분한 기업 생태계 자료임을 확인하였음
 - 아래의 표는 KoDATA의 기업 규모별 자료빈도를 요약한 것으로, 2021년의 예를 들어 보면 총 717,457개의 기업데이터가 존재하며 대기업은 1,605개, 중견기업은 5,440개, 중기업은 82,323개,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은 537,396개, 소상공인은 77,372개임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2023)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이 26만 7천개, 중기업이 11만 2천개로 KoDATA는 소상공인 제외 중소기업 기준과 대등하거나 더 큰 규모
 -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한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3)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중견기업 수는 5,576개로서 2021년 기준 5,440개의 중견기업이 확인된 것은 전수에 가까운 충분한 수치로 볼 수 있음

〈표 II-3〉 KoDATA 자료 빈도

(단위: 개)

연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타	총합계
2016	1,410	4,826	65,924	254,176	118,980	8,833	454,149
2017	1,454	4,919	70,839	304,998	124,353	10,717	517,280
2018	1,485	5,074	78,567	393,747	124,351	11,794	615,018
2019	1,548	5,292	83,065	491,191	110,289	10,507	701,892
2020	1,588	5,464	85,103	566,650	81,342	11,502	751,649
2021	1,605	5,440	82,323	537,396	77,372	13,321	717,457
2022	1,531	5,212	73,357	415,983	63,702	9,872	569,657
총합계	10,621	36,227	539,178	2,964,141	700,389	76,546	4,327,102

(단위: 개, 조원, %p)

연도	기업규모명	기업 수	매출액 합계	총자산 합계	영업이익 합계	평균 ROA
2021	대기업	1,605	1,895.43	4,611.77	149.88	3.25
2021	중견기업	5,440	1,108.98	1,315.81	79.35	6.03
2021	중기업	82,323	1,218.57	1,216.19	63.99	5.26
2021	소기업	537,396	666.65	1,007.62	23.58	2.34
2021	소상공인	77,372	94.90	130.37	3.94	3.03
2021	기타	13,321	819.50	5,722.71	37.66	0.66

□ 2021년 기준 중기업 82,823개를 100개 셀로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음: 수익성 상위 1분위에 속하면서 매출(규모) 상위 1분위에 속하는 중기업의 수는 395개이며 매출(규모)는 상위 1분위이나 수익성이 하위 10분위인 기업의 수는 560개

○ 각 셀별로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

〈표 II-4〉 수익성-매출 정책지원 2차원 조준 매트릭스

(단위: 개)

기업수	수익성1	수익성2	수익성3	수익성4	수익성5	수익성6	수익성7	수익성8	수익성9	수익성10
매출1	395	840	960	963	955	873	888	972	826	560
매출2	385	752	896	973	906	948	954	930	845	643
매출3	349	780	885	908	999	981	922	930	774	704
매출4	334	741	912	919	969	979	955	921	805	698
매출5	405	768	903	929	953	987	948	896	789	654
매출6	474	805	885	888	957	989	932	900	719	683

〈표 II-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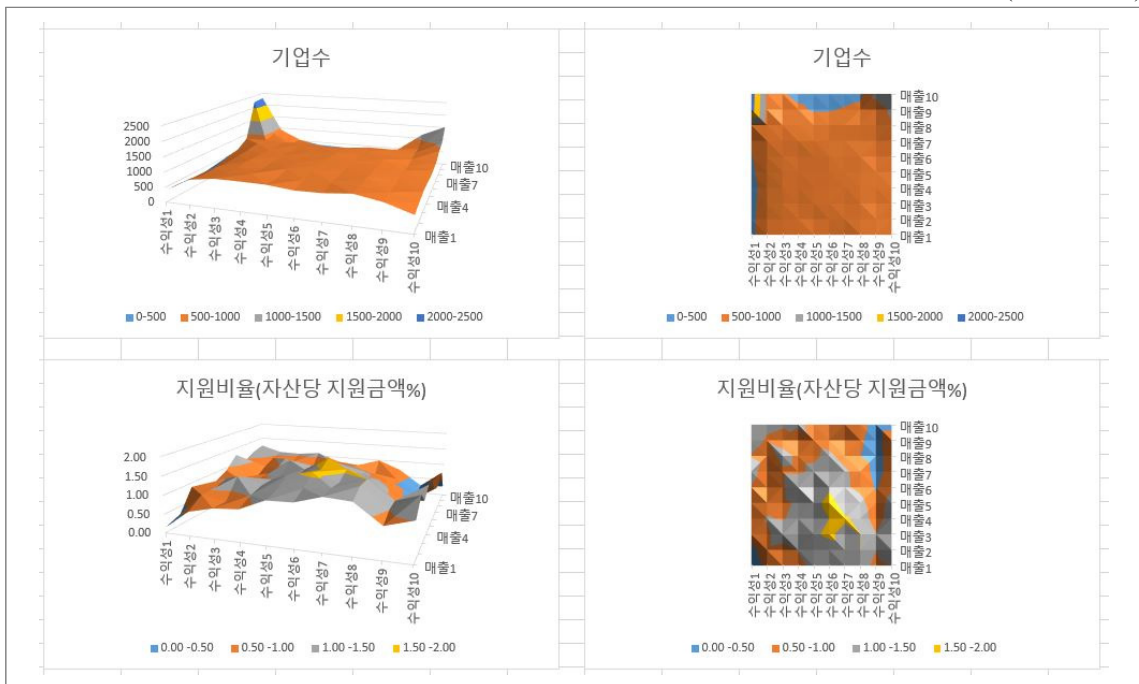
기업수	수익성1	수익성2	수익성3	수익성4	수익성5	수익성6	수익성7	수익성8	수익성9	수익성10
매출7	540	869	866	921	923	916	886	817	751	744
매출8	822	829	789	772	755	782	865	855	807	956
매출9	2240	920	598	577	453	457	535	615	770	1067
매출10	2291	928	538	383	362	320	348	396	1146	1521

자료: 저자 작성

- 해당 중기업들의 총자산 규모는 1,200조원에 달하며, SIMS 지원이력액에 따른 지원 금액은 12조원 규모
 - 12조원 규모가 절대적으로는 커보이지만, 지원 기업들의 자산 규모에 대비하면 1%에 그치는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음
- 기업의 규모와 지원비율(자산당 지원금액 %)을 비교함으로써, 조준 대상과 조준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에 적합한 대상들에게 정책이 주로 조준되었는지, 조준된 금액의 수준은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 가능

[그림 II-2] 수익성-매출 기준 기업분포와 지원분포: 2021년 중기업

(단위: 개, %)



자료: KoDATA와 SIMS 자료를 연계하여 저자 분석

- 분석 결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대상이 될 수익성이 높은 기업, 특히 수익성과 규모가 모두 큰 기업들이 존재함에도, 실제 지원금액은 집중되지 못해 해당 기업들 중심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만일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면 더 우수한 기업들에게 투자할 것이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익성과 규모가 높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다수의 지원을 제공
 - 복지정책은 개인에게 조준해야 하고 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성장성 기준으로 조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조준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개연성이 높음
 - 특히 기업 자산규모 대비 지원액이 과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전적으로도 어렵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

2. 보증 등 SIMS 외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 SIMS 자료의 경우에는 정책금융의 주된 영역 중 하나인 보증사업 규모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해당 통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적 보증의 경우에는 직접대출과 달리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직접 공급하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에 대해 보증하는 정책임
 - 따라서, 지원 기업이 담보물 없이도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책금융의 목적 측면에서 직접대출과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공공부문에는 다양한 보증 정책이 있지만, 규모와 인지도, 중요성 면에서 주요한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기술보증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소상공인보다 소기업과 중기업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함¹⁰⁾
 - 이에 대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0) 다만, 소상공인도 현행법상으로는 중소기업이기도 하며 법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기관은 다수의 소상공인에게도 보증 지원을 하고 있음. 관련한 논의는 장우현 외(2013) 등을 참고할 것

- 아래 <표 II-6>은 e-나라지표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연도별 지원금액으로 2023년의 경우 세 기관의 총 잔액기준 지원 규모는 134조 3천억원 수준에 달함
- 보증 규모를 직접적인 보조금 규모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¹¹⁾, SIMS 기준 2023년 지원규모가 41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소기업 지원 확인에 있어 누락되어서는 안될 지원 규모로 볼 수 있음

〈표 II-5〉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지원금액
(2017~2023년)

(단위: 조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용보증기금	44.4	45.5	47.2	55	59.1	61.4	61.8
지역신용보증재단	19.2	20.5	23	39.4	43.1	46.6	44.6
기술보증기금	21.3	22	21.8	25.4	26.3	26.5	27.9

자료: e-나라지표¹²⁾

3. 중견기업 지원사업 현황 분석

가.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계획서 기준 지원사업

- 제Ⅲ장에서 보다 자세히 중견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다루겠지만, 본 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성과계획서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확인하고 규모를 검토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2023년 기준 1,124개 세부 항목 41조원 규모에 달하는 데 비해, 명시적 중견기업 지원사업은 2024년 기준 15개 항목 405억원에 그치는데 이는 금액 측면에서 SIMS 기준 중소기업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

11) 다만 현재 SIMS에서도 직접적인 대출 규모와 보조금을 합계하여 총액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보증규모도 합산하여 총계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에 맞을 수 있음

12)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0, 접속일자: 2024. 8. 1.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전 부처의 지원사업을 합친 것이고 중견기업 지원은 산업부 중견국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간극 차이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재정·금융 차원에서 큰 지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재정 배정은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략목표 II : II. 협력적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혁신형 산업구조를 정착한다. 》

(단위 : 개, 억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II-1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산업경쟁력기반구축)	1개	12,903.50
II-2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 및 유통산업 발전을 지원한다.(중견기업육성)	1개	405.15
II-3 산업기술을 진흥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1개	1,209.80
II-4 전략적 국가표준, 안전정책을 강화한다.(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1개	1,013.42

1 중견기업역량강화 : 37,982

□ 사업목적

- 중견기업 간 다각적인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

□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중견기업역량강화(4301)	일반회계	80,581	85,086	37,982	(9)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R&D)(301)	일반회계	20,556	5,476	243	R&D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R&D)(302)	일반회계	1,000	4,500	563	R&D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 구축(303)	일반회계	6,466	6,865	6,994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R&D)(304)	일반회계	1,455	3,900	571	R&D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308)	일반회계	8,149	6,500	0	R&D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R&D)(309)	일반회계	9,900	2,000	0	R&D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기술 개발(R&D)(312)	일반회계	7,300	7,300	0	R&D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지원(R&D)(313)	일반회계	24,000	34,500	15,984	R&D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 (R&D)(314)	일반회계	1,755	1,905	272	R&D
중견기업공공연구기술혁신센터 (R&D)(318)	일반회계	0	2,340	422	R&D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 지원(R&D)(319)	일반회계	0	2,700	3,888	R&D
중견중소기업상생혁신도약 사업(R&D)(320)	일반회계	0	7,100	9,045	R&D

2 유통물류기반조성(일반) : 2,533

□ 사업목적

-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기반 구축

□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유통물류기반조성(일반)(4302)	일반회계	4,604	3,098	2,533	(1)
유통물류기반조성(302)	일반회계	4,604	3,098	2,533	

Ⅲ. 중소기업·중견·대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분석

1. 기업의 성장 경로 및 특성

가. 현행법상 기업의 성장단계

- 우리나라의 종래 기업의 성장단계별 분류는 통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왔음
 -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업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법적 의미를 갖지는 못하였음
 - 그러던 「중견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중견기업의 법적개념이 정립되었으나, 중견기업법이 한시법이었던 관계로 중견기업의 법적 지위는 다소 모호한 상황이었음
 - 따라서 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최근 「중견기업법」이 상시화되면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구분되는 법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음
 -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2005년 8월에 발의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되면서 시작되었음¹³⁾
 - 당시 조사결과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등은 전무한 상황이었음
 -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견기업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동 법률안은 중견기업이 R&D투자 확대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

13)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성태, 「중견기업법의 제정과 상시화에 대한 소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적과제』,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4. 8, pp. 14~16 참조.

기 위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였음

- 그러나 당시에는 (i)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ii) 중견기업에 대해서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iii) 중견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자율 및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친화적인 기업지원정책과의 부조화 우려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
- 중견기업이 법률상 용어로 등장한 것은 2011년 「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서임
 - 「산업발전법」 개정 전까지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중소기업을 벗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속하는 기업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
 - 산업발전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적으로 5년간 조세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4년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중견기업이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이었음¹⁴⁾
 - 당시 글로벌 경영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발전법」상 규정만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음¹⁵⁾
- 그러나, 「중견기업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진 법으로서,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음
 - 법 제정 당시에는 국내 기업 생태계를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기업군을 충분히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점까지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이후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¹⁶⁾
- 「중견기업법」 제정 이후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견기업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¹⁷⁾, 현

14) 김한준 외, 「국내 중견기업의 특성분석과 발전방안」, 한국기술혁신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2007. 11, p. 124.

15) 이종영·김성천·백옥선·김송옥·박기선,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3, p 8.

16) 권종호·곽관훈·권용수, 『중견기업 특별법령 입법효과 분석 및 개정방향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11. p. 9.

17) 조병선·김보수·권용수,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제편 활성화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하였음¹⁸⁾

- 중견기업의 경우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숫자에 비해 수출이나 고용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음

〈표 Ⅲ-1〉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단위: 개, 조원, 억달러, 만명)

연도	중견기업 수	매출액	수출	종사자
2019	5,007(0.7%)	782(15.7%)	936(17.3%)	149(14.3%)
2020	5,526(1.4%)	770(1.4%)	931(18.2%)	158(13.8%)
2021	5,480(1.4%)	852(15.4%)	1,109(17.3%)	159(13.1%)
2022	5,576(1.3%)	961(14.4%)	1,230(18.0%)	158(12.8%)

자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2020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157.8만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9.2만명 증가하였으며, 2020년 신규채용 인원은 23.1만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그 중 청년 채용이 15.1만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하는 등 청년일자리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고 있음¹⁹⁾
-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산업·기업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중견기업이 거래하는 기업은 총 20.2만개사이며, 그중 18.5만개사가 중소기업, 1.7만개사가 대·중견기업이며, 중견기업의 협력사 수는 평균 78.1개사인데, 그중 중소기업이 71.3개사로 전체 협력사의 91.3%를 차지함
- 중견기업의 2020년 투자 실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투자 중 R&D 투자 비중만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8.9%를 기록하는 등, 투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이처럼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전제로서 「중견기업법」의 상시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23년 4월 18일 「중견기업법」 개정

방안 연구』, 중견기업연구원, 2021, pp. 1~2.

1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p. 46.

19)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2021.

을 통해 10년으로 명시되어 있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었음

- 「중견기업법」이 상시화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는 구분되는 명확한 법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음
- 정리하면, ‘중소기업 → 대기업’의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으나, 2023년 「중견기업법」이 상시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의 3단계 구분이 현행법상 기업의 성장단계라고 할 수 있음²⁰⁾

나. 기업의 성장단계별 적용 법률의 개요

- 기업의 성장단계를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구분할 때, 각각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표 Ⅲ-2〉 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준 및 적용 법률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주요 제외대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소(유예)기업, 대기업, 금융·보험및연금업 영위기업	
기준 조건	4개 모두 충족(AND)	4개 중 1개 충족(OR)	2개 중 1개 충족(OR)
규모 기준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이하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보험 및 연금업 제외)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소속회사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②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
	② 자산총액 5천원억 미만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독립성 기준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20)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광관훈,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및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중견기업연구』 제10권 제1호, 2023, p. 1 이하 참조.

〈표 Ⅲ-2〉의 계속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④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④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제외)	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법인(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 제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알기 쉽게 풀어쓴 중견기업 범위해설」, 2022. 2, p. 4.

-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법률들이 존재하며, 중견기업의 경우는 특별법인 「중견기업법」만이 존재하고 있음
-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정의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중견기업법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 그러나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도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다소 복잡한 측면도 존재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법적 정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다. 중소기업의 정의 및 적용 법률

(가)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상 (i) 규모기준과 (ii)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 규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평균매출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간주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표 Ⅲ-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표 Ⅲ-3〉의 계속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 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종전에는 업종별 규모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로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 3년 평균매출액을 단일기준으로 채택하였음. 기존의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의 투입지표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

적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활동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매출액 지표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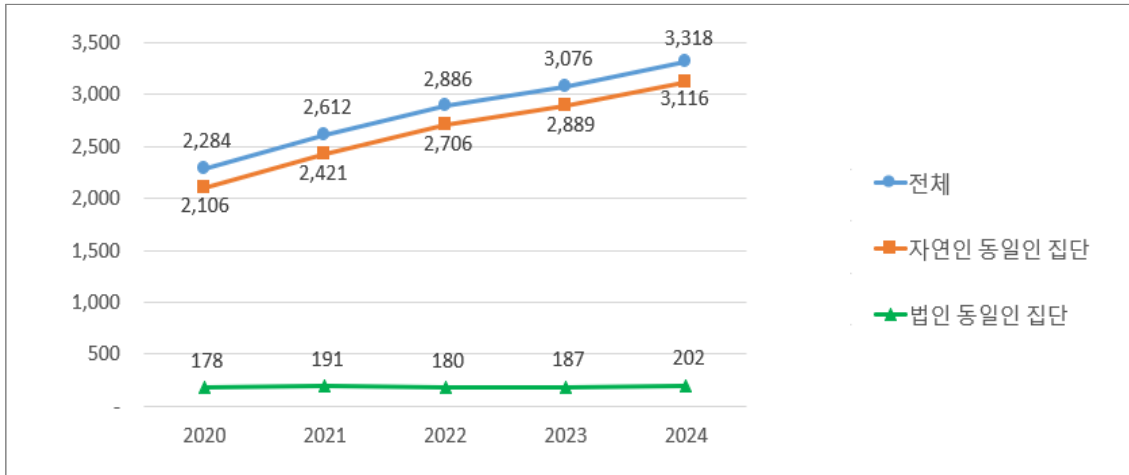
- 다만,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 자산총액은 (i)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하고, (ii)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분할,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규모기준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경우라 하여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음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국내총생산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2024년의 경우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기업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는 2020년 2,284개에서 2024년 3,318개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림 Ⅲ-1] 연도별 공시집단 계열회사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2024. 5.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 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버금가는 큰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모법인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법인의 임원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이때 최다출자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합산하여 판단함
 - 직접적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소유하는 경우(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에도 적용됨
 - 다만,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함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와 합산한 규모기준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 개별 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업 제도가 마련되었음

- 관계기업제도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지배·종속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기준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 및 손자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실질적 지배(50% 이상 소유한 경우): 100% 합산
 - 형식적 지배(50% 미만 소유한 경우): 그 비율만큼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를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경우: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만큼 매출액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으로 지배한 경우: 지배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소유비율과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로 합산

- 다만,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고, 관계기업에 속한다고 하여도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었던 세제, 자금, 기술지원 등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
 - 다만, 다음 사유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음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을 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 ③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④ 유예받은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당초 3년이었으나,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5년으로 연장되었음

(나) 중소기업 적용 법률

- 중소기업중앙회의 분류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법률은 헌법 외에 총 20여개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
- 우리 「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199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범위 및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음

중소기업 관련 법률 현황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은행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 중소기업사업전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3. 유통산업발전법

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6.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9. 도시형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20.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의 범위 및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방향²¹⁾

- 중소기업의 범위 및 기본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기본방향성에 대해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가 행하여야 할 중소기업 관련 시책

- 「중소기업기본법」
 -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위한 시책(제5조)
 - 경영합리화와 기술향상을 위한 시책(제6조)
 - 판로확보를 위한 시책(제7조)
 -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제8조)
 - 중소기업의 구조전환에 필요한 시책(제9조)
 - 중소기업과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시책(제10조)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시책(제11조)
 - 공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시책(제12조)

21) 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분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분류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중소기업현황」, 2023. 12, p. 6면 참조.

- 중소기업자의 조직화를 위한 시책(제13조)
- 국제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제14조)
-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시책(제15조)
- 소기업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시책(제16조)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제17조)
- 금융 및 세제지원을 위한 시책(제19조)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제19조의2, 제20조)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20조의2)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제20조의3)

□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경영기반 확충 및 판로확보 등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계획 수립 및 자동화지원 사업
- 중소기업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협동화 사업,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국제화지원 사업 등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설치에 관한 사항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발굴 및 육성
-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연구회 지원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설치 등

□ 중소기업자 조직화 및 공제제도 확립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조직으로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설립 근거 규정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 등

□ 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전환지원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수탁, 위탁거래의 공정화 방안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방안 등

○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를 위한 특례
-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
-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전문기관 지정
-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 공급기업 육성 및 우수기업 선정, 지원 등

□ 중소기업 창업촉진 및 육성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 신산업, 기술 창업의 촉진 등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에 대한 특례
- 창업기반 구축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기반 구축
 - 자금공급의 원활화 방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 기업활동과 인력공급의 원활화
 - 입지공급의 원활화 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차별적 관행의 시정
 -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촉진
 -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경영현대화 촉진
 -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기금의 설치
 - 소상공인연합회의 설치 등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력기술 고도화 지원
 -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등
-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규제완화 등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지원정책 수립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운영
 -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 의무고용의 완화
-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 검사 등의 완화
- 진입제한 등의 완화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발전계획의 수립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
-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등

□ 금융지원 확대

○ 「중소기업은행법」

- 중소기업은행의 설립, 업무 및 감독 등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업무, 회계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업무 등

□ 기타 중소기업 관련 규정이 있는 법률

- 위의 경우 중소기업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제공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제14조)

- 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7조 제6항)

- 이 밖에도 매우 많은 수의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함

라. 중견기업의 정의 및 적용 법률

(가) 중견기업의 정의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의미(제2조 제1호)
 - 즉, 동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²²⁾ 중 (i) 규모기준 및 (ii)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iii) 공공기관 등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 하고 있음

- 규모기준에 따른 중견기업의 범위
 - 규모기준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말함
 - 구체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i)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ii)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업종과 관계 없이 중견기업에 해당됨
 - 이러한 기준들은 「중견기업법」에서 따라 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즉,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함
 - 중견기업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독립성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독립성 기준에 따른 중견기업의 범위
 -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기업과의 관계(독립성)를 고려하여 중견기업에 포함시키거나, 중견기업에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음

22) 기업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나,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알기 쉽게 풀어쓴 중견기업 범위해설」, 2022. 2, p. 4.

- 먼저 매출규모 등 규모기준으로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대출자자(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산)인 기업의 경우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또한, 관계기업과 합한 규모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견기업으로 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나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 중견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규모라 할지라도,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으로서, 이에 속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참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분류하며, 기업집단은 그 규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필요한 규제들을 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24년 기준으로 총 48개 기업집단이 지정되어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함

2024년 5월 기준 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기업집단(40개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8개사)
한국엔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 태광, 금호석유화학, 다우키움, 두나무, 삼천리, 동원, KG, HL, 한국지엠, 아모레퍼시픽, 대방건설, 한국항공우주산업, 애경, 엠디엠, 크래프트, 삼양, 보성, 동국제강,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글로벌세아, 아이에스지주,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지에스,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카카오, 엘에스, 두산, DL, 셀트리온, 에이치엠엠, 중흥건설, 미래에셋, 네이버, 현대백화점, 에스-오일, 부영, 쿠팡, 금호아시아나, 하림, SM, 에이

공시대상기업집단(40개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8개사)
유진, 영원, DN, 고려에이치씨, 오케이금융 그룹, BGF, 대신증권, 하이트진로, 농심, 신영, 한솔, 반도홀딩스, 삼표,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치디씨, 영풍, 효성, 호반건설, DB,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장금상선,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오씨아이, 태영, 넥슨, 세아, 엘엑스, 넷마블, 에코프로, 이랜드

□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경제력 집중문제나 불공정 거래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구분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적용되는 규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등 공시(제11조의2)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1조의3) 3.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제11조의4) 4. 계열회사 편입·제외(제14조의2) 5. 사익편취 금지(제23조의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경제적 집중 억제 규제 전부 2. 상호출자 금지(제9조) 3. 순환출자 금지(제9조의2) 4. 채무보증 금지(제10조의2) 5.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11조)

○ 아울러 (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도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 기업 유형에 따른 중견기업의 범위

- 「중견기업법」은 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과 관계없이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 (i)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ii)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iii)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iv)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v)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가 이에 해당함

○ 위 (iv)의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다음 기업을 의미함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은행 및 저축기관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앙은행	생명보험업	금융시장 관리업
중앙은행	생명보험업	금융시장 관리업
일반은행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국내은행	손해보험업	증권중개업
외국은행	보증보험업	선물중개업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사회보장 보험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신용조합	건강 보험업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거래 지원 서비스업
저축기관	보험업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재보험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재보험업	서비스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재보험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투자업	연금 및 공제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업	연금 및 공제업	손해 사정업
여신금융업	개인 공제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금융리스업	사업 공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개발금융기관	연금업	서비스업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지주회사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나) 중견기업 적용 법률

□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i) 중견기업의 범위 및 특례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과 (ii)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로 구분할 수 있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범위를 상술한 바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각종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중견기업자의 책무

제5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제6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제6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7조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8조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9조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제10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제11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2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13조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제14조 대기업인 이력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제15조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제16조 중소기업 음부즈만에 관한 특례

제1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제17조의3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4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제17조의5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6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7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8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 제18조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 제19조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 제20조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제21조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 제22조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제23조 전문기관
- 제24조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 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 제25조의2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 제26조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27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 제28조 인식개선 등
- 제28조의2 중견기업 주간

제5장 보칙 및 벌칙

-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1조 과태료

□ 기타 개별 법률

- 「중견기업법」 외에 개별 법률에서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들이 다수 있음
 - 예를 들어 「대외무역법」 제8조의2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출확대를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할 때(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견기업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함) 대략 26여개의 법률이 존재함

중견기업관련 법률 현황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관세법
3. 국가전력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8.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9. 대외무역법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무역보험법
1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13. 발명진흥법
1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6. 산업발전법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소득세법
19.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 신용보증기금법
21. 여신전문금융업법
2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3. 조세특례제한법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5. 지방세특례제한법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마. 대기업의 정의 및 적용 법률

(가) 대기업의 정의 및 범위

- 대기업의 법적 정의 및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중견기업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상술한 바와 같이 「중견기업법」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기준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많은 법률들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를 규정하면서, 대기업의 기준을 종업원 수 또는 자산규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방위산업발전법」에서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보고 규제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규제를 하고 있음
 - 「중견기업법」이 한시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법상 기준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별 법률들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 중소기업과 규제대상 대기업을 분류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짐

- 정리하면 대기업의 정의 및 범위는 (i) 「중견기업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 (ii)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위한 개별법상의 분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나) 대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 본 연구의 경우 기업의 성장단계별 차등규제가 주된 연구테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종업원 수나 자산규모 등

의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포괄하여 대기업 관련 법률 및 규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개별 법률에서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근로자 수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음

〈표 Ⅲ-4〉 법률별 대기업 분류기준

법률	대기업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 3% 이내 건설업자
고령자 고용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정책 기본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공정거래법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금융지주회사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투자일임재산 5천억원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업협동조합법	자산총액 1,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뉴스통신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방송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방위산업발전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표 Ⅲ-4〉의 계속

법률	대기업 기준
벤처투자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보험업법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소프트웨어진흥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법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생협력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생계형 적합업종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신문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용정보법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신탁법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연구실안전법	상시연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외부감사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은행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이러닝산업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인터넷방송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인터넷전문은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임금채권보장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자본시장법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장애인고용법	근로자 300명 이상
전기공사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표 Ⅲ-4〉의 계속

법률	대기업 기준
전기사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자금융거래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신건강복지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지방계약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방대육성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체육시설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하도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이처럼 많은 법률에서 대기업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차등규제 현황 분석

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규제 변화

(가) 개요

-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관련한 법률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그 결과 2024년 현재 중소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둔 법률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음

- 중소기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률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률들이며, 따라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는 주어지지 않는 특례들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일 때 지원받았던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려하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로 지적되는 것이 조세혜택, 금융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공공조달의 특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졸업을 5년간 유예하고 있음
- 「중견기업법」 및 기타 법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견기업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받던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규제가 증가하고 있음

(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규제 변화의 현황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i)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그 지원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와 (ii) 지원조치가 중단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i) 지원조치가 연장되는 경우는 「중견기업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지원이 연장되는 경우와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외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치가 중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지원조치가 중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후에도 적용되는 지원제도

〈표 Ⅲ-5〉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후에도 적용되는 지원제도

법률	내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 대기업인 이력사업자 참여 제한의 특례
	-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 중견기업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연구기관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관세법	- 세관검사 비용 지원
	-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특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등의 혁신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관한 지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기술료 전부 또는 일부의 감면 조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 허용

〈표 Ⅲ-5〉의 계속

법률	내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 지원
대외무역법	-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무역보험법	-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 시기 등의 우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공동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발명진흥법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뿌리기업에 중견기업 포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연구인력의 지원
	-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산업발전법	- 중견기업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특례
	- 특수관계법인과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특례
	- 연부납부 기간 특례
소득세법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범위의 특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신용보증기금법	- 중견기업에 대한 팩토링 운영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기술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외 다수(이하 생략)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환경 개선 지원

〈표 Ⅲ-5〉의 계속

법률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민관협력형 신산업, 기술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투자세액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등 다수(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종료되는 지원제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견기업법」이나 개별 법령에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조치는 종료될 수밖에 없음
- 이하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단되는 지원제도 중에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는 법률의 내용을 (i) R&D 및 기술지원, (ii) 고용 및 인력, (iii) 금융 및 회계, (iv) 세제 및 (v) 공정거래·하도급/판로·수출/입지·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봄²³⁾
- R&D 및 기술지원

〈표 Ⅲ-6〉 R&D 및 기술지원제도

지원/규제	법령	내용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가능 * 지원사항: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미취업 이공계 졸업자를 수습연구원으로 채용시 인건비 보조, 연구전담요원의 국내외 연수기관 교육·훈련비

23) 이에 대한 내용은 중견기업연구원, 『중견기업 성장에 부담이 되는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 2020. 10을 바탕으로 최근 법률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음.

〈표 Ⅲ-6〉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비용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중소기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일부 지원 가능
청정생산기술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9조	○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 지원 및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산업융합촉진법 상 중견기업 정의	「산업융합촉진법」 제24조제1항제3호	○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아닌 기업에 산업융합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중견기업의 중소·벤처 인수시 중소·벤처 지위 유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7조의4, 제9조; 「중견기업법」	○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중소·벤처로서의 지원 상실(단, 3년간 유예)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정부출연금 차등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등,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제22조	- 중소기업: 공동수행 3/4 이내, 단독수행 1/2 이내 - 대기업: 공동수행 3/4 이내, 단독수행 1/3 이내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참여기업 연구 개발비 부담기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별표2	○ 기업부담금(현물+현금)차등적용: 대기업(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기업(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복합구성 시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는 40%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25%(20%) 이상 ○ 기업부담금(현금) 차등적용: 대기업(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제14조 제10항에 따른 청년인력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표 Ⅲ-6〉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대기업의 경우 현 물투자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내) 및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시설비(대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기술료 감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기술료 감면 차등 적용: 중소 70%(해당과제 참여 시 80%), 중견 50%(해당 과제 참여 시 60%),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0%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차등 징수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대한 기술료 징수기준 차등적용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10%, 중견기업30%, 대기업 40%
농림식품과학기술연구 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기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제5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료 징수(시행령 제13조, 규정 제35조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2. 기술료감면(시행령 제1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100%, 중소기업 70%(연구과제 참여시 80%), 중견 50%(연구과제 참여시 60%), 상출제한집단 30%(연구과제 참여 기업에 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 시행령 제12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실용화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제3항, 제7조 제6항, 시행령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 지원
항공우주산업 사업자 대상 제한 및 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제12조, 제13조,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6호~제8호, 제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 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소기업, 벤처기업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실시자에 대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출연금 지급 등) * 법 제12조: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항공우주

〈표 Ⅲ-6〉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과학기술 연구·개발, 항공우주과학기술 관련 전시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 * 법 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 허용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나노기술연구개발 지원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육성을 지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통신 연구개발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 예산의 15%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중소기업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 제공 및 자문,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경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

□ 고용·인력지원 및 규제

〈표 Ⅲ-7〉 고용·인력지원 및 규제

지원/규제	법령	내용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우선 지원대상 범위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12조(별표1)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시행에 있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우선지원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업분류</th> <th>상시근로자 수</th> </tr> </thead> <tbody> <tr> <td>1.제조업</td> <td>500명 이하</td> </tr> <tr> <td>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td> <td>300명 이하</td> </tr> <tr> <td>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td> <td>200명 이하</td> </tr> <tr> <td>13.그 밖의 업종</td> <td>100명 이하</td> </tr> </tbody> </table>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500명 이하	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500명 이하									
		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등	○ 사업 규모의 축소,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주가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에게 차등*하여 필요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20.7): 지원 비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20.2월~3월 3/4; 20.4월~9월 9/10)과 대기업(20.2월~9월 2/3)으로 차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	○ 합법적인 외국인 채용을 위한 제도로서,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규모별 * 채용쿼터를 발표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어업) 연근해어업 등,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이공계 인력 채용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협동조합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원										

〈표 Ⅲ-7〉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고용보험법」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 련 지원규정」 제12조-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체가 특정 목적(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 양성,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을 할 수 있음(시행령 제9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고용보험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 자금 대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지원 * 우선지원대상 <table border="1" data-bbox="678 857 1361 1305"> <thead> <tr> <th data-bbox="678 857 1190 913">산업분류</th> <th data-bbox="1190 857 1361 913">상시근로자 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78 913 1190 969">1.제조업</td> <td data-bbox="1190 913 1361 969">500명 이하</td> </tr> <tr> <td data-bbox="678 969 1190 1126">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td> <td data-bbox="1190 969 1361 1126">300명 이하</td> </tr> <tr> <td data-bbox="678 1126 1190 1249">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td> <td data-bbox="1190 1126 1361 1249">200명 이하</td> </tr> <tr> <td data-bbox="678 1249 1190 1305">13.그 밖의 업종</td> <td data-bbox="1190 1249 1361 1305">100명 이하</td> </tr> </tbody> </table>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500명 이하	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500명 이하											
2.광업/3.건설업/4.운수업/5.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도매 및 소매업/10.숙박 및 음식점업/11.금융 및 보험업/12.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지원	「고용보험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 자금 대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3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 학습조직화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과 체계적 현장 훈련 등 지원 										

〈표 Ⅲ-7〉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직업훈련 실시, 시설·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 또는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역고용촉진 지원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제22조,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증설하여 지역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기업은 1/3)으로 설정 * 지정기간에 고용된 근로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 중 30/100에 대해서만 지급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기준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시행령 제12조, 별표1) :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 200명 이하, 그 외 100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 출산전후 휴가 등의 부여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단, 지원금(근로자 지급* 및 대체인력 인건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차이 *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연간총액: 360만원, 1개월지급액: 30만원)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한 근로자에 대해 적용) 적용 시 (연간총액: 480만원, 1개월지급액: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연간총액: 360만원, 1개월지급액: 30만원) ② 대규모기업(연간총액: 120만원, 1개월지급액: 1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20만원, 1개월 지급액: 80만원)

〈표 Ⅲ-7〉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② 대규모기업(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30만원, 1개월 지급액: 30만원) - 단,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금융지원

〈표 Ⅲ-8〉 금융지원

지원/규제	법령	내용
신용보증(우선)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우선적 보증 대상을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규정(제3조) -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기술사업자(기술보증)’와 ‘종업원 수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 기업(신용보증)’ 등으로 한정(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에 대한 최소보증비율제 도입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제26조, 시행령 제5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 현행의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총 보증금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보험업 포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현재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금융업, 보험·연금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한 이유없이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

□ 세제지원

〈표 Ⅲ-9〉 세제지원

지원/규제	법령	내용
중견기업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의 개선	「조세특례 제한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가업상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3호 등에서 중견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3천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는 2015년부터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4항에서도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 연구·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당기 분) 확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지출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증가분 또는 당기분 방식* 중 선택) * 증가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기업규모별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외 25%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기업규모별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그 외 0~2%
신성장·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 발비 세액공제율 의 인상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업유형 등에 따른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중소 30%, 코스닥 상장 중견 25%, 그 외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코스닥 상장 중견 15%, 그 외 10% 한도) × 3}
기업부설연 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46조, 시행령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배제 또는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중소기업 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경영권 프리미엄)가 있다고 간주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는 것임

〈표 Ⅲ-9〉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결손금의 소급공제의 허용	「법인세법」 제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 결손금의 소급공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결손금 공제한도액의 증액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76조의 13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고 있음 *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시행령 제2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 유지, 1인당 시간당 임금 유지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21.12.31.까지) * 공제금액(①+②):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과세기간별로 감면 한도액: 150만원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①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100 * 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

〈표 Ⅲ-9〉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중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의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1항	○ 「조세특례제한법」은 최소한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항목에서 제외 *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중견기업 8~9%, 그 외 기업 10~17%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방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5	○ 중소기업만 내일채움공제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 지원 * 성과보상기금 공제금 수령 시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령 제71조	○ 중소기업이 '18.12.31이 속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5%(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10%, 신성장서비스업 중소기업 7.5%)를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
가업상속 공제 대상 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5조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경영기간 10~19년: 200억원 한도 - 경영기간 20~29년: 300억원 한도 - 경영기간 30년 이상: 500억원 한도 ○ 상속공제 후 7년 이내 사후관리요건(고용유지의무: 평균 기준 총급여액 80%) 미충족 시 상속세 추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시행령 제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금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20~30%(중소 30%) '18.12.31까지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 -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과 당기분 중 선택 * 증가분: 40%(중소 50%), * 당기분: 중소 25%, 중견 1~3년차 15%, 중견 4~5년차 10%, 중견(매출 5천억원 미만) 8%, 그 외 2~3%

〈표 Ⅲ-9〉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청년고용증대 기업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15조의4 제1항, 시행령 제67조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 20만원(중소, 중견기업 (매출 3천억 미만)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17.12.31까지)
고용창출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14조, 시행령 제67조	○ '17.12.31까지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사업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를 하는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① 기본공제: 중소기업 0.3%, 중견기업(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 전권역 내 투자: 0.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 0.2%) ② 추가공제: 수도권 0.3%(중소·중견기업: 0.4%), 비수도권 0.4%(중 소·중견기업: 0.5%)
중소기업 신규 채용에 따른 공제	「지방세법」 제84조의5, 시행령 제85조의3	○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단,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 공제액=(신고한 달 종업원 수·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월 적용급여액
근로소득증대 기업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15조의3 제1항 및 제3항	① '17.12.31까지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상 증가하거나 같은 경우 평 균임금 증가분의 0.5%[중소/중견(3천억 미만) 1%] 세액공제 ② '17.12.31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 우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0.5% 공제(중소 2%, 매출 3천억 미만 중견 1%)
연결납세법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범위 차등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 시행령 제120조의14, 제120조의17	연결납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 범위는 각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60%로 제한(중소/회생계획 중 연결법인 등 전액) (중소 우대: 중소 100%-중견 60%-대기업 60%) *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 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 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일감몰아주 기 증여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3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경영가 및 경영가의 친족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경영 가 및 친족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과세 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 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50%, 중견40%)를 초과할 것, ③ 지배주주와 친족주 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 10%)를 초과할 것 (단, 중소기업 간 거래 과세대상 제외)

〈표 Ⅲ-9〉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p>* 중견기업 기준: 매출액 5천억원 미만</p> <p>- 기존 계산식: 수혜법인의 세후이익*정상거래비율의 1/2(중소·중견기업은 정상거래비율) 초과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초과 주식보유비율</p> <p>- 개정된 계산식: 수혜법인의 세후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중소:정상거래비율/중견:정상거래비율 1/2 초과분/대기업: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5 초과분)*주식보유비율(중소: 한계보유비율 초과분/중견: 한계보유비율의 50% 초과분/대기업: 주식보유비율)</p>
중소기업 일감떼어주기 과세 대상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시행령 제34조의4	<p>○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 제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등)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이익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p>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p>○ 중소기업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18.12.31(공장신설 시 '20.12.31)까지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p>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시행령 제75조	<p>○ 중소기업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전환전사업”)을 '18.12.31까지(공장 신설시 '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업(동법 제100조 제3항)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4년간 개인 지방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p> <p>* 전환전사업을 양도·폐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공장신설시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p>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시행령 제77조	<p>○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17.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 개인 지방소득세의 100%, 다음 3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p> <p>*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4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p>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60조	<p>○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20.12.31까지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후 7년간(수도권 내 5년간) 100%, 그 후 3년간(수도권 내 2년간) 50% 세액감면</p> <p>- 합병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는 세액감면하지 않음(시행령 제 60조 제7항)</p>

〈표 Ⅲ-9〉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12.31까지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기술이전 소득·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04조, 시행령 제58조	○ (제1항) 중소·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 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18.12.31까 지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개인 지방 소득세 50% 경감, ○ (제2항) 내국인이 특허권 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 부터 '18.12.31까지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10% 한도(중소기업: 10%,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 권 취득 시 중견기업: 5%), ○ (제3항)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18.12.31까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25%를 경감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32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중에서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금 등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제1호 제1항 가목으로 중소기업 혜택 명문화
중소기업 세율불균형 물품 면세	「관세법」 제89조, 시행규칙 제35조	○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 는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제조,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면제
특정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관세법」 제93조 제8호, 시행규칙 제43조	○ 특정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 대상물품: 동식물 번식 및 종자개량 물품, 박람회 및 국제경 기대회 등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외국 원수와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 주문에 따라 제작 한 기계·기구의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물품 등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99조	○ '18년 말까지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0.3%(신규상장 중소 및 중견기업은 0.4%) 공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중소기업 우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	○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 비 1,200만원[중소: 3,600만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중소 우대: 중소 3,600만원-중견 1,200만원-대기업 1,200만원)
설비투자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 제한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 '20.06.30까지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설 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 금액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 가능 ① 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 사업용 고정자산 ② 그 외 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

〈표 Ⅲ-9〉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1항, 시행령 제90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개인지방소득세액 공제 * 중소기업: 1%, 그 외: 0.7% **1. 무주택 종업원 임대를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시설 4.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5. 종업원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경단녀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 중소기업이 경단녀 근로자를 '17.12.31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17.12.31까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정규직 전환 1인당 20만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 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3항	○ 상생협력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22.12.31까지),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대기업 1%)
산업수요맞춤형고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시행령 제68조	○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병역 이행 후 '17.12.31까지 복직시킨 경우 복직 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6조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18.12.31까지) * 중소기업: 1%, 중견기업: 0.8%, 대기업: 0.7%

〈표 Ⅲ-9〉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2조, 시행령 제104조	○ (기존) 해외진출기업이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5년말까지 국내(수도권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이전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개인 지방소득세의 100%, 다음 2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①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전부) 이전하는 경우 ②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시행령 제57조	○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18.12.31까지) * 중소기업: 0.6%, 중견기업: 0.3%, 대기업: 0.1%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시행령 제64조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19.12.31까지) * 중소기업: 0.6%, 중견기업: 0.3%, 대기업: 0.1%
환경보전시설 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시행령 제65조	○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19.12.31까지) * 중소기업: 1%, 중견기업: 0.5%, 대기업: 0.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시행령 제66조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19.12.31까지) * 중소기업: 0.7%, 중견기업: 0.5%, 대기업: 0.3%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지방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1항, 시행령 제52조	○ 생산성향상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17.12.31까지) * 중소기업: 0.7%, 중견기업: 0.5%, 대기업: 0.3%
안전설비 투자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 시행령 제63조	○ 안전설비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방세액공제('17.12.31까지) * 중소기업: 0.7%, 중견기업: 0.5%, 대기업: 0.3% **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1%

〈표 Ⅲ-9〉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지방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3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개인 지방소득세액 공제('19.12.31까지) * 중소기업: 1%, 그 외: 0.7%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 중소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관세분할납부 대상 및 요건	「관세법」 제107조 제2항, 시행규칙 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분할납부 허용 - 대상: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장비 물품, 2. 정부나 지자체 수입물품 3.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 연구기관 등 수입 기술개발 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 물품 4.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는 수입물품 등 - 요건: 1. 부분품이 아닐 것 2. 관세감면을 받지 않았을 것 3.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중소기업 100만원 이상) 4. 덤핑방지관세나 계절관세 물품이 아닐 것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이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21.12.31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 세액감면 [기술대여] -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을 '21.12.31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25% 상당 세액감면
상속/증여세 물납 한도 차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70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장기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연부연납기간 중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하여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유치 요청 및 통관·유치 해제요청 시 담보제공 의무	「관세법」 제235조 제3항~제5항, 시행령 제2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통관 및 유치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120% (중소 40%) 상당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중소 우대: 중소기업 120%-대기업 120%)

□ 공정거래 관련 규제

〈표 Ⅲ-10〉 공정거래 관련 규제

지원/규제	법령	내용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상생협력법 제정
중소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7조의2, 시행령 76조의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31조의2, 시행령 92조의4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대규모유통업자 범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 “대규모유통업자”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또는 대기업 계열사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 포함
과태료 부과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7조(별표3)	○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구입비용 고지 규정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때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

□ 판로지원

〈표 Ⅲ-11〉 판로지원

지원/규제	법령	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참여 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대기업(「상생협력법」상 대기업, 중견기업 포함)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로 정의 * 적합업종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사실상 확장 자제, 진입 자제, 시장축소 등의 규제로 작동

〈표 Ⅲ-11〉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관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부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발주시 필요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주식교환, 합병절차 간소화, 컨설팅 지원, 자금지원, 고용안정지원,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음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드론기술 포함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관로지원법」 제6조에 따른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중소SW기업 품질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관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은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녹색제품 구매촉진 지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내·외 판매 지원, 생산·유통·판매 자금 지원,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품질향상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 등 수행 * 녹색제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우수발명품 에 대한 우선구매	「발명진흥법」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음
중소기업 물류현대화 사업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관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제조업자가 생산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개선하는 물류현대화사업 추진 시 자금, 지도·연수 및 정보제공 등 지원

〈표 Ⅲ-11〉의 계속

지원/규제	법령	내용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중소기업 혁신기업에 물기업 포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2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3% 이상 2. 매출액 대비 수출액 5% 이상 3. 외국정부,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소공간정보 사업자에 대한 사업참여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시 중소기업정보사업자에 대한 수주기회 증대 노력 의무
품질인증 중소기업 생산제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해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관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리기관이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 가능
중소기업자 공간정보 관련 창업의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지원을 제공 *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공간정보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법률·세무·회계 상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나.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규제 변화

(가) 개요

-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지원은 대부분 제외되고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됨
 -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대표적인 예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음
 - 아울러 「상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규제 및 「자본시장법」상 규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그 밖에 개별적인 법률에서 근로자 수, 자산규모, 상호출제한기업집단 여부에 따라 ‘진입 및 영업규제’, ‘소유·지배구조 규제’, ‘고용규제’, ‘시설규제’ 및 ‘차별적 대우’ 등의 규제가 강화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나)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들이 새롭게 적용됨

〈표 Ⅲ-12〉 공정거래법상 규제기준 및 내용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2조	(소유·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1%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
제11조	(공시규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의 신고 의무
제17조	(소유·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의무

〈표 Ⅲ-12〉의 계속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18조 2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금지 - 지주회사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상장회사는 30%, 벤처지주회사는 20%)소유해야 함 -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외의 국내회사 주식 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3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상장회사는 30%, 벤처지주회사는 20%)소유해야 함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금지
제18조 4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보유 금지
제18조 5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보유 금지
제18조 7항	(공시규제)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와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 의무
제20조 2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함
제20조 3항	(소유 지배구조)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금지 -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

〈표 Ⅲ-12〉의 계속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업을 영위하는 행위 금지 등 -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제한 등
제20조 4항	(공시규제)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일반지주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 의무
제20조 5항	(공시규제)	지주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의무
제19조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려는 경우 채무보증을 해소
제21조 1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금지
제21조 2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특정 사정에 의해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는 6월 이내에 처분의무
제21조 3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됨
제22조 1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순환출자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아니 됨
제22조 2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특정 사정에 의해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6월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함
제23조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제24조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금융업/보험업은 제외)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

〈표 Ⅲ-12〉의 계속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25조 1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제25조 2항	(소유 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 허용)
제26조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할 의무 있음
제27조 1항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할 의무
제28조 1항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기업집단 현황에 대해 공시할 의무
제28조 2항 1호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사항을 공시해야 함
제28조 2항 2호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이나 순환출자 현황 등 공시해야 함
제29조 1항 1호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함
제29조 1항 2호 가목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표 Ⅲ-12〉의 계속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함
제29조 1항 2호 나목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함
제29조 1항 2호 다목	(공시규제)	공시대상기업 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함

(다) 대기업에 대한 상법상 규제

- 「상법」의 경우 자본금이나 자산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을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하여 그 지배구조 요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음

〈표 Ⅲ-13〉 상법상 규제기준 및 내용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542조의6 2항	(소유 지배구조)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시 요건 0.5% 이상(일반 상장회사는 1% 이상)
제542조의6 3항	(소유 지배구조)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이사, 감사 해임청구권 행사 시 요건 0.25% 이상(일반 상장회사는 0.5% 이상)
제542조의6 4항	(소유 지배구조)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회계장부 열람권 행사 시 요건 0.05% 이상(일반 상장회사는 0.1% 이상)
제542조의6 5항	(소유 지배구조)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행사 시 요건 0.025% 이상(일반 상장회사는 0.05% 이상)
제542조의7 2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자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실시 청구 가능
제542조의8 1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제542조의9 3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일정 규모 이상 거래시 이사회 사전 승인 필요
제542조의9 4항	(공시규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거래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등을 보고하여야 함
제542조의10 1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사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선임
제542조의10 2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등은 상근감사가 될 수 없음

〈표 Ⅲ-13〉의 계속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542조의11 1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2/3이상이어야 함
제542조의11 2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함
제542조의11 3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등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제542조의12 2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제542조의12 3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이때 상장회사에서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함
제542조의12 4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3%, 그 외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됨 ②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됨
제542조의12 7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준용함. 이때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 그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
제542조의13 1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
제542조의13 2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제542조의13 5항	(소유 지배구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중에 임명해야 함
제542조의13 9항	(자료제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임직

〈표 Ⅲ-13〉의 계속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상장사	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제542조의13 10항	(소유·지배구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라) 대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규제

- 자본시장법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소유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용을 달리 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표 Ⅲ-14〉 자본시장법상 규제기준 및 내용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28조의2	(고용규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근 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제31조제3항	(소유·지배구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금융위원회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제87조 3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15% 이내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표 Ⅲ-14〉의 계속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165조의20	(소유·지배구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9조18 1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함
제249조18 2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함
제249조18 3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됨
제249조18 4항 1호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제249조18 4항 2호-1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제249조 제2항 4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표 Ⅲ-14〉의 계속

조항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제249조18 4항 2호-2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제249조 제2항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제335조의13 1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이 신용평가회사주식의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의결권은 해당 한도 내로 제한
제335조의13 2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음
제345조 1항 2호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 또는 회사와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됨
제345조 1항 3호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 또는 회사와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등을 해서는 아니 됨
제345조 2항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 제3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제345조 4항-1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345조 제1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제345조 4항-2	(소유·지배구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34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대기업에 대한 기타 법률상의 규제

□ 그 외에도 다양한 개별 법률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규제가 필요한 대기업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Ⅲ-15〉 개별 법률상 규제기준 및 내용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 3% 이내 건설업자	-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공사 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음
「고령자 고용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대기업은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 고용에 노력 - 사업주는 매년 고용자 고용현황을 제출 -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필요한 조치 시행 권고 -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명령 - 사업주는 매년 정년 제도의 운용현황을 보고 등
「고용정책 기본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근로자 수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차등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 에 따라 적립금 운용 - 운용능력 및 전문성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공정거래법」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세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 정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음
「근로복지 기본법」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비상장법인의 경우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로 지정

〈표 Ⅲ-15〉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금융지주회사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감소 및 정관 변경 시 금융위에 사전 신고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지배관계 형성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영리목적 업무 제한 - 다른 회사의 출자지원을 위한 신용공여의 금지 - 비금융지주회사의 신용공여 합계액의 제한 -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 - 비금융지주회사의 부채총액 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4/100 초과소유 금지 - 보유한도 초과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보유한도 초과한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표하는 금융기관 선정 - 내부통제정책 등에 관한 평가 및 점검 -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및 평가, 점검 -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 경영건전성의 확보 - 재정건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자기자본 확충 - 자본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평가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협의체 운영 -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 -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의 조치 명령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위원회 설치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준법감시인 선임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완화(75/10000)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 감사 1명 이상 선임
	투자일임재산 5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준법감시인 1인 이상 선임
「남녀고용평등법」	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기준 미달 시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감면 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 농업경영체 100%,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0%, 대기업 30% 감면

〈표 Ⅲ-15〉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농업협동조합법」	자산총액 1500억원 이상	- 조합원 아닌 이사 선임 의무 - 상임이사 선임 의무 - 상임감사 선임 의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 비상임조합장 선임 의무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농촌융합산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이 농촌융합산업 사업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 등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정하는 경우 사업조정 신청 가능
「뉴스통신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 및 계열사의 뉴스통신사 지분 1/2 초과 취득 금지 - 1/2 초과하여 취득 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1/2 초과취득 시 6개월 내에 시정 - 소유제한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부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대주주에게 일정한도 이상 신용공여하는 경우 금융위에 보고 및 공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정수 기술료 차등 부과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과 계열사는 광고판매대행자 지분 10/100초과 소유 금지
「방송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과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분 10/100초과 소유 금지 등
「방위산업발전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연기 또는 조정 등을 권고 가능
「벤처투자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투자 금지 - 창업기획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 금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차등 - 사업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표 Ⅲ-15〉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보험업법」	자산총액 1조원 이상	-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 필요 등
「소프트웨어진흥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상법」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생협력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대기업 사업조정신청 가능 - 대기업에 대해 확장 자제, 진입자제 등 권고 가능 -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내용 공포 가능 - 특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 의무 등
「생계형 적합업종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공포 - 대기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일정 기준 이상의 조합에 대한 외감법상 감사 의무화
「신문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 등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1/2초과 소유 금지 - 일반일간신문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1/2 초과 소유한 경우 의결권행사 불가 - 신문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법」	공시대상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가 10%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1인을 임원으로 선임 -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신탁법」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유한책임신탁은 외감법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함
「양식산업발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양식업 면허 금지
「연구실안전법」	상시연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안전 관련 업무만 담당토록 해야 함
「영유아보육법」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표 Ⅲ-15〉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외부감사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무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보 파기 등 제한 - 내부회계관리자 1인 선임 - 회사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무 등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및 변경선임 요구권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주식현황 등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의무
「유통산업발전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서 지자체장에게 제출 -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질 점검 및 개선 권고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명령 가능 - 회계감사결과의 공개 등
「은행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은행주식 4/100(지방은행 15/100) 초과보유 제한
「이러닝산업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 등
「인터넷방송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 제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34/100이내에서 보유 가능
「임금채권보장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및 용자의 제한 등
「자본시장법」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장애인고용법」	근로자 300명 이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 갖춘 자에 의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전기공사업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을 정할 수 있음
「전기사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전자금융거래법」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종원원수 300명 이상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표 Ⅲ-15〉의 계속

법령	대기업 기준	대기업에 대한 규제
「정보통신 공사업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음
「정신건강 복지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구성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중대재해 처벌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지방계약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및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지방대 육성법」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 록 노력 -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서 그 채용실적 공개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요청
「체육시설법」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 의무
「하도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은 때에는 언제나 ‘원사업자’로 봄 - 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할지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는 ‘수급사업자’로 보지 않음
「해양수산과 학기술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기술료 차등 감면 * 상출제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어업 경영체 100%
「핵융합 에너지 개발진흥법」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술료 차등 납부 * 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

다. 소결

- 현행 법률상 기준에 따라 기업의 성장단계를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의 3단계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단계별로 법률의 목적에 차이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세제 등의 지원과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 내지는 특례 규정들이 주로 마련되어 있음
 - 대기업의 경우는 경제력 집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 이슈가 주로 문제가 되다보니,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주로 규제적 관점에서의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중견기업은 새롭게 법적 개념으로 정립되다 보니, 중소기업의 연장선상에서의 지원제도와 함께 사실상 대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기업의 성장이 곧 지원의 중단 및 규제의 강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그리고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단계별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IV. 중소기업 성장지원정책 성과평가

1. 성과지표별 증거기반 정량정책 성과평가

가. 2017년~2022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증 평가: 중소기업, 전체

- 제II장에서 구축한 KoDATA-SIMS 결합 패널 자료를 기초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해당 지원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 평가를 진행
 - 고정효과 패널 모형을 활용하여, 지원기업이 지원받지 않은 유사기업에 대해 총자산영업이익률, 매출 등 성과지표에서 거둔 성과 차이에 대해 분석함
-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전체 평가는 아쉽게도 이전 기간을 분석한 기존 사례에 비해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남
 - SIMS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지원받지 않은 유사기업에 비해 총자산영업이익률이 감소하며 매출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고 있음
 - 장우현 외(2014), 장우현(2017) 등 이전 분석에서는 수익성은 감소하지만 매출이 늘어났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우려스러운 결과

<2기간 정책지원 수익성/규모 영향 추정식 예시>

$$y_{i,t} = \alpha + \beta P_{i,t-1} + x_{i,t-2}\gamma + I_{i,t-2}\delta + v_i + v_t + \epsilon_{i,t}$$

$y_{i,t}$: 기업 i의 t-2 연도부터 t연도까지의 총자산영업이익률(매출액) 증분

$P_{i,t}$: 기업 i의 t연도 정책지원 여부

$x_{i,t-1}$: 기업 i의 t-2연도의 특성(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 총자산영업이익률)

$I_{i,t-1}$: 기업 i가 속한 산업 I의 t-2연도의 특성

(평균 매출액, 평균 총자산, 평균 영업이익, 평균 총자산영업이익률, 평균연구개발비)

ν_i : 기업고정효과

ν_t : 시간고정효과

〈표 IV-1〉 정책평가 결과: 고정효과 패널모형, 2017~2022, 중기업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L.지원여부	-0.775*** (0.128)	49.95 (65.76)
L2.매출액	-0.000128*** (7.35e-06)	
L2.총자산	9.36e-05*** (5.89e-06)	0.0337*** (0.00295)
L2.영업이익	-0.00142*** (2.33e-05)	-1.413*** (0.0101)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9.77e-05*** (3.68e-05)	0.152*** (0.0189)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1.89e-05 (5.70e-05)	-0.642*** (0.0290)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00157*** (0.000186)	1.849*** (0.0952)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0.00300*** (0.00109)	4.880*** (0.561)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1.170*** (0.0272)	-60.31*** (14.03)
2019.Year	-0.247* (0.144)	-703.6*** (73.77)
2020.Year	-1.081*** (0.148)	-1,116*** (76.02)
2021.Year	-0.724*** (0.163)	252.0*** (83.28)
2022.Year	-1.164*** (0.177)	1,615*** (90.48)
L2.총자산영업이익률		-18.70*** (1.472)
Constant	14.42*** (0.668)	8,245*** (342.7)

〈표 IV-1〉의 계속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Observations	337,677	337,682
R-squared	0.040	0.092
Number of FirmID	87,853	87,85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 위의 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 가능함. 87,000여개의 중기업에 대해 2017~2022년, 각 2기간간 정책평가를 수행한 결과, 지원받은 중기업은 지원받지 않은 유사 중기업 대비 2년 후 총자산영업이익률은 0.775%p 낮고(유의도 0%), 매출액은 증가했다고 볼 수 없음
 - 지원기업이 비지원기업보다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은 지난 연구의 결과와 일관적이거나,
 - 지원기업이 비지원기업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상당히 특이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에 있어 현재 정책의 성과는 상당히 우려스러움을 의미함

나. 2017~2022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증 평가: 중소기업, 전체

- 중소기업 전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지원기업의 수익성과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지원기업의 성과는 유사한 비지원 기업의 성과에 비해 지원 후 2기간 후 총자산영업이익률 -1.315%p, 매출액 5,800만원 감소로 도출됨

〈표 IV-2〉 정책평가 결과: 고정효과 패널모형, 2017~2022, 중소기업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L.지원여부	-1.315*** (0.0885)	-57.87*** (7.756)
L2.매출액	-0.000329*** (1.58e-05)	
L2.총자산	0.000141*** (1.80e-05)	-0.190*** (0.00151)
L2.영업이익	-0.00813*** (5.88e-05)	-1.914*** (0.00467)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000656*** (0.000143)	0.230*** (0.0126)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00147*** (0.000220)	-0.843*** (0.0193)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00293*** (0.00103)	1.162*** (0.0904)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0.0311*** (0.00521)	-3.595*** (0.456)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920*** (0.0147)	-2.593** (1.293)
2019.Year	0.220** (0.0948)	-190.6*** (8.301)
2020.Year	-1.675*** (0.103)	-424.4*** (8.973)
2021.Year	-1.065*** (0.122)	-184.1*** (10.68)
2022.Year	-1.613*** (0.135)	91.94*** (11.82)
L2.총자산영업이익률		0.0115 (0.106)
Constant	13.70*** (0.615)	3,138*** (53.92)
Observations	2,105,271	2,105,453
R-squared	0.024	0.139
Number of FirmID	727,070	727,15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2. 수익성·규모·사업별 세부 정량정책 성과평가

가. 2017~2022년 수익성-규모별 분석(중기업)

- 앞선 결과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수익성 상하위, 매출액 상하위로 중기업을 분류하여 각 세부 분류그룹에서 발생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매출 상하위에 무관하게 수익성이 상위인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수익성이 하위인 기업들에 지원된 경우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강하게 확인됨
 - 수익성이 상위인 경우, 매출이 하위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지원된 경우에는 2기간 후 매출액이 9,400만원 수준 증가함이 확인됨
 - 이는, 전체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수익성이 하위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서 강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만일 정책 조준을 개선하여, 수익성이 상위인 기업들에게 정책을 보다 더 많이 조준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개연성이 존재함
 - 수익성이 낮은,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주된 정책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해당 결과는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IV-3〉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전기 지원여부	0.112 (0.164)	0.286 (0.315)	-0.990** (0.392)	-0.497*** (0.154)
2기전 매출액	-0.000196*** (9.62e-06)	-0.000847*** (0.000150)	-0.00221*** (0.000123)	-2.08e-05*** (6.81e-06)
2기전 총자산	0.000404*** (1.14e-05)	0.00840*** (0.000169)	-0.000119*** (1.58e-05)	-5.65e-05*** (5.37e-06)
2기전 영업이익	-0.00111*** (2.79e-05)	-0.0478*** (0.000662)	-0.00448*** (0.000184)	-0.00218*** (2.99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4.42e-05 (6.04e-05)	-8.87e-05 (0.000191)	-1.14e-05 (9.29e-05)	-4.74e-05 (3.61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000155** (7.84e-05)	0.000599** (0.000254)	0.000226 (0.000166)	-0.000118** (6.00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000681** (0.000283)	-0.000335 (0.00120)	0.000743* (0.000431)	0.000830*** (0.000210)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00486*** (0.00187)	-0.00173 (0.00396)	0.00165 (0.00322)	0.000597 (0.00100)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629*** (0.0496)	-0.419*** (0.0567)	-0.811*** (0.0728)	-0.325*** (0.0434)

〈표 IV-3〉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019년	-0.997*** (0.189)	-0.319 (0.356)	0.893** (0.408)	0.574*** (0.169)
2020년	-2.240*** (0.206)	-2.407*** (0.396)	2.054*** (0.431)	0.236 (0.178)
2021년	-2.669*** (0.233)	-2.189*** (0.478)	4.388*** (0.490)	1.587*** (0.193)
2022년	-3.912*** (0.267)	-2.917*** (0.539)	5.315*** (0.531)	2.248*** (0.210)
상수	3.454*** (1.066)	5.622*** (2.017)	19.79*** (1.719)	7.120*** (0.847)
관측치수	83,125	82,762	78,895	92,895
결정계수	0.079	0.137	0.030	0.101
기업수	34,950	36,963	37,325	33,630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4〉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상위	2기간 매출액	상위	2기간 매출액	하위	2기간 매출액	하위
전기 지원여부	23.72	93.90***	39.07	39.07	-53.31			
	(150.9)	(28.17)	(95.69)	(95.69)	(181.9)			
2기전 총자산	-0.167***	-0.0146	0.122***	0.122***	-0.0740***			
	(0.0104)	(0.0160)	(0.00385)	(0.00385)	(0.00615)			
2기전 영업이익	-1.470***	-1.132***	-0.563***	-0.563***	-0.391***			
	(0.0242)	(0.0615)	(0.0453)	(0.0453)	(0.0401)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69.76***	-2.881***	1.486	1.486	-8.799			
	(7.403)	(0.649)	(1.749)	(1.749)	(9.994)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411***	0.339***	0.177***	0.177***	0.267***			
	(0.0553)	(0.0171)	(0.0227)	(0.0227)	(0.042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701***	0.0543**	-0.0990**	-0.0990**	-1.196***			
	(0.0716)	(0.0225)	(0.0404)	(0.0404)	(0.070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1.651***	-0.428***	-0.328***	-0.328***	2.871***			
	(0.259)	(0.107)	(0.105)	(0.105)	(0.249)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7.418***	-1.203***	0.721	0.721	3.278***			
	(1.713)	(0.354)	(0.784)	(0.784)	(1.18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151.2***	-51.01***	-22.88	-22.88	-228.3***			
	(45.57)	(5.063)	(17.78)	(17.78)	(51.56)			

〈표 IV-4〉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019년	-1,772*** (173.2)	110.6*** (31.64)	95.57 (98.95)	-269.2 (200.3)				
2020년	-2,897*** (188.2)	389.0*** (34.74)	736.2*** (103.5)	-1,002*** (211.0)				
2021년	-1,285*** (212.7)	692.4*** (41.52)	1,701*** (116.3)	1,659*** (228.7)				
2022년	552.7** (244.1)	705.7*** (46.39)	2,242*** (124.7)	4,759*** (249.1)				
상수	13,204*** (982.4)	392.9** (180.8)	968.9** (417.7)	17,621*** (1,005)				
관측치수	83,125	82,764	78,898	92,895				
결정계수	0.167	0.048	0.065	0.032				
기업수	34,950	36,964	37,326	33,630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나. 2017~2022년 사업별 분석(중기업)

-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류체계인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의 정책분류 항목에 따라 경영, 금융, 기술, 내수, 수출, 인력, 창업, 기타로 나누어 중소기업 수익성과 매출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였음
 - 분야별 지원 비중은 금융이 대다수이지만, 다른 분야들의 조준 차이와 성과 결과를 비교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중소기업 대상 평가 결과, 전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지만 세부 분야 중 창업 분야는 수익성에서 지원기업의 성과 개선이 확인되며 경영, 기술, 수출 분야는 지원기업의 매출성과 개선이 확인되었음
 - 창업²⁴⁾ 분야의 경우 지원기업이 유사 비지원기업에 비해 1.37%포인트 높은 총자산영업이익률 증가가 확인됨
 - 경영과 기술, 수출 분야에서는 매출 증가가 확인되며 특히 수출 지원의 경우는 지원기업이 유사 비지원기업 대비 4억 9천만원 추가 매출이 확인됨
 - 그러나, 가장 비중이 높은 금융 분야의 경우 지원기업이 유사 비지원기업에 비해 총자산영업이익률이 1.27%포인트 낮아지며, 매출 증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음

24) 통념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창업기업들이 있으며, 해당 지원은 규모를 갖춘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음

〈표 IV-5〉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0.775*** (0.128)								
L2.매출액	-0.000128*** (7.35e-06)	-0.000128*** (7.35e-06)	-0.000128*** (7.35e-06)	-0.000128*** (7.35e-06)	-0.000128*** (7.35e-06)	-0.000128*** (7.35e-06)	-0.000128*** (7.35e-06)	-0.000128*** (7.35e-06)	-0.000128*** (7.35e-06)
L2.총자산	9.36e-05*** (5.89e-06)	9.43e-05*** (5.89e-06)	9.38e-05*** (5.89e-06)	9.42e-05*** (5.89e-06)	9.42e-05*** (5.89e-06)	9.42e-05*** (5.89e-06)	9.43e-05*** (5.89e-06)	9.39e-05*** (5.89e-06)	9.42e-05*** (5.89e-06)
L2.영업이익	-0.00142*** (2.33e-05)	-0.00142*** (2.33e-05)	-0.00142*** (2.33e-05)	-0.00142*** (2.33e-05)	-0.00142*** (2.33e-05)	-0.00142*** (2.33e-05)	-0.00142*** (2.33e-05)	-0.00142*** (2.33e-05)	-0.00142*** (2.33e-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총 자산	-9.77e-05*** (3.68e-05)	-9.00e-05** (3.68e-05)	-8.86e-05** (3.68e-05)	-8.76e-05** (3.68e-05)	-8.97e-05** (3.68e-05)	-8.97e-05** (3.68e-05)	-8.92e-05** (3.68e-05)	-9.35e-05** (3.68e-05)	-8.98e-05** (3.68e-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매출액	1.89e-05 (5.70e-05)	2.30e-05 (5.70e-05)	2.16e-05 (5.70e-05)	2.21e-05 (5.70e-05)	2.04e-05 (5.70e-05)	2.03e-05 (5.70e-05)	2.19e-05 (5.70e-05)	2.17e-05 (5.70e-05)	2.08e-05 (5.70e-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영업 이익	0.00157*** (0.000186)	0.00156*** (0.000186)	0.00156*** (0.000186)	0.00156*** (0.000186)	0.00157*** (0.000186)	0.00157*** (0.000186)	0.00157*** (0.000186)	0.00157*** (0.000186)	0.00157*** (0.000186)
L2.산업중소 기업평균연구 개발비	0.00300*** (0.00109)	0.00314*** (0.00109)	0.00306*** (0.00109)	0.00315*** (0.00109)	0.00311*** (0.00109)	0.00311*** (0.00109)	0.00312*** (0.00109)	0.00306*** (0.00109)	0.00313*** (0.00109)

〈표 IV-5〉의 계속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I2. 산업종소									
기업평균총	-1.170***	-1.172***	-1.171***	-1.173***	-1.172***	-1.172***	-1.174***	-1.172***	-1.172***
자산영업이익률	(0.0272)	(0.0272)	(0.0272)	(0.0272)	(0.0272)	(0.0272)	(0.0272)	(0.0272)	(0.0272)
2019. Year	-0.247*	-0.327**	-0.329**	-0.327**	-0.327**	-0.327**	-0.332**	-0.262*	-0.329**
	(0.144)	(0.143)	(0.143)	(0.143)	(0.143)	(0.143)	(0.143)	(0.145)	(0.143)
2020. Year	-1.081***	-1.192***	-1.193***	-1.188***	-1.191***	-1.191***	-1.192***	-1.106***	-1.193***
	(0.148)	(0.147)	(0.147)	(0.147)	(0.147)	(0.147)	(0.147)	(0.149)	(0.147)
2021. Year	-0.724***	-1.011***	-0.958***	-1.013***	-1.026***	-1.026***	-0.999***	-0.827***	-1.025***
	(0.163)	(0.155)	(0.155)	(0.155)	(0.155)	(0.155)	(0.155)	(0.165)	(0.155)
2022. Year	-1.164***	-1.386***	-1.385***	-1.422***	-1.429***	-1.429***	-1.393***	-1.284***	-1.425***
	(0.177)	(0.172)	(0.171)	(0.171)	(0.171)	(0.171)	(0.172)	(0.176)	(0.171)
L. 지원여부경영		<u>-0.510**</u>							
		(0.247)							
L. 지원여부금융			<u>-1.266***</u>						
			(0.167)						
L. 지원여부기술				<u>-0.650**</u>					
				(0.281)					
L. 지원여부기타					-0.348				
					(0.994)				
L. 지원여부내수						-0.492			
						(1.043)			

〈표 IV-5〉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지원여부수출							<u>-0.613**</u> (0.242)		
L.지원여부인력								<u>-0.448***</u> (0.129)	
L.지원여부창업									<u>1.366**</u> (0.680)
L2.총자산영업 이익률									
Constant	14.42*** (0.668)	14.08*** (0.667)	14.24*** (0.667)	14.09*** (0.666)	14.10*** (0.666)	14.11*** (0.666)	14.12*** (0.667)	14.19*** (0.667)	14.08*** (0.667)
Observations	337,677	337,677	337,677	337,677	337,677	337,677	337,677	337,677	337,677
R-squared	0.040	0.039	0.040	0.039	0.039	0.039	0.039	0.039	0.039
Number of FirmID	87,853	87,853	87,853	87,853	87,853	87,853	87,853	87,853	87,85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6〉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49.95 (65.76)								
L2.매출액									
L2.총자산	0.0337*** (0.00295)	0.0336*** (0.00295)	0.0337*** (0.00295)	0.0336*** (0.00295)	0.0337*** (0.00295)	0.0337*** (0.00295)	0.0336*** (0.00295)	0.0338*** (0.00295)	0.0337*** (0.00295)
L2.영업이익	-1.413*** (0.0101)	-1.413*** (0.0101)	-1.413*** (0.0101)	-1.413*** (0.0101)	-1.413*** (0.0101)	-1.413*** (0.0101)	-1.413*** (0.0101)	-1.413*** (0.0101)	-1.413*** (0.0101)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152*** (0.0189)	0.152*** (0.0189)	0.152*** (0.0189)	0.151*** (0.0189)	0.152*** (0.0189)	0.152*** (0.0189)	0.151*** (0.0189)	0.153*** (0.0189)	0.152*** (0.0189)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642*** (0.0290)	-0.643*** (0.0291)	-0.642*** (0.0290)	-0.643*** (0.0290)	-0.642*** (0.0290)	-0.642*** (0.0290)	-0.643*** (0.0290)	-0.642*** (0.0290)	-0.642*** (0.0290)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1.849*** (0.0952)	1.851*** (0.0952)	1.851*** (0.0952)	1.854*** (0.0952)	1.850*** (0.0952)	1.850*** (0.0952)	1.847*** (0.0952)	1.850*** (0.0952)	1.850*** (0.0952)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4.880*** (0.561)	4.858*** (0.561)	4.879*** (0.561)	4.852*** (0.561)	4.872*** (0.561)	4.874*** (0.561)	4.865*** (0.561)	4.890*** (0.561)	4.872*** (0.561)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영업이익률	-60.31*** (14.03)	-60.17*** (14.03)	-60.29*** (14.03)	-59.82*** (14.03)	-60.13*** (14.03)	-60.16*** (14.03)	-58.82*** (14.03)	-60.25*** (14.03)	-60.18*** (14.03)
2019.Year	-703.6*** (73.77)	-698.9*** (73.45)	-698.3*** (73.45)	-698.6*** (73.45)	-698.7*** (73.45)	-698.4*** (73.45)	-694.5*** (73.46)	-719.0*** (74.08)	-698.3*** (73.45)

〈표 IV-6〉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2020. Year	-1,116*** (76.02)	-1,108*** (75.43)	-1,108*** (75.43)	-1,111*** (75.44)	-1,109*** (75.44)	-1,108*** (75.43)	-1,108*** (75.43)	-1,136*** (76.49)	-1,108*** (75.43)
2021. Year	252.0*** (83.28)	263.0*** (79.30)	264.2*** (79.34)	262.8*** (79.26)	271.4*** (79.21)	271.7*** (79.21)	249.6*** (79.40)	208.5** (84.55)	271.5*** (79.21)
2022. Year	1,615*** (90.48)	1,609*** (88.27)	1,628*** (87.67)	1,627*** (87.63)	1,632*** (87.62)	1,632*** (87.62)	1,603*** (87.93)	1,586*** (90.25)	1,632*** (87.63)
L.지원여부경영		280.8** (126.6)							
L.지원여부금융		135.5 (85.64)							
L.지원여부기술				422.0*** (144.0)					
L.지원여부기타					356.6 (509.6)				
L.지원여부내수						-98.85 (534.6)			
L.지원여부수출							489.4*** (124.2)		
L.지원여부인력								141.5** (6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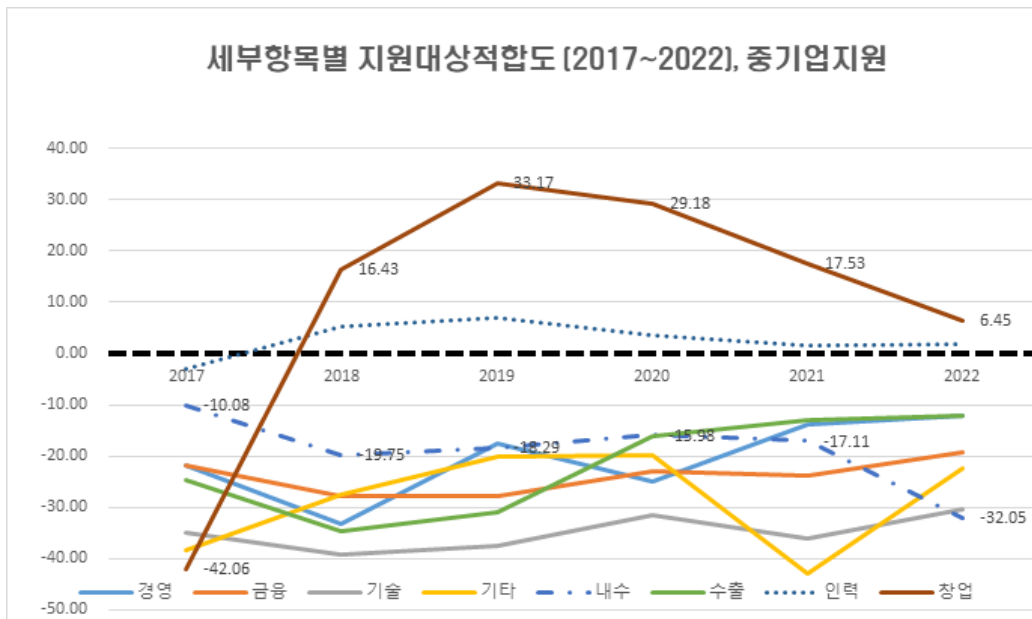
〈표 IV-6〉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창업									-93.13 (348.6)
L2.중자산업업이익률	-18.70*** (1.472)	-18.70*** (1.472)	-18.72*** (1.472)	-18.69*** (1.472)	-18.69*** (1.472)	-18.69*** (1.472)	-18.69*** (1.472)	-18.72*** (1.472)	-18.69*** (1.472)
Constant	8,245*** (342.7)	8,277*** (341.8)	8,251*** (341.8)	8,272*** (341.7)	8,264*** (341.7)	8,265*** (341.7)	8,249*** (341.7)	8,236*** (342.0)	8,266*** (341.7)
Observations	337,682	337,682	337,682	337,682	337,682	337,682	337,682	337,682	337,682
R-squared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0.092
Number of FirmID	87,854	87,854	87,854	87,854	87,854	87,854	87,854	87,854	87,85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 고성과 분야의 경우, 수익성 상위 기업에 지원된 비중이 하위 기업에 지원된 비중보다 높았던 반면, 금융 등 저성과 분야는 수익성 하위 기업에 지원된 비중이 높았던 점에 주목할 필요
- 앞선 분석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성과가 매우 미흡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지원한 정책의 성과에서는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 주목해 볼 때,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진 세부 분야의 성과가 높은 것은 일관적
- 지원 적합도 지표로, 수익성 상위 50% 기업들에 지원한 비중에서 수익성 하위 50% 기업들에 지원한 비중을 차감하여 살펴본 결과 창업은 33.17, 금융은 -27.95, 내수는 -32.05으로 확인됨
- 해당 지표의 최댓값은 100, 최솟값은 -100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낼수록 적합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IV-7〉 지원대상 적합도(100~-100) 세부 분야별, 연도별 변화(중기업)



연도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2017	-21.79	-21.75	-34.97	-38.30	-10.08	-24.73	-3.14	-42.06
2018	-33.17	-27.74	-39.33	-27.41	-19.75	-34.81	5.23	16.43
2019	-17.64	-27.95	-37.65	-20.00	-18.29	-31.05	6.93	33.17
2020	-24.99	-22.90	-31.44	-19.72	-15.98	-16.14	3.58	29.18
2021	-13.75	-23.80	-36.16	-43.02	-17.11	-13.07	1.67	17.53
2022	-12.02	-19.24	-30.49	-22.35	-32.05	-12.01	1.93	6.45

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 정책효과 분석

□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서 앞선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해 보기로 함

- 전체 평가 결과는, 지원받은 소기업은 유사 소기업 대비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유의수준 1%에서 1.52%p 낮고 매출액에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음
- 이는 앞선 중기업, 중소기업 전체의 정책효과 분석 결과와 일관적인 것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관리에 있어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함의함

〈표 IV-8〉 정책평가 결과: 고정효과 패널모형, 2017~2022, 소상공인 제외 소기업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L.지원여부	-1.519*** (0.115)	4.060 (7.627)
L2.매출액	0.000487*** (2.41e-05)	
L2.총자산	7.74e-05*** (1.62e-05)	-0.0534*** (0.00105)
L2.영업이익	-0.00795*** (9.57e-05)	-3.062*** (0.00455)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000584*** (0.000131)	0.113*** (0.00867)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00193*** (0.000305)	-0.172*** (0.0201)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00717*** (0.00209)	2.484*** (0.138)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0.0190*** (0.00643)	-8.387*** (0.425)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926*** (0.0170)	-3.034*** (1.128)
2019.Year	-0.00651 (0.125)	-202.4*** (8.295)
2020.Year	-2.284*** (0.134)	-361.2*** (8.871)
2021.Year	-1.758*** (0.159)	-253.8*** (10.48)

〈표 IV-8〉의 계속

(단위: %p, 백만원)

VARIABLES	(1) 총자산영업이익률	(2) 매출액
2022.Year	-2.257*** (0.183)	-92.84*** (12.10)
L2.총자산영업이익률		2.457*** (0.0959)
Constant	10.79*** (0.420)	658.6*** (27.74)
Observations	1,482,268	1,482,377
R-squared	0.014	0.344
Number of FirmID	528,039	528,09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의 경우에도 총자산영업이익률과 매출액 기준으로 4개 분면을 만들어 각 분류별 총자산영업이익률과 매출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에 조준된 정책에서 부정적 효과들이 유의하게 확인되었음
 - 수익성 상위 기업들에게 정책이 조준된 경우 총자산영업이익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수익성 하위 기업들에게 조준된 경우 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의 경우 -1.24%p, 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의 경우는 -0.494%p의 총자산영업이익률 효과가 확인됨
 - 수익성 상위 기업들의 경우 2사분면의 경우 매출액에 있어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성장 지원에 있어서도 수익성 조건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함

〈표 IV-9〉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소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전기 지원여부	-0.112 (0.132)	-0.592 (0.406)	-1.240*** (0.395)	-0.494*** (0.114)
2기전 매출액	3.09e-05 (3.53e-05)	-0.0173*** (0.00166)	-0.0184*** (0.000840)	5.70e-05*** (1.88e-05)
2기전 총자산	0.00214*** (4.06e-05)	0.107*** (0.00147)	-0.000442*** (3.32e-05)	-0.000125*** (1.52e-05)
2기전 영업이익	-0.00801*** (0.000151)	-0.490*** (0.00641)	-0.0130*** (0.000445)	-0.00947*** (9.55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000749*** (0.000226)	0.000571 (0.000627)	0.000162 (0.000366)	0.000318*** (0.00011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000958** (0.000443)	0.000430 (0.00160)	0.00174* (0.000970)	-0.000193 (0.00025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00358 (0.00327)	-0.000206 (0.0105)	1.85e-05 (0.00590)	0.00926*** (0.0019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0208* (0.0118)	0.0231 (0.0289)	-0.0634*** (0.0140)	-0.0228*** (0.0083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278*** (0.0358)	-0.206*** (0.0755)	-0.881*** (0.0321)	-0.395*** (0.0234)
2019년	-0.884*** (0.152)	-0.811** (0.401)	1.495*** (0.375)	-0.0387 (0.129)
2020년	-2.437*** (0.170)	-5.753*** (0.477)	1.293*** (0.417)	-1.011*** (0.138)

〈표 IV-9〉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021년	-2.419*** (0.208)	-4.656*** (0.616)	3.404*** (0.501)	0.205 (0.160)
2022년	-2.087*** (0.244)	-5.313*** (0.753)	4.284*** (0.585)	1.745*** (0.183)
상수	-6.737*** (0.709)	-3.027 (2.011)	17.92*** (1.100)	5.046*** (0.445)
관측치수	426,045	288,112	386,918	381,193
결정계수	0.023	0.090	0.016	0.053
기업수	207,808	176,372	214,097	162,104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10〉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소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상위	2기간 매출액	상위	2기간 매출액	하위	2기간 매출액	하위
진기 지원여부	10.18	5.237***	22.35*	-29.77				
	(13.88)	(1.997)	(11.84)	(20.26)				
2기전 총자산	-0.166***	0.000343	0.00178*	0.00958***				
	(0.00418)	(0.00754)	(0.000993)	(0.00264)				
2기전 영업이익	-2.994***	-1.670***	-0.103***	-0.897***				
	(0.0125)	(0.0300)	(0.0132)	(0.0175)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0.894***	-0.109***	-0.290***	-0.870				
	(0.347)	(0.0238)	(0.107)	(0.697)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345***	0.0189***	0.0419***	0.186***				
	(0.0239)	(0.00308)	(0.0109)	(0.020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349***	-0.0864***	-0.0305	-0.200***				
	(0.0468)	(0.00785)	(0.0290)	(0.0460)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3.862***	0.331***	0.743***	3.186***				
	(0.345)	(0.0514)	(0.177)	(0.34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3.700***	-0.0985	0.178	-5.261***				
	(1.250)	(0.142)	(0.420)	(1.49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12.54***	-1.271***	-1.567	-23.27***				
	(3.782)	(0.372)	(0.963)	(4.174)				
2019년	-314.9***	11.79***	42.17***	-241.4***				
	(15.99)	(1.969)	(11.20)	(22.91)				
2020년	-545.8***	8.221***	91.83***	-421.3***				
	(17.99)	(2.344)	(12.46)	(24.54)				

〈표 IV-10〉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021년	-381.0***	42.34***	152.5***	-143.7***	(21.96)	(3.027)	(14.99)	(28.56)
	-171.3***	75.26***	218.0***	259.1***	(25.80)	(3.705)	(17.49)	(32.68)
2022년	1,157***	296.8***	92.67***	182.8**	(75.26)	(9.840)	(32.73)	(79.10)
	관측치수	426,061	386,959	381,204	결정계수	0.443	0.002	0.021
기업수	207,813	176,399	214,121	162,112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 분야별 효과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총자산영업이익률은 부정적인 정책효과가 확인되고 매출액의 증가는 크게 확인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과 일관적인 결과가 확인됨
 - 경영, 금융, 기술, 수출, 인력, 창업 등 다양한 지원분야에 있어 총자산영업이익률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확인되는 등 우려스러운 결과들이 확인됨
 - 중소기업과 달리 매출액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유의도 높은 증분을 나타낸 경우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분석 결과는 규모 성장에 있어서는 분류별로 중소기업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는 점을 함의함

〈표 IV-11〉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소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1.519***								
	-0.115								
L2.매출액	0.000487***	0.000484***	0.000485***	0.000485***	0.000483***	0.000483***	0.000484***	0.000485***	0.000483***
	-2.41E-05	-2.41E-05	-2.41E-05	-2.41E-05	-2.41E-05	-2.41E-05	-2.41E-05	-2.41E-05	-2.41E-05
L2.총자산	7.74e-05***	8.01e-05***	7.84e-05***	8.08e-05***	7.97e-05***	7.97e-05***	7.99e-05***	7.89e-05***	7.96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L2.영업이익	-0.00795***	-0.00795***	-0.00794***	-0.00796***	-0.00795***	-0.00795***	-0.00795***	-0.00795***	-0.0079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총자산	0.000584***	0.000572***	0.000569***	0.000576***	0.000572***	0.000572***	0.000575***	0.000586***	0.000572***
	-0.00013	-0.00013	-0.00013	-0.00013	-0.00013	-0.00013	-0.00013	-0.00013	-0.00013
L2.산업중소 기업평균 매출액	-0.00193***	-0.00191***	-0.00192***	-0.00193***	-0.00192***	-0.00192***	-0.00193***	-0.00192***	-0.00193***
	-0.00031	-0.00031	-0.00031	-0.00031	-0.00031	-0.00031	-0.00031	-0.00031	-0.00031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영업이익	0.00717***	0.00619***	0.00629***	0.00613***	0.00616***	0.00617***	0.00626***	0.00666***	0.00620***
	-0.00209	-0.00209	-0.00209	-0.00209	-0.00209	-0.00209	-0.00209	-0.00209	-0.00209

〈표 IV-11〉의 계속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1.519***								
	-0.115								
L2.매출액	0.000487***	0.000484***	0.000485***	0.000485***	0.000483***	0.000483***	0.000484***	0.000485***	0.000483***
	-2.41E-05	-2.41E-05	-2.41E-05	-2.41E-05	-2.41E-05	-2.41E-05	-2.41E-05	-2.41E-05	-2.41E-05
L2.총자산	7.74e-05***	8.01e-05***	7.84e-05***	8.08e-05***	7.97e-05***	7.97e-05***	7.99e-05***	7.89e-05***	7.96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1.62E-05
L2.영업이익	-0.00795***	-0.00795***	-0.00794***	-0.00796***	-0.00795***	-0.00795***	-0.00795***	-0.00795***	-0.0079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9.57E-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총자산	0.000584***	0.000572***	0.000569***	0.000576***	0.000572***	0.000572***	0.000575***	0.000586***	0.000572***
	-0.00013	-0.00013	-0.00013	-0.00013	-0.00013	-0.00013	-0.00013	-0.00013	-0.00013
L2.산업중소 기업평균 매출액	-0.00193***	-0.00191***	-0.00192***	-0.00193***	-0.00192***	-0.00192***	-0.00193***	-0.00192***	-0.00193***
	-0.00031	-0.00031	-0.00031	-0.00031	-0.00031	-0.00031	-0.00031	-0.00031	-0.00031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영업이익	0.00717***	0.00619***	0.00629***	0.00613***	0.00616***	0.00617***	0.00626***	0.00666***	0.00620***
	-0.00209	-0.00209	-0.00209	-0.00209	-0.00209	-0.00209	-0.00209	-0.00209	-0.00209

〈표 IV-11〉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지원여부금융			-1.943***						
L지원여부기술			-0.149	-2.249***					
				-0.297					
L지원여부기타					-0.612				
L지원여부내수					-1.286	0.0412			
L지원여부수출						-0.969	-1.003***		
							-0.308		
L지원여부인력								-0.874***	
								-0.126	
L지원여부창업									-2.087***
									-0.446
L2.총자산영업 이익률									
Constant	10.79***	10.60***	10.85***	10.66***	10.60***	10.60***	10.63***	10.60***	10.64***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표 IV-11〉의 계속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Observations	1,482,268	1,482,268	1,482,268	1,482,268	1,482,268	1,482,268	1,482,268	1,482,268	1,482,268
R-squared	0.014	0.014	0.014	0.014	0.014	0.014	0.014	0.014	0.014
Number of FirmID	528,039	528,039	528,039	528,039	528,039	528,039	528,039	528,039	528,03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12〉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소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4.06								
	-7.627								
L2.매출액									
L2.총자산	-0.0534***	-0.0534***	-0.0534***	-0.0534***	-0.0534***	-0.0534***	-0.0534***	-0.0534***	-0.0534***
L2.영업이익	-0.00105	-0.00105	-0.00105	-0.00105	-0.00105	-0.00105	-0.00105	-0.00105	-0.00105
	-3.062***	-3.062***	-3.062***	-3.062***	-3.062***	-3.062***	-3.062***	-3.062***	-3.062***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00455	-0.00455	-0.00455	-0.00455	-0.00455	-0.00455	-0.00455	-0.00455	-0.00455
	0.113***	0.113***	0.113***	0.113***	0.113***	0.113***	0.114***	0.113***	0.113***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00867	-0.00867	-0.00867	-0.00867	-0.00867	-0.00867	-0.00867	-0.00867	-0.00867
	-0.172***	-0.172***	-0.172***	-0.172***	-0.172***	-0.172***	-0.173***	-0.172***	-0.172***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0201	-0.0201	-0.0201	-0.0201	-0.0201	-0.0201	-0.0201	-0.0201	-0.0201
	2.484***	2.487***	2.486***	2.487***	2.487***	2.487***	2.491***	2.478***	2.485***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0.138	-0.138	-0.138	-0.138	-0.138	-0.138	-0.138	-0.138	-0.138
	-8.387***	-8.382***	-8.380***	-8.383***	-8.381***	-8.383***	-8.372***	-8.390***	-8.395***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영업이익률	-0.425	-0.425	-0.425	-0.425	-0.425	-0.425	-0.425	-0.425	-0.425
	-3.034***	-3.053***	-2.991***	-3.056***	-3.052***	-3.055***	-3.072***	-2.986***	-3.038***
	-1.128	-1.128	-1.128	-1.128	-1.128	-1.128	-1.128	-1.128	-1.128

〈표 IV-12〉의 계속

VARIABLES	(10) 전체	(11) 경영	(12) 금융	(13) 기술	(14) 기타	(15) 내수	(16) 수출	(17) 인력	(18) 창업
2019. Year	-202.4***	-202.2***	-202.1***	-202.2***	-202.2***	-202.3***	-202.5***	-203.6***	-202.3***
	-8.295	-8.284	-8.284	-8.284	-8.284	-8.284	-8.285	-8.316	-8.284
2020. Year	-361.2***	-360.8***	-360.6***	-360.8***	-360.7***	-360.8***	-360.9***	-362.8***	-360.8***
	-8.871	-8.846	-8.846	-8.845	-8.845	-8.845	-8.845	-8.909	-8.845
2021. Year	-253.8***	-252.1***	-252.7***	-252.0***	-252.1***	-252.2***	-251.6***	-259.7***	-252.0***
	-10.48	-9.984	-9.984	-9.981	-9.978	-9.978	-9.981	-10.78	-9.978
2022. Year	-92.84***	-91.25***	-91.64***	-91.13***	-91.18***	-91.33***	-90.69***	-97.88***	-90.43***
	-12.1	-11.78	-11.73	-11.73	-11.73	-11.73	-11.74	-12.27	-11.74
L.지원여부경영		-0.208							
		-17.26							
L.지원여부금융			16.82*						
			-9.834						
L.지원여부기술				-12.89					
				-19.64					
L.지원여부기타					-97.98				
					-84.99				
L.지원여부내수						82			
						-64.04			

〈표 IV-12〉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수출			-42.41**						
L.지원여부인력			-20.38					15.38*	
L.지원여부창업								-8.319	81.32***
L2.총자산영업이익률									-29.51
Constant	2.457***	2.458***	2.456***	2.458***	2.458***	2.458***	2.458***	2.457***	2.458***
	-0.0959	-0.0959	-0.0959	-0.0959	-0.0959	-0.0959	-0.0959	-0.0959	-0.0959
	658.6***	659.2***	657.0***	659.5***	659.1***	659.1***	660.5***	659.2***	657.4***
	-27.74	-27.73	-27.76	-27.73	-27.73	-27.73	-27.73	-27.73	-27.73
Observations	1,482,377	1,482,377	1,482,377	1,482,377	1,482,377	1,482,377	1,482,377	1,482,377	1,482,377
R-squared	0.344	0.344	0.344	0.344	0.344	0.344	0.344	0.344	0.344
Number of FirmID	528,091	528,091	528,091	528,091	528,091	528,091	528,091	528,091	528,09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라. 중기업 대분류 산업별 분석

- 다음으로는 중기업 정책효과를 주요 대분류 산업별로 동일한 방법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정책 결과를 도출

- 본 분석의 해석에 있어 유의할 점은, 해당 분석은 해당 대분류 산업 내에서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산업 간 정책효과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임
 - 전반적으로 일관적인 결과이지만 전체 분석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이는 해당 대분류에만 해당하는 결과로 해석할 필요
 - 중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대분류 산업 간의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대분류를 전제한 경우에는 대분류 산업 내의 정책함의만을 도출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표 IV-13〉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제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전기 지원여부	-0.0454 (0.266)	-0.235 (0.263)	0.0722 (0.427)	-0.667** (0.287)
2기전 매출액	-0.000230*** (1.31e-05)	-0.000173*** (5.75e-05)	-0.000493*** (7.59e-05)	-1.99e-05** (1.00e-05)
2기전 총자산	0.000255*** (1.33e-05)	0.00130*** (5.66e-05)	-0.000412*** (3.01e-05)	-6.03e-05*** (7.32e-06)
2기전 영업이익	-0.000445*** (2.56e-05)	-0.0125*** (0.000254)	-0.00578*** (0.000186)	-0.00166*** (3.47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7.43e-05 (8.22e-05)	0.000141 (9.08e-05)	5.21e-05 (0.000134)	-6.63e-05 (7.59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1.72e-05 (0.000100)	-0.000320*** (0.000110)	-0.000132 (0.000164)	-0.000190** (9.59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7.36e-05 (0.000316)	0.000976*** (0.000336)	0.00175*** (0.000521)	0.000886** (0.00034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00193 (0.00184)	0.00303 (0.00234)	0.00478* (0.00281)	0.00169 (0.00146)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584*** (0.0881)	-0.380*** (0.0924)	-0.873*** (0.155)	-0.0841 (0.0961)

〈표 IV-13〉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019년	-0.980*** (0.281)	0.168 (0.309)	0.717 (0.469)	1.215*** (0.278)
2020년	-1.896*** (0.329)	1.102*** (0.378)	3.400*** (0.555)	1.104*** (0.309)
2021년	-2.624*** (0.368)	0.221 (0.446)	3.917*** (0.624)	1.986*** (0.338)
2022년	-3.554*** (0.434)	0.299 (0.537)	3.970*** (0.714)	2.427*** (0.393)
상수	0.500 (1.822)	3.801* (2.017)	14.99*** (2.971)	8.211*** (1.856)
관측치수	17,175	17,434	16,651	17,595
결정계수	0.120	0.233	0.124	0.198
기업수	6,884	6,606	6,993	6,261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14〉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제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전기 지원여부	-385.8		-197.2*		683.8***		115.2	
	(419.6)		(117.5)		(208.2)		(764.0)	
2기전 총자산	-0.196***		-0.116***		0.115***		-0.0770***	
	(0.0208)		(0.0275)		(0.0146)		(0.0185)	
2기전 영업이익	-0.739***		-1.298***		-0.454***		-0.510***	
	(0.0396)		(0.129)		(0.0978)		(0.122)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246.3***		-19.33***		5.000		17.95	
	(27.82)		(7.490)		(7.669)		(53.5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736***		0.223***		0.358***		0.611***	
	(0.130)		(0.0407)		(0.0653)		(0.20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1.170***		-0.337***		-0.433***		-1.427***	
	(0.156)		(0.0489)		(0.0797)		(0.25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617		0.0498		-0.629**		1.683*	
	(0.499)		(0.150)		(0.253)		(0.916)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2.571		4.161***		4.504***		-1.258	
	(2.913)		(1.047)		(1.370)		(3.87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15.82		-38.20		160.6**		-13.89	
	(139.5)		(41.46)		(75.78)		(255.4)	

〈표 IV-14〉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019년	-2,331*** (444.3)	178.8 (137.1)	260.0 (227.3)	-60.03 (739.2)				
2020년	-4,063*** (518.7)	979.4*** (165.7)	1,209*** (267.2)	-1,436* (822.9)				
2021년	-542.7 (581.4)	2,165*** (193.7)	2,468*** (298.6)	3,015*** (899.8)				
2022년	3,148*** (683.7)	2,854*** (231.4)	3,783*** (341.7)	8,346*** (1,044)				
상수	25,269*** (2,908)	6,428*** (906.1)	900.3 (1,443)	21,989*** (4,936)				
관측치수	17,175	17,434	16,651	17,595				
결정계수	0.169	0.080	0.087	0.031				
기업수	6,884	6,606	6,993	6,261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15〉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 효과(중기업 제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1.181*** (0.174)								
L2.매출액	-0.000138*** (8.65e-06)	-0.000139*** (8.65e-06)	-0.000139*** (8.65e-06)	-0.000139*** (8.65e-06)	-0.000139*** (8.65e-06)	-0.000139*** (8.65e-06)	-0.000139*** (8.65e-06)	-0.000139*** (8.65e-06)	-0.000139*** (8.65e-06)
L2.총자산	0.000111*** (7.33e-06)	0.000111*** (7.33e-06)	0.000111*** (7.33e-06)	0.000111*** (7.33e-06)	0.000111*** (7.33e-06)	0.000111*** (7.33e-06)	0.000111*** (7.33e-06)	0.000111*** (7.33e-06)	0.000111*** (7.33e-06)
L2.영업이익	-0.000692*** (2.04e-05)	-0.000693*** (2.04e-05)	-0.000693*** (2.04e-05)	-0.000693*** (2.04e-05)	-0.000693*** (2.04e-05)	-0.000693*** (2.04e-05)	-0.000693*** (2.04e-05)	-0.000692*** (2.04e-05)	-0.000692*** (2.04e-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총자산	-9.18e-05* (5.07e-05)	-8.86e-05* (5.08e-05)	-8.87e-05* (5.07e-05)	-8.59e-05* (5.08e-05)	-8.85e-05* (5.08e-05)	-8.85e-05* (5.08e-05)	-8.73e-05* (5.08e-05)	-9.12e-05* (5.08e-05)	-8.86e-05* (5.08e-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 매출액	-0.000280*** (6.32e-05)	-0.000281*** (6.32e-05)	-0.000277*** (6.32e-05)	-0.000282*** (6.32e-05)	-0.000281*** (6.32e-05)	-0.000281*** (6.32e-05)	-0.000284*** (6.32e-05)	-0.000280*** (6.32e-05)	-0.000281*** (6.32e-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영업이익	0.00109*** (0.000198)	0.00110*** (0.000198)	0.00109*** (0.000198)	0.00109*** (0.000198)	0.00110*** (0.000198)	0.00110*** (0.000198)	0.00109*** (0.000198)	0.00110*** (0.000198)	0.00109*** (0.000198)

〈표 IV-15〉의 계속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연구개발비	0.00402*** (0.00110)	0.00408*** (0.00110)	0.00403*** (0.00110)	0.00405*** (0.00110)	0.00406*** (0.00110)	0.00406*** (0.00110)	0.00403*** (0.00110)	0.00404*** (0.00110)	0.00405*** (0.00110)
L2.산업중소 기업 평균 총 자산영업 이익률	-0.879*** (0.0545)	-0.878*** (0.0545)	-0.880*** (0.0545)	-0.877*** (0.0545)	-0.878*** (0.0545)	-0.878*** (0.0545)	-0.876*** (0.0545)	-0.880*** (0.0545)	-0.878*** (0.0545)
2019. Year	0.275 (0.188)	0.162 (0.188)	0.171 (0.188)	0.161 (0.188)	0.155 (0.188)	0.156 (0.188)	0.148 (0.188)	0.249 (0.190)	0.153 (0.188)
2020. Year	0.774*** (0.210)	0.628*** (0.209)	0.625*** (0.209)	0.658*** (0.209)	0.628*** (0.209)	0.628*** (0.209)	0.637*** (0.209)	0.746*** (0.213)	0.624*** (0.209)
2021. Year	0.654*** (0.231)	0.370 (0.227)	0.414* (0.227)	0.428* (0.228)	0.348 (0.227)	0.349 (0.227)	0.430* (0.228)	0.559*** (0.238)	0.344 (0.227)
2022. Year	0.451* (0.264)	0.242 (0.263)	0.241 (0.262)	0.261 (0.262)	0.200 (0.262)	0.200 (0.262)	0.295 (0.263)	0.328 (0.265)	0.196 (0.262)
L.지원여부경영		-0.415* (0.228)							

〈표 IV-15〉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지원여부금융			-1.029*** (0.164)						
L.지원여부기술				-0.824*** (0.200)					
L.지원여부기타					0.0846 (0.690)				
L.지원여부내수						-0.0739 (0.780)			
L.지원여부수출							-0.799*** (0.202)		
L.지원여부인력								-0.462*** (0.154)	
L.지원여부창업									-0.603 (0.832)
L2.총자산영업 이익률									
Constant	12.12*** (1.149)	11.39*** (1.144)	11.64*** (1.145)	11.47*** (1.145)	11.37*** (1.145)	11.37*** (1.145)	11.54*** (1.145)	11.51*** (1.145)	11.37*** (1.144)

〈표 IV-15〉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Observations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R-squared	0.069	0.069	0.069	0.069	0.069	0.069	0.069	0.069	0.069
Number of FirmID	15,013	15,013	15,013	15,013	15,013	15,013	15,013	15,013	15,01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16〉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제조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48.44 (192.9)								
L2.매출액									
L2.총자산	-0.0152** (0.00773)	-0.0151* (0.00773)	-0.0151* (0.00773)	-0.0152** (0.00773)	-0.0152** (0.00773)	-0.0151* (0.00773)	-0.0151* (0.00773)	-0.0150* (0.00773)	-0.0151* (0.00773)
L2.영업이익	-0.423*** (0.0196)	-0.423*** (0.0196)	-0.423*** (0.0196)	-0.423*** (0.0196)	-0.423*** (0.0196)	-0.423*** (0.0196)	-0.423*** (0.0196)	-0.424*** (0.0196)	-0.423*** (0.0196)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435*** (0.0563)	0.435*** (0.0563)	0.435*** (0.0563)	0.435*** (0.0563)	0.435*** (0.0563)	0.435*** (0.0563)	0.435*** (0.0563)	0.436*** (0.0563)	0.435*** (0.0563)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970*** (0.0695)	-0.970*** (0.0695)	-0.971*** (0.0695)	-0.970*** (0.0695)	-0.970*** (0.0695)	-0.970*** (0.0695)	-0.970*** (0.0695)	-0.971*** (0.0695)	-0.970*** (0.0695)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524** (0.219)	0.524** (0.219)	0.525** (0.219)	0.526** (0.219)	0.523** (0.219)	0.524** (0.219)	0.524** (0.219)	0.523** (0.219)	0.524** (0.219)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1.701 (1.224)	1.702 (1.225)	1.704 (1.224)	1.703 (1.224)	1.702 (1.224)	1.702 (1.224)	1.704 (1.224)	1.712 (1.224)	1.701 (1.224)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영업이익률	-35.17 (60.78)	-35.12 (60.78)	-34.99 (60.78)	-35.25 (60.78)	-34.92 (60.78)	-35.20 (60.78)	-35.28 (60.78)	-34.23 (60.78)	-35.14 (60.78)

〈표 IV-16〉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2019. Year	-584.9*** (209.1)	-590.1*** (208.3)	-590.7*** (208.2)	-590.5*** (208.2)	-590.6*** (208.2)	-590.0*** (208.2)	-589.3*** (208.2)	-639.0*** (211.1)	-591.9*** (208.3)
2020. Year	-899.0*** (233.7)	-905.0*** (232.4)	-904.9*** (232.4)	-908.9*** (232.6)	-907.1*** (232.4)	-905.5*** (232.4)	-905.6*** (232.4)	-967.4*** (236.5)	-908.7*** (232.5)
2021. Year	1,606*** (257.0)	1,593*** (252.4)	1,590*** (252.4)	1,583*** (253.0)	1,593*** (252.1)	1,593*** (252.1)	1,588*** (253.2)	1,482*** (263.9)	1,590*** (252.2)
2022. Year	4,015*** (293.2)	4,002*** (291.4)	4,002*** (290.4)	3,997*** (290.7)	4,003*** (290.3)	4,004*** (290.3)	3,998*** (291.5)	3,937*** (294.1)	4,000*** (290.3)
L.지원여부경영		19.37 (253.3)							
L.지원여부금융			57.35 (182.3)						
L.지원여부기술				106.3 (222.0)					
L.지원여부기타					381.1 (765.8)				
L.지원여부내수						170.4 (866.0)			

〈표 IV-16〉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수출			51.35						
			(224.6)						
L.지원여부인력								243.8	
								(170.8)	
L.지원여부창업									-576.1
									(923.3)
L2.총자산영업이익률	-101.8***	-101.8***	-101.9***	-101.8***	-101.8***	-101.8***	-101.8***	-102.0***	-101.8***
	(7.003)	(7.001)	(7.003)	(7.001)	(7.000)	(7.000)	(7.001)	(7.001)	(7.000)
Constant	15,227***	15,195***	15,181***	15,183***	15,190***	15,193***	15,185***	15,125***	15,196***
	(1,276)	(1,271)	(1,271)	(1,271)	(1,271)	(1,271)	(1,271)	(1,271)	(1,271)
Observations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68,855
R-squared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Number of FirmID	15,013	15,013	15,013	15,013	15,013	15,013	15,013	15,013	15,01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17〉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건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피설명변수(성과지표)				
전기 지원여부	0.859	0.228	0.26	-1.078
	-0.608	-0.535	-0.764	-0.832
2기전 매출액	-5.23e-05**	-0.000483***	-0.000892***	2.88E-05
	-2.49E-05	-0.00012	-0.00014	-2.66E-05
2기전 총자산	0.000364***	0.00336***	-0.000256***	2.32E-05
	-3.62E-05	-0.00025	-3.76E-05	-2.96E-05
2기전 영업이익	-0.00232***	-0.0257***	-0.00881***	-0.00250***
	-0.00013	-0.00077	-0.00049	-0.0001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000715	0.000272	0.000329	0.00044
	-0.00097	-0.00089	-0.00113	-0.0012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00133**	-0.00101*	-0.00065	0.00168*
	-0.00066	-0.0006	-0.00083	-0.0009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00478	0.00695	0.00489	-0.0122*
	-0.00459	-0.0043	-0.00568	-0.0064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0558	0.0514	-0.057	-0.0995*
	-0.0407	-0.0365	-0.0487	-0.0514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0774	-0.417	-0.253	1.356**
	-0.428	-0.418	-0.56	-0.603

〈표 IV-17〉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019년	0.0666	1.278	1.641	-2.186
	-1.202	-1.102	-1.582	-1.696
2020년	-1.797	2.009	2.906	-4.112**
	-1.514	-1.407	-1.85	-2.036
2021년	-4.735**	0.577	4.015	-4.191
	-2.157	-2.048	-2.571	-2.637
2022년	-7.009**	0.421	3.963	-5.081
	-2.755	-2.63	-3.268	-3.393
상수	4.989	11.19	19.21	-28.85**
	-9.433	-8.379	-12.09	-12.43
관측치수	7,675	6,037	7,532	5,971
결정계수	0.129	0.299	0.096	0.111
기업수	3,400	2,790	3,537	2,588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18〉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건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전기 지원여부	-325.2 (688.3)		-239.6 (197.1)		-18.97 (464.0)		1,268 (939.5)	
2기전 총자산	-0.553*** (0.0428)		-0.539*** (0.109)		0.819*** (0.0232)		-0.132*** (0.0326)	
2기전 영업이익	-2.348*** (0.153)		-0.0880 (0.441)		2.302*** (0.314)		-0.752*** (0.166)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113.3*** (39.48)		-79.07*** (15.94)		-69.16*** (15.65)		137.0*** (44.0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0180 (1.103)		0.729** (0.328)		-0.249 (0.688)		-0.204 (1.37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1.008 (0.751)		-0.598*** (0.220)		-0.278 (0.506)		0.527 (1.02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6.240 (5.198)		2.386 (1.586)		0.483 (3.455)		-3.150 (7.244)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22.77 (46.13)		8.956 (13.46)		7.682 (29.58)		-97.37* (58.0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57.68 (485.3)		-16.48 (154.3)		-11.90 (340.5)		788.5 (680.8)	

〈표 IV-18〉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019년	-2,873**	658.3	798.0	-5,743***				
	(1,360)	(404.1)	(960.4)	(1,916)				
2020년	-4,336**	1,526***	1,625	-6,956***				
	(1,714)	(514.7)	(1,121)	(2,301)				
2021년	-1,975	2,187***	2,350	-5,479*				
	(2,442)	(747.6)	(1,557)	(2,979)				
2022년	3,289	2,517***	3,740*	-837.8				
	(3,119)	(957.4)	(1,977)	(3,834)				
상수	28,204***	6,622**	5,552	-848.0				
	(10,683)	(3,090)	(7,349)	(14,042)				
관측치수	7,675	6,037	7,532	5,971				
결정계수	0.240	0.071	0.262	0.032				
기업수	3,400	2,790	3,537	2,588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19〉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건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0.0346 (0.333)								
L2.매출액	-5.02e-05*** (1.54e-05)	-5.02e-05*** (1.54e-05)	-4.98e-05*** (1.54e-05)	-5.04e-05*** (1.54e-05)	-5.01e-05*** (1.54e-05)	-4.96e-05*** (1.54e-05)	-5.01e-05*** (1.54e-05)	-5.03e-05*** (1.54e-05)	-5.04e-05*** (1.54e-05)
L2.총자산	0.000116*** (1.68e-05)	0.000116*** (1.68e-05)	0.000116*** (1.68e-05)	0.000116*** (1.68e-05)	0.000116*** (1.68e-05)	0.000117*** (1.68e-05)	0.000116*** (1.68e-05)	0.000116*** (1.68e-05)	0.000116*** (1.68e-05)
L2.영업이익	-0.00287*** (7.18e-05)	-0.00287*** (7.18e-05)	-0.00287*** (7.18e-05)	-0.00287*** (7.18e-05)	-0.00287*** (7.18e-05)	-0.00287*** (7.18e-05)	-0.00287*** (7.18e-05)	-0.00287*** (7.18e-05)	-0.00287*** (7.18e-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총자산	-0.000556 (0.000505)	-0.000559 (0.000505)	-0.000545 (0.000505)	-0.000552 (0.000505)	-0.000556 (0.000505)	-0.000556 (0.000505)	-0.000557 (0.000505)	-0.000556 (0.000505)	-0.000555 (0.0005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매출액	-0.000125 (0.000365)	-0.000120 (0.000365)	-0.000123 (0.000365)	-0.000128 (0.000365)	-0.000123 (0.000365)	-0.000128 (0.000365)	-0.000124 (0.000365)	-0.000131 (0.000365)	-0.000122 (0.000365)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영업이익	-0.00121 (0.00255)	-0.00122 (0.00255)	-0.00134 (0.00255)	-0.00119 (0.00255)	-0.00121 (0.00255)	-0.00118 (0.00255)	-0.00120 (0.00255)	-0.00121 (0.00255)	-0.00122 (0.00255)
L2.산업중소 기업평균연구 개발비	0.00288 (0.0217)	0.00291 (0.0217)	0.00299 (0.0217)	0.00262 (0.0217)	0.00272 (0.0217)	0.00302 (0.0217)	0.00288 (0.0217)	0.00280 (0.0217)	0.00268 (0.0217)

〈표 IV-19〉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2. 산업중소 기업평균총 자산영업이익률	-0.205 (0.240)	-0.203 (0.240)	-0.200 (0.240)	-0.207 (0.240)	-0.205 (0.240)	-0.206 (0.240)	-0.206 (0.240)	-0.201 (0.240)	-0.205 (0.240)
2019. Year	0.226 (0.680)	0.225 (0.679)	0.237 (0.679)	0.228 (0.679)	0.227 (0.679)	0.229 (0.679)	0.229 (0.679)	0.202 (0.680)	0.226 (0.679)
2020. Year	-0.188 (0.831)	-0.184 (0.828)	-0.167 (0.828)	-0.181 (0.828)	-0.185 (0.828)	-0.179 (0.828)	-0.181 (0.828)	-0.237 (0.831)	-0.184 (0.828)
2021. Year	-0.976 (1.146)	-0.951 (1.140)	-0.913 (1.140)	-0.977 (1.140)	-0.967 (1.140)	-0.958 (1.140)	-0.961 (1.140)	-1.064 (1.145)	-0.969 (1.140)
2022. Year	-1.670 (1.453)	-1.599 (1.451)	-1.615 (1.449)	-1.673 (1.448)	-1.663 (1.448)	-1.659 (1.448)	-1.655 (1.448)	-1.735 (1.451)	-1.662 (1.448)
L. 지원여부경영		-0.517 (0.743)							
L. 지원여부금융			-0.770 (0.494)						
L. 지원여부기술				1.282 (1.224)					
L. 지원여부기타					2.579 (4.735)				

〈표 IV-19〉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지원여부내수						-8.503* (5.120)			
L지원여부수출							-0.239 (1.332)		
L지원여부인력								0.309 (0.352)	
L지원여부창업									3.735 (4.183)
L2.홍자산업 이익률									
Constant	12.04** (5.102)	11.99** (5.102)	12.02** (5.102)	12.06** (5.102)	12.04** (5.102)	12.04** (5.102)	12.06** (5.102)	12.06** (5.102)	12.01** (5.102)
Observations	27,215	27,215	27,215	27,215	27,215	27,215	27,215	27,215	27,215
R-squared	0.109	0.109	0.109	0.109	0.109	0.109	0.109	0.109	0.109
Number of FirmID	6,391	6,391	6,391	6,391	6,391	6,391	6,391	6,391	6,39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20〉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건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587.7** (278.0)								
L2.매출액									
L2.총자산	-0.0880*** (0.0137)	-0.0884*** (0.0137)	-0.0882*** (0.0137)	-0.0885*** (0.0137)	-0.0876*** (0.0137)	-0.0885*** (0.0137)	-0.0884*** (0.0137)	-0.0885*** (0.0137)	
L2.영업이익	-2.997*** (0.0563)	-2.996*** (0.0563)	-2.996*** (0.0563)	-2.996*** (0.0563)	-2.996*** (0.0563)	-2.996*** (0.0563)	-2.996*** (0.0563)	-2.996*** (0.0563)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203 (0.422)	0.203 (0.422)	0.194 (0.422)	0.201 (0.422)	0.207 (0.422)	0.200 (0.422)	0.200 (0.422)	0.198 (0.422)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651** (0.304)	-0.651** (0.305)	-0.645** (0.304)	-0.646** (0.305)	-0.650** (0.304)	-0.644** (0.304)	-0.655** (0.305)	-0.645** (0.304)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3.107 (2.131)	3.067 (2.131)	3.114 (2.132)	3.056 (2.131)	3.100 (2.130)	3.044 (2.131)	3.051 (2.131)	3.053 (2.131)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11.99 (18.15)	-11.86 (18.15)	-11.88 (18.15)	-11.94 (18.16)	-11.60 (18.15)	-11.82 (18.15)	-11.98 (18.15)	-11.69 (18.16)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영업이익률	-168.1 (200.7)	-171.5 (200.7)	-171.0 (200.7)	-169.7 (200.7)	-170.3 (200.7)	-168.0 (200.8)	-161.7 (200.7)	-169.0 (200.7)	

〈표 IV-20〉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2019. Year	-1,580*** (568.3)	-1,505*** (567.5)	-1,517*** (567.5)	-1,514*** (567.5)	-1,517*** (567.5)	-1,515*** (567.3)	-1,512*** (567.5)	-1,560*** (568.1)	-1,511*** (567.5)
2020. Year	-2,215*** (694.4)	-2,084*** (692.0)	-2,097*** (692.0)	-2,091*** (692.0)	-2,095*** (692.0)	-2,086*** (691.8)	-2,090*** (692.0)	-2,183*** (694.0)	-2,088*** (692.0)
2021. Year	-1,346 (957.6)	-1,145 (952.1)	-1,151 (952.4)	-1,132 (952.1)	-1,130 (952.0)	-1,114 (951.7)	-1,129 (952.1)	-1,291 (956.7)	-1,123 (952.0)
2022. Year	1,287 (1,214)	1,410 (1,212)	1,482 (1,210)	1,497 (1,210)	1,497 (1,210)	1,502 (1,210)	1,500 (1,210)	1,376 (1,212)	1,506 (1,210)
L.지원여부경영		815.0 (620.7)							
L.지원여부금융			369.0 (412.7)						
L.지원여부기술				502.6 (1,023)					
L.지원여부기타					2,846 (3,956)				
L.지원여부내수						-15,479*** (4,276)			

〈표 IV-20〉의 계속

VARIABLES	(10) 전체	(11) 경영	(12) 금융	(13) 기술	(14) 기타	(15) 내수	(16) 수출	(17) 인력	(18) 창업
L.지원여부수출			220.7						
			(1,113)						
L.지원여부인력			508.7*						
			(294.4)						
L.지원여부창업			-2,380						
			(3,495)						
L2.총자산영업이익률	38.69*** (9.725)	38.59*** (9.726)	38.59*** (9.727)	38.74*** (9.726)	38.73*** (9.726)	38.62*** (9.723)	38.74*** (9.727)	38.82*** (9.726)	38.68*** (9.726)
Constant	14,687*** (4,263)	14,892*** (4,263)	14,823*** (4,263)	14,815*** (4,263)	14,804*** (4,263)	14,792*** (4,261)	14,800*** (4,263)	14,832*** (4,263)	14,835*** (4,263)
Observations	27,215	27,215	27,215	27,215	27,215	27,215	27,215	27,215	27,215
R-squared	0.160	0.160	0.160	0.160	0.160	0.160	0.160	0.160	0.160
Number of FirmID	6,391	6,391	6,391	6,391	6,391	6,391	6,391	6,391	6,39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21〉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o) 영향(중기업 도소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피설명변수(성과지표)				
전기 지원여부	0.132 (0.233)	-0.229 (0.353)	-0.846* (0.470)	-0.0470 (0.257)
2기전 매출액	-0.000113*** (1.59e-05)	-0.000866*** (0.000132)	-0.00154*** (0.000145)	4.10e-06 (1.31e-05)
2기전 총자산	0.000803*** (3.32e-05)	0.00684*** (0.000252)	-0.000740*** (9.77e-05)	-0.000140*** (1.71e-05)
2기전 영업이익	-0.00487*** (0.000102)	-0.0409*** (0.000918)	-0.0184*** (0.000877)	-0.00368*** (8.83e-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000751 (0.000593)	0.000348 (0.000799)	-0.000570 (0.00103)	0.000397 (0.00062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000484** (0.000237)	-0.000674* (0.000362)	-0.000338 (0.000457)	0.000249 (0.000237)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00413 (0.00399)	0.00696 (0.00548)	0.0143** (0.00705)	-0.00745* (0.0041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109** (0.0493)	0.0717 (0.0614)	0.00395 (0.0761)	-0.0602 (0.047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767*** (0.164)	-0.480** (0.236)	-0.867*** (0.310)	-0.282 (0.189)

〈표 IV-21〉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019년	-1.119*** (0.277)	-0.897** (0.406)	0.782 (0.535)	-0.688** (0.300)
2020년	-1.705*** (0.319)	0.204 (0.479)	2.746*** (0.606)	-1.130*** (0.340)
2021년	-1.082** (0.465)	0.223 (0.702)	4.574*** (0.873)	0.317 (0.490)
2022년	-1.475** (0.615)	-0.203 (0.904)	5.173*** (1.081)	0.403 (0.625)
상수	14.27*** (2.946)	4.600 (4.091)	23.23*** (5.379)	4.019 (3.245)
관측치수	27,522	27,182	26,799	27,860
결정계수	0.161	0.144	0.050	0.113
기업수	11,756	11,991	12,495	10,633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22〉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도소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전기 지원여부	267.2 (207.2)	48.23 (51.53)	-58.55 (78.04)	115.5 (212.5)				
2기전 총자산	-0.106*** (0.0306)	-0.290*** (0.0382)	0.128*** (0.0161)	-0.181*** (0.0135)				
2기전 영업이익	-2.223*** (0.100)	-1.164*** (0.140)	-1.113*** (0.149)	-0.297*** (0.0879)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21.42* (12.61)	-9.619*** (1.647)	-1.827 (1.985)	13.18 (15.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1.472*** (0.527)	0.465*** (0.116)	0.327* (0.172)	3.319*** (0.51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2.958*** (0.210)	-0.484*** (0.0527)	-0.695*** (0.0757)	-3.347*** (0.19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13.23*** (3.552)	2.520*** (0.800)	4.335*** (1.168)	9.038*** (3.399)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95.72** (43.89)	-35.59*** (8.962)	-2.055 (12.63)	-106.7*** (39.0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395.7*** (146.2)	12.30 (34.48)	64.81 (51.49)	52.20 (155.7)				

〈표 IV-22〉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하위
2019년	-250.4	128.2**	203.1**	313.9	(246.4)	(88.41)	(247.5)	
	-1,480***	514.3***	827.3***	-837.1***	(283.4)	(99.01)	(280.7)	
2020년	249.2	1,235***	2,046***	1,701***	(414.5)	(142.8)	(404.8)	
	2,795***	1,616***	2,525***	4,093***	(547.7)	(176.9)	(516.3)	
상수	32,935***	5,302***	5,806***	21,931***	(2,629)	(893.1)	(2,678)	
관측치수	27,522	27,183	26,799	27,860				
결정계수	0.097	0.061	0.080	0.072				
기업수	11,756	11,992	12,495	10,633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23〉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도스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0.778***								
	-0.166								
L2.매출액	-0.000193***	-0.000194***	-0.000194***	-0.000194***	-0.000194***	-0.000194***	-0.000194***	-0.000194***	-0.000194***
	-1.20E-05	-1.20E-05	-1.20E-05	-1.20E-05	-1.20E-05	-1.20E-05	-1.20E-05	-1.20E-05	-1.20E-05
L2.총자산	0.000112***	0.000114***	0.000113***	0.000114***	0.000113***	0.000113***	0.000114***	0.000112***	0.000114***
	-1.88E-05	-1.89E-05	-1.88E-05	-1.89E-05	-1.88E-05	-1.88E-05	-1.89E-05	-1.89E-05	-1.88E-05
L2.영업이익	-0.00504***	-0.00505***	-0.00504***	-0.00505***	-0.00505***	-0.00505***	-0.00505***	-0.00504***	-0.00505***
	-7.42E-05	-7.42E-05	-7.42E-05	-7.42E-05	-7.42E-05	-7.42E-05	-7.42E-05	-7.42E-05	-7.42E-05
L2.산업중소 기업평균총자산	-0.00015	-9.76E-05	-9.82E-05	-0.00011	-0.00011	-0.00011	-0.00011	-0.00011	-0.00011
	-0.00038	-0.00038	-0.00038	-0.00038	-0.00038	-0.00038	-0.00038	-0.00038	-0.00038
L2.산업중소 기업평균매출액	-0.000320**	-0.000307*	-0.000311*	-0.000310*	-0.000310*	-0.000310*	-0.000317**	-0.000315*	-0.000309*
	-0.00016	-0.00016	-0.00016	-0.00016	-0.00016	-0.00016	-0.00016	-0.00016	-0.00016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영업이익	0.00395	0.00363	0.00363	0.00363	0.00362	0.00361	0.00373	0.00382	0.00359
	-0.00259	-0.00259	-0.00259	-0.00259	-0.00259	-0.00259	-0.00259	-0.00259	-0.00259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연구개발비	-0.0808***	-0.0809***	-0.0815***	-0.0811***	-0.0810***	-0.0810***	-0.0803***	-0.0814***	-0.0808***
	-0.0307	-0.0307	-0.0307	-0.0307	-0.0307	-0.0307	-0.0307	-0.0307	-0.0307

〈표 IV-23〉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2. 산업중소 기업평균총 자산영업이익률	-1.080***	-1.086***	-1.086***	-1.087***	-1.087***	-1.087***	-1.089***	-1.079***	-1.086***
2019. Year	-0.111	-0.111	-0.111	-0.111	-0.111	-0.111	-0.111	-0.111	-0.111
2020. Year	-0.491**	-0.546***	-0.561***	-0.543***	-0.542***	-0.541***	-0.543***	-0.483**	-0.546***
2021. Year	-0.196	-0.195	-0.195	-0.195	-0.195	-0.195	-0.195	-0.196	-0.195
2022. Year	-0.429**	-0.529**	-0.541**	-0.525**	-0.525**	-0.525**	-0.523**	-0.426**	-0.529**
L. 지원여부경영	-0.216	-0.215	-0.215	-0.215	-0.215	-0.215	-0.215	-0.217	-0.215
L. 지원여부금융	0.241	-0.134	-0.111	-0.138	-0.137	-0.14	-0.0967	0.174	-0.142
L. 지원여부기술	-0.308	-0.298	-0.298	-0.298	-0.298	-0.298	-0.299	-0.312	-0.298
L. 지원여부기타	0.151	-0.183	-0.194	-0.207	-0.206	-0.209	-0.145	0.0545	-0.21
L. 지원여부내수	-0.389	-0.382	-0.381	-0.381	-0.381	-0.381	-0.383	-0.389	-0.381
		-0.54							
		-0.407							
			-1.118***						
			-0.239						
				-0.263					
				-0.71					
					-1.94				
					-2.995				
						-2.567			
									-1.82

〈표 IV-23〉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지원여부수출							-0.503		
L지원여부인력							-0.306	-0.599***	
L지원여부창업								-0.178	1.372
L2.홍차산업 이익률									-1.103
Constant	17.13***	16.69***	16.85***	16.81***	16.81***	16.80***	16.87***	17.00***	16.78***
Observations	-1.93	-1.931	-1.929	-1.929	-1.929	-1.929	-1.93	-1.93	-1.929
R-squared	109,363	109,363	109,363	109,363	109,363	109,363	109,363	109,363	109,363
Number of FirmID	0.077	0.076	0.077	0.076	0.076	0.076	0.076	0.077	0.07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7,891	27,891	27,891	27,891	27,891	27,891	27,891	27,891	27,891

주: *** p<0.01, ** p<0.05, * p<0.1

〈표 IV-24〉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도소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78.88								
L2.매출액	-73.75								
L2.총자산	-0.209***	-0.209***	-0.209***	-0.209***	-0.209***	-0.209***	-0.210***	-0.209***	-0.209***
L2.영업이익	-0.00804	-0.00804	-0.00804	-0.00804	-0.00804	-0.00804	-0.00804	-0.00804	-0.00804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1.184***	-1.185***	-1.185***	-1.184***	-1.184***	-1.184***	-1.184***	-1.184***	-1.184***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0331	-0.0331	-0.0331	-0.0331	-0.0331	-0.0331	-0.0331	-0.0331	-0.0331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1.565***	1.566***	1.567***	1.569***	1.569***	1.570***	1.570***	1.561***	1.569***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17	-0.17	-0.169	-0.169	-0.169	-0.169	-0.169	-0.17	-0.169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2.043***	-2.043***	-2.042***	-2.042***	-2.042***	-2.042***	-2.037***	-2.043***	-2.042***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0.0715	-0.0715	-0.0715	-0.0715	-0.0715	-0.0715	-0.0716	-0.0715	-0.0715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8.823***	8.788***	8.788***	8.775***	8.790***	8.790***	8.726***	8.836***	8.793***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53.71***	-53.81***	-53.64***	-53.77***	-53.67***	-53.73***	-54.20***	-53.80***	-53.77***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13.66	-13.66	-13.66	-13.66	-13.66	-13.66	-13.66	-13.66	-13.66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105.3**	-106.4**	-106.3**	-105.3**	-105.9**	-106.0**	-104.6**	-104.2**	-106.1**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49.5	-49.5	-49.5	-49.5	-49.5	-49.5	-49.5	-49.5	-49.5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132.7	128.4	131.8	126.6	127.7	127.5	127.4	141.7	127.6
2019.Year	-87	-86.87	-86.88	-86.86	-86.87	-86.87	-86.86	-87.23	-86.87

〈표 IV-24〉의 계속

VARIABLES	(10) 전체	(11) 경영	(12) 금융	(13) 기술	(14) 기타	(15) 내수	(16) 수출	(17) 인력	(18) 창업
2020. Year	-318.5***	-327.3***	-324.8***	-328.8***	-327.8***	-328.4***	-330.1***	-304.7***	-328.1***
	-95.95	-95.51	-95.51	-95.5	-95.51	-95.5	-95.5	-96.42	-95.51
2021. Year	1,184***	1,143***	1,138***	1,142***	1,146***	1,145***	1,119***	1,219***	1,145***
	-137	-132.1	-132.1	-132.1	-132.1	-132.1	-132.6	-138.5	-132.1
2022. Year	2,426***	2,382***	2,386***	2,388***	2,391***	2,390***	2,353***	2,452***	2,390***
	-172.7	-169.5	-169.3	-169.3	-169.3	-169.3	-170.2	-172.9	-169.3
L. 지원여부경영		166.1							
		-181.1							
L. 지원여부금융			275.6***						
			-106.3						
L. 지원여부기술				549.1*					
				-315.8					
L. 지원여부기타					-941.1				
					-1,331				
L. 지원여부내수						-84.41			
						-809.1			
L. 지원여부수출							299.4**		
							-135.9		
L. 지원여부인력								-141.3*	
								-79.26	

〈표 IV-24〉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창업									-142.3
L2.중자산영업이익률	-15.77***	-15.83***	-15.92***	-15.80***	-15.81***	-15.82***	-15.83***	-15.76***	-15.83***
	-2.221	-2.22	-2.22	-2.22	-2.22	-2.22	-2.22	-2.22	-2.22
Constant	17,533***	17,536***	17,489***	17,497***	17,501***	17,500***	17,460***	17,546***	17,503***
	-858.1	-858.4	-857.5	-857.6	-857.6	-857.6	-857.7	-857.9	-857.6
Observations	109,364	109,364	109,364	109,364	109,364	109,364	109,364	109,364	109,364
R-squared	0.062	0.062	0.062	0.062	0.062	0.062	0.062	0.062	0.062
Number of FirmID	27,891	27,891	27,891	27,891	27,891	27,891	27,891	27,891	27,89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25〉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피설명변수(성과지표)				
진기 지원여부	0.174 (0.796)	1.147 (1.255)	0.248 (2.572)	-2.103** (0.925)
2기전 매출액	3.78e-05 (9.04e-05)	5.76e-05 (0.000872)	-0.0124*** (0.00139)	-7.11e-05 (5.18e-05)
2기전 총자산	0.000302*** (5.04e-05)	0.00732*** (0.000633)	-0.000147* (8.08e-05)	-5.29e-05** (2.53e-05)
2기전 영업이익	-0.00277*** (0.000213)	-0.0546*** (0.00267)	-0.00499*** (0.00111)	-0.00123*** (0.000150)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000539 (0.000412)	0.000230 (0.000692)	-0.00116 (0.00105)	0.000105 (0.000357)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000235 (0.00150)	-0.000892 (0.00217)	0.00108 (0.00384)	0.000776 (0.0011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00477 (0.00450)	-0.00477 (0.00662)	-0.00416 (0.0111)	-0.00122 (0.0038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00345 (0.00566)	-0.00261 (0.00740)	0.00639 (0.0127)	-0.00417 (0.0044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354* (0.187)	-0.645*** (0.232)	-1.399*** (0.471)	0.168 (0.185)

〈표 IV-25〉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019년	-0.0383 (0.888)	2.614* (1.377)	4.982* (2.848)	1.181 (0.999)
2020년	-1.680* (0.876)	3.613** (1.499)	8.884*** (2.846)	2.564*** (0.973)
2021년	-1.697 (1.187)	6.070*** (2.056)	13.55*** (3.774)	3.407*** (1.147)
2022년	-4.984*** (1.702)	6.320** (2.828)	18.48*** (5.047)	2.741* (1.476)
상수	-4.197 (6.048)	7.482 (8.544)	50.54*** (15.71)	-2.788 (4.859)
관측치수	4,629	4,632	4,633	4,594
결정계수	0.108	0.183	0.045	0.036
기업수	2,085	2,104	2,194	1,840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26〉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상위	2기간 매출액	상위	2기간 매출액	하위	2기간 매출액	하위
전기 지원여부	137.6 (278.3)	217.4*** (79.43)	-94.06 (255.9)	160.0 (534.6)				
2기전 총자산	-0.144*** (0.0176)	-0.0367 (0.0426)	0.0233*** (0.00805)	-0.0787*** (0.0144)				
2기전 영업이익	-1.251*** (0.0667)	-0.809*** (0.175)	0.299*** (0.112)	-0.276*** (0.0893)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0.706 (11.32)	-4.479** (1.981)	-6.790** (2.898)	-38.18* (22.2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300** (0.144)	-0.0432 (0.0438)	-0.151 (0.105)	-0.0280 (0.206)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316 (0.523)	0.0634 (0.138)	0.220 (0.382)	0.454 (0.644)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3.325*** (1.575)	-0.759* (0.420)	-3.196*** (1.109)	-5.137** (2.20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798 (1.980)	-0.465 (0.469)	-0.108 (1.264)	-3.421 (2.57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141.8** (65.39)	9.378 (14.73)	53.04 (47.14)	-47.39 (107.1)				

〈표 IV-26〉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상위	2기간 매출액	상위	2기간 매출액	하위	2기간 매출액	하위
2019년	463.7 (310.7)		166.5* (86.07)		451.5 (281.1)		1,172** (576.4)	
2020년	-220.5 (304.3)		503.3*** (90.29)		948.9*** (272.5)		1,317** (562.1)	
2021년	244.7 (412.3)		723.8*** (120.4)		1,488*** (354.8)		1,503** (662.1)	
2022년	1,360** (593.8)		929.3*** (164.3)		2,383*** (470.3)		2,201*** (851.8)	
상수	6,779*** (2,125)		1,774*** (538.3)		2,335 (1,546)		2,907 (2,802)	
관측치수	4,629		4,632		4,633		4,594	
결정계수	0.230		0.064		0.048		0.023	
기업수	2,085		2,104		2,194		1,840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27〉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1.319* (0.757)								
L2.매출액	-0.000515*** (7.19e-05)	-0.000517*** (7.19e-05)	-0.000517*** (7.19e-05)	-0.000517*** (7.19e-05)	-0.000517*** (7.19e-05)	-0.000517*** (7.19e-05)	-0.000517*** (7.19e-05)	-0.000516*** (7.19e-05)	-0.000517*** (7.19e-05)
L2.총자산	-7.31e-06 (2.85e-05)	-6.62e-06 (2.85e-05)	-7.13e-06 (2.85e-05)	-7.10e-06 (2.85e-05)	-6.55e-06 (2.85e-05)	-6.61e-06 (2.85e-05)	-6.61e-06 (2.85e-05)	-7.06e-06 (2.85e-05)	-6.57e-06 (2.85e-05)
L2.영업이익	-0.00233*** (0.000155)	-0.00233*** (0.000155)	-0.00233*** (0.000155)	-0.00233*** (0.000155)	-0.00233*** (0.000155)	-0.00233*** (0.000155)	-0.00233*** (0.000155)	-0.00233*** (0.000155)	-0.00233*** (0.000155)
L2.산업중소 기업평균총자산	4.22e-05 (0.000338)	5.33e-05 (0.000338)	6.12e-05 (0.000338)	5.18e-05 (0.000338)	5.26e-05 (0.000338)	5.20e-05 (0.000338)	5.21e-05 (0.000338)	4.92e-05 (0.000338)	4.60e-05 (0.000338)
L2.산업중소 기업평균매출액	-1.70e-05 (0.00115)	-7.55e-05 (0.00115)	-0.000120 (0.00115)	-7.42e-05 (0.00115)	-8.12e-05 (0.00115)	-8.07e-05 (0.00115)	-8.05e-05 (0.00115)	-3.99e-05 (0.00115)	-6.00e-05 (0.00115)
L2.산업중소 기업평균영업 이익	-0.00104 (0.00349)	-0.000883 (0.00349)	-0.000722 (0.00349)	-0.000970 (0.00349)	-0.000863 (0.00349)	-0.000858 (0.00349)	-0.000857 (0.00349)	-0.000993 (0.00349)	-0.000924 (0.00349)
L2.산업중소 기업평균연구 개발비	-0.000490 (0.00398)	-0.000313 (0.00398)	-0.000241 (0.00398)	-0.000263 (0.00398)	-0.000268 (0.00398)	-0.000264 (0.00398)	-0.000265 (0.00398)	-0.000432 (0.00398)	-0.000403 (0.00398)

〈표 IV-27〉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2. 산업종소 기업 평균 총 자산영업이익률	-0.926*** (0.148)	-0.926*** (0.148)	-0.925*** (0.148)	-0.927*** (0.148)	-0.927*** (0.148)	-0.927*** (0.148)	-0.927*** (0.148)	-0.927*** (0.148)	-0.927*** (0.148)
2019. Year	0.749 (0.855)	0.536 (0.846)	0.539 (0.846)	0.545 (0.846)	0.538 (0.846)	0.535 (0.846)	0.535 (0.846)	0.756 (0.859)	0.548 (0.846)
2020. Year	1.479* (0.818)	1.229 (0.805)	1.243 (0.805)	1.233 (0.805)	1.228 (0.805)	1.227 (0.805)	1.228 (0.805)	1.489* (0.824)	1.231 (0.805)
2021. Year	2.025* (1.034)	1.616 (1.006)	1.664* (1.005)	1.606 (1.004)	1.600 (1.004)	1.597 (1.004)	1.598 (1.004)	2.023* (1.044)	1.595 (1.004)
2022. Year	1.119 (1.380)	0.857 (1.377)	0.868 (1.369)	0.816 (1.368)	0.809 (1.368)	0.806 (1.368)	0.806 (1.368)	1.077 (1.380)	0.781 (1.368)
L.지원여부경영		-0.461 (1.414)							
L.지원여부금융			-1.501 (1.161)						
L.지원여부기술				-1.785 (1.778)					
L.지원여부기타					-1.277 (9.041)				
L.지원여부내수						0.914 (10.46)			

〈표 IV-27〉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직원여부수출							0.0584 (2.195)		
L.직원여부인력								-1.112 (0.748)	
L.직원여부창업									-4.836 (3.087)
L2.총자산영업 이익률									
Constant	13.42*** (4.687)	13.27*** (4.688)	13.48*** (4.689)	13.41*** (4.688)	13.31*** (4.687)	13.30*** (4.687)	13.30*** (4.688)	13.33*** (4.687)	13.34*** (4.687)
Observations	18,488	18,488	18,488	18,488	18,488	18,488	18,488	18,488	18,488
R-squared	0.035	0.035	0.035	0.035	0.035	0.035	0.035	0.035	0.035
Number of FirmID	4,687	4,687	4,687	4,687	4,687	4,687	4,687	4,687	4,68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28〉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76.09 (145.3)								
L2.매출액									
L2.총자산	-0.0672*** (0.00536)	-0.0672*** (0.00536)	-0.0671*** (0.00536)	-0.0673*** (0.00536)	-0.0672*** (0.00536)	-0.0672*** (0.00536)	-0.0673*** (0.00536)	-0.0672*** (0.00536)	-0.0672*** (0.00536)
L2.영업이익	-0.827*** (0.0281)	-0.827*** (0.0281)	-0.828*** (0.0281)	-0.828*** (0.0281)	-0.827*** (0.0281)	-0.828*** (0.0281)	-0.827*** (0.0281)	-0.827*** (0.0281)	-0.827*** (0.0281)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103 (0.0649)	0.102 (0.0649)	0.101 (0.0649)	0.103 (0.0649)	0.103 (0.0649)	0.102 (0.0649)	0.103 (0.0649)	0.103 (0.0649)	0.102 (0.0649)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102 (0.221)	-0.100 (0.221)	-0.0898 (0.221)	-0.0964 (0.221)	-0.0982 (0.221)	-0.0981 (0.221)	-0.0974 (0.221)	-0.102 (0.221)	-0.0973 (0.221)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2.221*** (0.670)	-2.221*** (0.670)	-2.260*** (0.670)	-2.259*** (0.670)	-2.232*** (0.670)	-2.232*** (0.670)	-2.228*** (0.670)	-2.219*** (0.670)	-2.234*** (0.670)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0.965 (0.765)	-0.958 (0.765)	-0.983 (0.764)	-0.977 (0.764)	-0.979 (0.764)	-0.974 (0.764)	-0.976 (0.764)	-0.963 (0.764)	-0.984 (0.764)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영업이익률	-38.15 (28.46)	-38.39 (28.46)	-38.52 (28.46)	-38.17 (28.46)	-38.15 (28.46)	-38.22 (28.46)	-38.48 (28.47)	-38.06 (28.46)	-38.12 (28.46)
2019.Year	257.6 (164.0)	269.4* (162.3)	269.2* (162.2)	272.4* (162.3)	270.3* (162.3)	269.4* (162.3)	270.7* (162.3)	249.8 (164.8)	270.4* (162.3)

〈표 IV-28〉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2020. Year	335.3** (156.6)	349.0** (154.1)	346.6** (154.1)	351.3** (154.1)	349.9** (154.1)	348.3** (154.1)	351.4** (154.1)	326.0** (157.8)	350.0** (154.1)
2021. Year	760.9*** (197.7)	777.7*** (192.3)	771.8*** (192.2)	787.9*** (191.9)	786.1*** (192.0)	783.6*** (191.9)	785.9*** (191.9)	746.9*** (199.7)	785.6*** (191.9)
2022. Year	1,325*** (263.9)	1,321*** (263.4)	1,330*** (261.7)	1,346*** (261.6)	1,344*** (261.6)	1,343*** (261.6)	1,344*** (261.6)	1,318*** (264.0)	1,342*** (261.6)
L.지원여부경영		197.6 (271.3)							
L.지원여부금융			315.4 (222.8)						
L.지원여부기술				-446.5 (341.1)					
L.지원여부기타					-200.2 (1,735)				
L.지원여부내수						2,527 (2,007)			
L.지원여부수출							239.9 (421.2)		

〈표 IV-28〉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인력								101.0	
								(143.5)	
L.지원여부창업									-188.8
									(592.7)
L2.총자산영업이익률	-10.70*** (2.239)	-10.69*** (2.239)	-10.71*** (2.239)	-10.68*** (2.239)	-10.68*** (2.239)	-10.68*** (2.239)	-10.68*** (2.239)	-10.71*** (2.239)	-10.67*** (2.239)
Constant	3,626*** (899.3)	3,646*** (899.4)	3,595*** (899.6)	3,659*** (899.4)	3,634*** (899.3)	3,635*** (899.2)	3,623*** (899.4)	3,631*** (899.3)	3,634*** (899.3)
Observations	18,488	18,488	18,488	18,488	18,488	18,488	18,488	18,488	18,488
R-squared	0.081	0.081	0.081	0.081	0.081	0.081	0.081	0.081	0.081
Number of FirmID	4,687	4,687	4,687	4,687	4,687	4,687	4,687	4,687	4,68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29〉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피설명변수(성과지표)				
전기 지원여부	-0.756 (0.759)	-0.838 (1.127)	-1.671 (3.130)	-1.639 (1.150)
2기전 매출액	-0.000137*** (5.08e-05)	-0.00136*** (0.000523)	-0.00522*** (0.00112)	-0.000387*** (6.63e-05)
2기전 총자산	0.000327*** (5.05e-05)	0.00441*** (0.000454)	-0.00279*** (0.000375)	-0.000122*** (3.14e-05)
2기전 영업이익	-0.00231*** (0.000194)	-0.0297*** (0.00176)	-0.00907*** (0.00108)	-0.00331*** (0.00019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000346 (0.000538)	0.00174* (0.000969)	0.00170 (0.00260)	0.00182** (0.00076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000186 (0.000926)	-0.00217 (0.00174)	-0.00474 (0.00444)	-0.00264* (0.00137)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000226 (0.00224)	-0.0103** (0.00415)	0.00364 (0.0102)	0.00147 (0.00337)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00717 (0.0143)	0.0511** (0.0260)	0.0192 (0.0590)	0.0514** (0.021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0.0711 (0.223)	-0.0793 (0.391)	-0.792 (0.934)	0.0276 (0.281)

〈표 IV-29〉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019년	1.290 (0.883)	0.579 (1.522)	5.315 (3.855)	1.285 (1.274)
2020년	0.537 (0.989)	3.989** (1.860)	10.76** (4.483)	3.658** (1.469)
2021년	-0.0370 (1.305)	5.384* (2.779)	17.42*** (6.383)	4.304** (1.852)
2022년	-0.297 (1.663)	4.184 (3.610)	21.58*** (7.993)	1.979 (2.187)
상수	-0.394 (5.429)	-14.38 (10.08)	57.00** (23.47)	-0.0253 (8.348)
관측치수	3,386	3,332	3,348	3,282
결정계수	0.116	0.176	0.071	0.168
기업수	1,433	1,388	1,498	1,290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30〉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반송통신정보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전기 지원여부	206.2 (504.4)	313.2 (212.3)	315.9 (356.8)	172.4 (674.3)				
2기전 총자산	-0.00865 (0.0352)	-0.0929 (0.0926)	0.0774* (0.0430)	-0.0386** (0.0178)				
2기전 영업이익	-1.873*** (0.130)	-0.313 (0.354)	-0.807*** (0.125)	-0.249* (0.130)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102.5*** (29.22)	-13.06 (7.983)	12.94*** (3.616)	-2.339 (21.19)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383 (0.358)	0.0259 (0.182)	1.087*** (0.296)	0.488 (0.449)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431 (0.615)	0.685** (0.327)	0.310 (0.505)	-1.441* (0.80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117 (1.488)	-0.0767 (0.781)	-2.368** (1.156)	3.858* (1.977)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8.241 (9.490)	-7.935 (4.901)	-9.967 (6.720)	16.31 (12.6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55.74 (148.1)	-37.09 (73.64)	73.70 (106.6)	-136.5 (164.7)				

〈표 IV-30〉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019년	688.4	17.72	-415.3	496.6	(586.3)	(282.5)	(436.6)	(747.5)
	597.9	692.7**	-467.7	1,237	(656.1)	(333.5)	(504.2)	(861.7)
2020년	1,653*	611.9	174.9	2,965***	(865.3)	(492.1)	(713.8)	(1,085)
	2,549**	690.2	28.96	4,385***	(1,103)	(633.1)	(886.3)	(1,281)
상수	1,256	-1,674	-6,939***	4,605	(3,637)	(1,898)	(2,684)	(4,892)
	3,386	3,332	3,348	3,283	0.146	0.051	0.130	0.023
기업수	1,433	1,388	1,498	1,291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31〉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2.387*** (0.919)								
L2.매출액	-0.000406*** (7.30e-05)	-0.000408*** (7.30e-05)	-0.000408*** (7.30e-05)	-0.000406*** (7.30e-05)	-0.000407*** (7.30e-05)	-0.000409*** (7.30e-05)	-0.000407*** (7.30e-05)	-0.000407*** (7.30e-05)	-0.000405*** (7.30e-05)
L2.총자산	1.72e-05 (4.31e-05)	1.94e-05 (4.31e-05)	1.89e-05 (4.31e-05)	1.91e-05 (4.31e-05)	1.96e-05 (4.31e-05)	1.94e-05 (4.31e-05)	1.93e-05 (4.31e-05)	1.49e-05 (4.31e-05)	1.96e-05 (4.30e-05)
L2.영업이익	-0.00373*** (0.000193)	-0.00374*** (0.000193)	-0.00373*** (0.000193)	-0.00374*** (0.000193)	-0.00374*** (0.000193)	-0.00375*** (0.000193)	-0.00374*** (0.000193)	-0.00373*** (0.000193)	-0.00374*** (0.000193)
L2.산업중소 기업평균총 자산	-3.62e-05 (0.000685)	-5.58e-05 (0.000685)	-4.86e-05 (0.000685)	-4.94e-05 (0.000685)	-5.73e-05 (0.000685)	-4.77e-05 (0.000685)	-3.82e-05 (0.000685)	-3.36e-05 (0.000684)	-3.10e-05 (0.000684)
L2.산업중소 기업평균 매출액	-0.000496 (0.00119)	-0.000436 (0.00119)	-0.000436 (0.00119)	-0.000448 (0.00119)	-0.000425 (0.00119)	-0.000444 (0.00119)	-0.000471 (0.00119)	-0.000481 (0.00119)	-0.000388 (0.00119)
L2.산업중소 기업평균영업 이익	0.00248 (0.00291)	0.00249 (0.00291)	0.00246 (0.00291)	0.00248 (0.00291)	0.00251 (0.00291)	0.00258 (0.00291)	0.00254 (0.00291)	0.00255 (0.00291)	0.00223 (0.00291)

〈표 IV-31〉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2.산업중소 기업평균연구 개발비	-0.0137 (0.0173)	-0.0141 (0.0174)	-0.0140 (0.0173)	-0.0139 (0.0173)	-0.0141 (0.0173)	-0.0144 (0.0173)	-0.0140 (0.0173)	-0.0139 (0.0173)	-0.0141 (0.0173)
L2.산업중소 기업평균총 자산영업 이익률	-0.773*** (0.268)	-0.781*** (0.268)	-0.778*** (0.268)	-0.779*** (0.268)	-0.785*** (0.268)	-0.786*** (0.268)	-0.783*** (0.268)	-0.785*** (0.268)	-0.784*** (0.268)
2019.Year	0.421 (1.122)	0.0236 (1.112)	0.0328 (1.111)	0.0406 (1.111)	0.0231 (1.111)	0.0224 (1.111)	-0.0311 (1.112)	0.739 (1.131)	0.0309 (1.111)
2020.Year	1.315 (1.235)	0.895 (1.225)	0.894 (1.225)	0.917 (1.225)	0.887 (1.225)	0.869 (1.225)	0.845 (1.225)	1.668 (1.246)	0.894 (1.224)
2021.Year	2.087 (1.666)	1.285 (1.644)	1.324 (1.639)	1.355 (1.639)	1.295 (1.639)	1.285 (1.639)	1.321 (1.639)	2.547 (1.680)	1.287 (1.638)
2022.Year	1.451 (2.048)	0.876 (2.050)	0.888 (2.038)	0.937 (2.038)	0.938 (2.038)	0.896 (2.038)	0.896 (2.038)	1.575 (2.047)	0.879 (2.037)
L.지원여부경영		0.158 (1.333)							
L.지원여부금융			-1.059 (1.144)						

〈표 IV-31〉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지원여부기술				-2.060 (1.486)					
L.지원여부기타					-8.226 (6.554)				
L.지원여부내수						9.578* (5.633)			
L.지원여부수출							-3.366* (1.888)		
L.지원여부인력								-2.886*** (0.864)	
L.지원여부창업									8.057*** (2.634)
I2.총자산영업 이익률									
Constant	18.66*** (6.785)	17.26** (6.768)	17.31** (6.765)	17.50*** (6.767)	17.18** (6.765)	17.32** (6.764)	17.57*** (6.767)	18.25*** (6.768)	16.33** (6.769)
Observations	13,348	13,348	13,348	13,348	13,348	13,348	13,348	13,348	13,348
R-squared	0.063	0.063	0.063	0.063	0.063	0.063	0.063	0.064	0.064
Number of FirmID	3,127	3,127	3,127	3,127	3,127	3,127	3,127	3,127	3,127

〈표 IV-31〉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	-----------	-----------	-----------	-----------	-----------	-----------	-----------	-----------	-----------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32〉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346.4*								
	(209.9)								
L2.총자산	-0.121***	-0.121***	-0.121***	-0.121***	-0.121***	-0.121***	-0.121***	-0.120***	-0.121***
	(0.00910)	(0.00910)	(0.00910)	(0.00910)	(0.00910)	(0.00910)	(0.00910)	(0.00911)	(0.00910)
L2.영업이익	-1.262***	-1.261***	-1.261***	-1.260***	-1.261***	-1.261***	-1.260***	-1.262***	-1.261***
	(0.0421)	(0.0422)	(0.0422)	(0.0422)	(0.0422)	(0.0422)	(0.0421)	(0.0421)	(0.0422)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536***	0.535***	0.539***	0.538***	0.538***	0.539***	0.536***	0.536***	0.539***
	(0.156)	(0.156)	(0.156)	(0.156)	(0.156)	(0.156)	(0.156)	(0.156)	(0.156)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0790	-0.0843	-0.0872	-0.0868	-0.0851	-0.0876	-0.0807	-0.0820	-0.0861
	(0.271)	(0.271)	(0.271)	(0.271)	(0.271)	(0.271)	(0.271)	(0.271)	(0.271)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0806	-0.0834	-0.0827	-0.0809	-0.0786	-0.0778	-0.0919	-0.0898	-0.0874
	(0.664)	(0.664)	(0.664)	(0.664)	(0.664)	(0.664)	(0.664)	(0.664)	(0.664)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1.268	-1.359	-1.228	-1.235	-1.245	-1.243	-1.235	-1.245	-1.232
	(3.960)	(3.962)	(3.960)	(3.960)	(3.960)	(3.961)	(3.960)	(3.960)	(3.960)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영업이익률	-59.27	-58.97	-58.17	-58.32	-58.94	-58.46	-57.74	-57.61	-58.37
	(61.16)	(61.17)	(61.17)	(61.17)	(61.17)	(61.17)	(61.16)	(61.16)	(61.17)

〈표 IV-32〉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2019. Year	17.28 (256.1)	71.82 (253.7)	75.21 (253.8)	74.05 (253.8)	74.60 (253.7)	74.75 (253.7)	86.22 (253.8)	-11.27 (258.4)	75.04 (253.7)
2020. Year	428.3 (281.9)	490.4* (279.5)	489.4* (279.5)	488.3* (279.6)	488.3* (279.5)	488.5* (279.6)	499.4* (279.6)	396.2 (284.5)	489.5* (279.5)
2021. Year	1,039*** (380.2)	1,122*** (375.1)	1,155*** (373.9)	1,151*** (374.0)	1,153*** (373.8)	1,153*** (373.9)	1,149*** (373.8)	1,003*** (383.4)	1,153*** (373.9)
2022. Year	1,746*** (467.3)	1,775*** (467.4)	1,826*** (464.8)	1,825*** (464.9)	1,832*** (464.8)	1,826*** (464.8)	1,827*** (464.8)	1,745*** (467.0)	1,826*** (464.8)
L.지원여부경영		315.6 (304.3)							
L.지원여부금융			-46.89 (261.4)						
L.지원여부기술				103.7 (339.4)					
L.지원여부기타					-1,299 (1,497)				
L.지원여부내수						356.3 (1,286)			
L.지원여부수출							686.1 (431.3)		

〈표 IV-32〉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인력								347.8*	
L.지원여부창업								(197.4)	188.7 (602.1)
L2.총자산영업이익률	10.62*** (3.111)	10.76*** (3.111)	10.76*** (3.111)	10.75*** (3.111)	10.77*** (3.111)	10.76*** (3.111)	10.68*** (3.111)	10.57*** (3.112)	10.79*** (3.113)
Constant	-638.1 (1,550)	-383.2 (1,546)	-427.7 (1,545)	-444.0 (1,546)	-440.3 (1,545)	-427.6 (1,545)	-498.6 (1,545)	-554.1 (1,546)	-451.6 (1,546)
Observations	13,349	13,349	13,349	13,349	13,349	13,349	13,349	13,349	13,349
R-squared	0.127	0.126	0.126	0.126	0.126	0.126	0.127	0.127	0.126
Number of FirmID	3,128	3,128	3,128	3,128	3,128	3,128	3,128	3,128	3,12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33〉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시설명변수(성과지표)				
진기 지원여부	-0.703 (2.544)	-4.161 (3.372)	-4.389 (2.898)	1.878 (1.338)
2기전 매출액	0.000819** (0.000330)	0.00642 (0.00650)	-0.00399 (0.00279)	0.000274* (0.000152)
2기전 총자산	0.00270*** (0.000470)	0.0268*** (0.00355)	-0.000944*** (0.000290)	-3.55e-05 (3.29e-05)
2기전 영업이익	-0.0121*** (0.00190)	-0.328*** (0.0302)	-0.0265*** (0.00367)	-0.00402*** (0.00042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00400 (0.00359)	-0.000153 (0.00818)	-0.00458* (0.00255)	-0.000144 (0.00138)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0159 (0.0117)	0.0394 (0.0269)	-0.0194** (0.00941)	0.00220 (0.00530)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0139 (0.0315)	-0.0390 (0.0709)	0.0571** (0.0233)	0.0117 (0.0129)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4.453*** (1.542)	-3.823 (3.348)	0.701 (0.948)	-1.052** (0.53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2.528** (1.272)	2.086 (3.467)	-1.160 (0.813)	-0.145 (0.544)

〈표 IV-33〉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019년	-8.812**	9.368	-3.566	0.108
	(4.389)	(5.870)	(3.705)	(1.898)
2020년	-27.41***	9.302	-13.25**	-11.07***
	(6.393)	(8.661)	(5.604)	(2.944)
2021년	-27.71***	11.74	-1.811	-4.165
	(6.512)	(9.584)	(5.560)	(2.761)
2022년	11.21	41.95	-0.874	13.08**
	(13.60)	(31.61)	(11.06)	(6.410)
상수	-73.03	-146.8	153.6**	-3.424
	(58.97)	(123.9)	(64.01)	(38.96)
관측치수	2,416	2,449	2,474	2,907
결정계수	0.098	0.160	0.102	0.177
기업수	1,254	1,422	1,455	1,203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34〉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전기 지원여부	80.99		-1.992		-42.96		171.0	
	(267.2)		(46.03)		(165.2)		(345.6)	
2기전 총자산	-0.00108		-0.0130		0.0791***		-0.0131	
	(0.0504)		(0.0509)		(0.0165)		(0.00851)	
2기전 영업이익	-4.329***		-2.128***		-0.726***		-1.401***	
	(0.145)		(0.370)		(0.213)		(0.100)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27.89***		-0.516		-12.34***		21.52*	
	(5.276)		(0.626)		(2.714)		(11.2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577		-0.104		0.117		0.577	
	(0.377)		(0.111)		(0.145)		(0.35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2.194*		0.188		0.160		-1.140	
	(1.225)		(0.367)		(0.537)		(1.366)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9.097***		0.243		-0.723		0.135	
	(3.308)		(0.967)		(1.324)		(3.32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379.3**		-81.81*		13.04		120.0	
	(161.8)		(45.44)		(54.12)		(137.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191.8		41.29		26.33		-50.69	
	(133.6)		(47.20)		(46.59)		(140.6)	

〈표 IV-34〉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기간 매출액
2019년	-96.38	-23.95	177.9	-264.8	(461.1)	(79.71)	(210.7)	(490.0)
	-1,084	-198.1*	200.0	-2,757***	(671.1)	(117.2)	(318.9)	(760.0)
2021년	-942.4	-169.9	500.2	-3,400***	(683.3)	(128.4)	(313.2)	(712.4)
	1,648	638.0	826.8	-1,534	(1,431)	(432.1)	(629.4)	(1,660)
상수	-8,092	-58.86	-1,880	-1,248	(6,191)	(1,686)	(3,648)	(10,062)
	2,416	2,449	2,474	2,907	0.752	0.115	0.115	0.253
기업수	1,254	1,422	1,455	1,203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35〉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 지원여부	-1.639 (1.183)								
L2. 매출액	0.000493*** (0.000142)	0.000493*** (0.000142)	0.000491*** (0.000142)	0.000493*** (0.000142)	0.000494*** (0.000142)	0.000493*** (0.000142)	0.000493*** (0.000143)	0.000492*** (0.000142)	0.000495*** (0.000142)
L2. 총자산	-2.92e-05 (4.92e-05)	-2.72e-05 (4.92e-05)	-2.92e-05 (4.92e-05)	-2.72e-05 (4.92e-05)	-2.72e-05 (4.92e-05)	-2.72e-05 (4.92e-05)	-2.72e-05 (4.92e-05)	-2.83e-05 (4.92e-05)	-2.71e-05 (4.92e-05)
L2. 영업이익	-0.00469*** (0.000476)	-0.00470*** (0.000476)	-0.00468*** (0.000476)	-0.00470*** (0.000476)	-0.00470*** (0.000476)	-0.00470*** (0.000476)	-0.00470*** (0.000476)	-0.00469*** (0.000476)	-0.00471*** (0.000476)
L2. 산업중소 기업평균총 자산	-0.00101 (0.00117)	-0.00102 (0.00117)	-0.00104 (0.00117)	-0.00102 (0.00117)	-0.00102 (0.00117)	-0.00102 (0.00117)	-0.00102 (0.00117)	-0.00101 (0.00117)	-0.00100 (0.00117)
L2. 산업중소 기업평균 매출액	-0.00290 (0.00426)	-0.00284 (0.00426)	-0.00301 (0.00426)	-0.00282 (0.00426)	-0.00284 (0.00426)	-0.00284 (0.00426)	-0.00284 (0.00426)	-0.00286 (0.00426)	-0.00281 (0.00426)
L2. 산업중소 기업평균 영업이익	0.0185* (0.0104)	0.0183* (0.0104)	0.0189* (0.0104)	0.0182* (0.0104)	0.0183* (0.0104)	0.0183* (0.0104)	0.0183* (0.0104)	0.0183* (0.0104)	0.0182* (0.0104)

〈표 IV-35〉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2.산업중소 기업평균연 구개발비	0.0517 (0.490)	0.0451 (0.490)	0.0753 (0.490)	0.0480 (0.490)	0.0448 (0.490)	0.0451 (0.490)	0.0452 (0.490)	0.0600 (0.490)	0.0264 (0.490)
L2.산업중소 기업평균총 자산영업 이익률	-1.008**	-1.001**	-1.035**	-1.002**	-1.001**	-1.001**	-1.001**	-1.013**	-0.993**
2019.Year	(0.452)	(0.452)	(0.453)	(0.452)	(0.452)	(0.452)	(0.452)	(0.453)	(0.452)
2020.Year	-1.376 (1.676)	-1.513 (1.673)	-1.539 (1.673)	-1.503 (1.673)	-1.514 (1.673)	-1.514 (1.673)	-1.513 (1.673)	-1.360 (1.681)	-1.516 (1.672)
2021.Year	-11.27*** (2.412)	-11.45*** (2.409)	-11.50*** (2.408)	-11.43*** (2.409)	-11.45*** (2.409)	-11.45*** (2.409)	-11.45*** (2.409)	-11.24*** (2.418)	-11.44*** (2.408)
2022.Year	-6.910*** (2.370)	-7.790*** (2.284)	-7.552*** (2.289)	-7.787*** (2.284)	-7.791*** (2.284)	-7.791*** (2.284)	-7.791*** (2.284)	-7.066*** (2.411)	-7.701*** (2.284)
L.지원여부 경영	1.304 (5.071)	0.612 (5.051)	0.447 (5.048)	0.613 (5.047)	0.615 (5.047)	0.614 (5.047)	0.613 (5.047)	1.117 (5.075)	0.676 (5.046)
		0.0330 (2.887)							

〈표 IV-35〉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지원여부금융			-2.592 (1.658)						
L.지원여부기술				2.077 (8.354)					
L.지원여부기타					3.395 (49.93)				
L.지원여부내수						0.418 (21.09)			
L.지원여부수출							0.294 (7.829)		
L.지원여부인력								-1.179 (1.258)	
L.지원여부창업									-13.51* (7.616)
L2.총자산 영업이익률									
Constant	32.40 (25.37)	31.97 (25.37)	33.26 (25.38)	31.84 (25.37)	31.97 (25.37)	31.98 (25.37)	31.97 (25.37)	32.17 (25.37)	31.70 (25.36)

〈표 IV-35〉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Observations	10,246	10,246	10,246	10,246	10,246	10,246	10,246	10,246	10,246
R-squared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0.061
Number of FirmID	3,679	3,679	3,679	3,679	3,679	3,679	3,679	3,679	3,67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36〉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288.3 (179.4)								
L2.매출액									
L2.총자산	-0.0271*** (0.00743)	-0.0276*** (0.00743)	-0.0274*** (0.00743)	-0.0275*** (0.00743)	-0.0275*** (0.00743)	-0.0275*** (0.00743)	-0.0275*** (0.00743)	-0.0271*** (0.00743)	-0.0275*** (0.00743)
L2.영업이익	-3.660*** (0.0502)	-3.659*** (0.0502)	-3.659*** (0.0502)	-3.659*** (0.0502)	-3.658*** (0.0502)	-3.658*** (0.0502)	-3.658*** (0.0502)	-3.661*** (0.0502)	-3.658*** (0.0502)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771*** (0.178)	0.775*** (0.178)	0.774*** (0.178)	0.774*** (0.178)	0.773*** (0.178)	0.773*** (0.178)	0.773*** (0.178)	0.770*** (0.177)	0.772*** (0.178)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119 (0.646)	-0.127 (0.646)	-0.119 (0.646)	-0.124 (0.646)	-0.130 (0.646)	-0.129 (0.646)	-0.132 (0.646)	-0.123 (0.645)	-0.131 (0.646)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1.531 (1.577)	1.557 (1.577)	1.529 (1.578)	1.551 (1.578)	1.563 (1.577)	1.567 (1.577)	1.574 (1.577)	1.563 (1.576)	1.572 (1.577)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 개발비	-71.43 (74.32)	-69.93 (74.33)	-72.09 (74.38)	-69.58 (74.35)	-70.46 (74.33)	-70.39 (74.33)	-70.49 (74.32)	-75.59 (74.34)	-69.41 (74.34)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영업이익률	106.2 (68.63)	104.5 (68.64)	107.1 (68.72)	104.6 (68.64)	105.1 (68.64)	104.9 (68.64)	104.7 (68.63)	109.5 (68.64)	104.6 (68.64)

〈표 IV-36〉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2019. Year	-200.9 (253.9)	-175.7 (253.6)	-175.2 (253.6)	-174.2 (253.6)	-177.1 (253.6)	-177.7 (253.6)	-177.8 (253.5)	-231.8 (254.7)	-176.7 (253.5)
2020. Year	-1,443*** (365.3)	-1,411*** (364.9)	-1,409*** (364.9)	-1,408*** (365.0)	-1,412*** (364.9)	-1,413*** (364.9)	-1,411*** (364.8)	-1,485*** (366.2)	-1,412*** (364.8)
2021. Year	-1,800*** (358.6)	-1,647*** (345.5)	-1,660*** (346.2)	-1,645*** (345.4)	-1,646*** (345.5)	-1,646*** (345.5)	-1,643*** (345.5)	-1,905*** (364.6)	-1,650*** (345.5)
2022. Year	40.14 (768.7)	147.3 (765.6)	172.0 (765.2)	161.5 (765.1)	162.1 (765.1)	161.5 (765.1)	165.3 (765.1)	-18.33 (769.1)	158.7 (765.1)
L.지원여부경영		230.3 (437.7)							
L.지원여부금융			156.4 (251.5)						
L.지원여부기술				502.9 (1,267)					
L.지원여부기타					1,799 (7,571)				
L.지원여부내수						995.5 (3,198)			
L.지원여부수출							-822.1 (1,186)		

〈표 IV-36〉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인력								422.7**	
L.지원여부창업								(190.7)	621.3
L2.총자산영업이익률	15.38*** (2.703)	15.43*** (2.703)	15.41*** (2.703)	15.44*** (2.703)	15.44*** (2.703)	15.44*** (2.703)	15.46*** (2.703)	15.36*** (2.702)	15.41*** (2.704)
Constant	-5,846 (3,846)	-5,792 (3,847)	-5,848 (3,848)	-5,804 (3,847)	-5,775 (3,846)	-5,769 (3,846)	-5,762 (3,846)	-5,840 (3,845)	-5,758 (3,846)
Observations	10,246	10,246	10,246	10,246	10,246	10,246	10,246	10,246	10,246
R-squared	0.471	0.471	0.471	0.471	0.471	0.471	0.471	0.472	0.471
Number of FirmID	3,679	3,679	3,679	3,679	3,679	3,679	3,679	3,679	3,67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37〉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p) 영향(중기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정효과와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전기 지원여부	1.153 (2.081)	-0.311 (1.707)	1.002 (1.470)	-1.115* (0.616)
2기전 매출액	-0.000988 (0.00101)	-0.00851 (0.00646)	-0.00916*** (0.00179)	-0.000181 (0.000125)
2기전 총자산	0.0253*** (0.00123)	0.157*** (0.00482)	-0.000678* (0.000395)	0.000277*** (5.35e-05)
2기전 영업이익	-0.0311*** (0.00229)	-0.240*** (0.0128)	-0.0602*** (0.00433)	-0.00825*** (0.000357)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0420 (0.0346)	-0.0556 (0.0348)	-0.00278 (0.00670)	-0.00317 (0.0026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0.0238 (0.0246)	0.0250 (0.0239)	-0.00402 (0.00599)	-0.00104 (0.00187)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0.0737 (0.0531)	-0.0564 (0.0559)	0.0682*** (0.0136)	0.0113** (0.00520)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0.973 (1.910)	-2.127 (2.311)	-0.824* (0.441)	-0.104 (0.102)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2.662 (2.512)	2.200 (2.271)	-1.375*** (0.409)	0.231 (0.193)

〈표 IV-37〉의 계속

기업 분류별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총자산영업이익률
2019년	11.20 (12.73)	-7.283 (11.69)	5.038** (2.505)	0.417 (1.007)
2020년	12.82 (24.40)	-24.80 (21.83)	7.377* (4.131)	-3.664** (1.773)
2021년	20.97 (33.66)	-28.75 (30.44)	12.04** (6.004)	-3.307 (2.549)
2022년	11.99 (26.15)	-17.16 (23.59)	18.68*** (5.250)	1.339 (2.281)
상수	30.36 (113.8)	-27.18 (118.2)	90.85*** (29.43)	20.13 (15.63)
관측치수	5,184	6,762	5,478	7,756
결정계수	0.214	0.331	0.169	0.141
기업수	2,475	3,260	3,335	2,826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38〉 규모-수익성 4분류 정책평가 결과: 지원정책의 2기간 매출액(백만원) 영향(중기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상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수익성 하위
전기 지원여부	59.89		27.67**		87.28*		80.34	
	(68.29)		(11.55)		(50.27)		(103.4)	
2기전 총자산	0.0150		0.0115		0.406***		0.00850	
	(0.0473)		(0.0477)		(0.0132)		(0.00896)	
2기전 영업이익	-1.369***		-1.077***		-1.882***		-1.058***	
	(0.0587)		(0.0775)		(0.157)		(0.0634)	
2기전 총자산영업이익률	3.754***		-0.229		-0.376		-17.08***	
	(1.081)		(0.242)		(1.262)		(4.589)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	0.952		0.129		-0.610***		-0.0847	
	(1.136)		(0.236)		(0.229)		(0.445)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매출액	-1.116		-0.0987		0.475**		-0.169	
	(0.808)		(0.162)		(0.204)		(0.31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영업이익	3.610**		0.154		-0.218		-0.590	
	(1.742)		(0.378)		(0.468)		(0.871)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연구개발비	-54.56		34.90**		30.39**		9.665	
	(62.71)		(15.64)		(15.07)		(17.03)	
2기전 산업중소기업 평균총자산영업이익률	-58.96		7.690		43.73***		59.27*	
	(82.44)		(15.37)		(14.10)		(32.42)	

〈표 IV-38〉의 계속

기업 분류별 피설명변수(성과지표)	(1)매출 상위 수익성 상위		(2)매출 하위 수익성 상위		(3)매출 하위 수익성 하위		(4)매출 상위 수익성 하위	
	2기간 매출액	상위	2기간 매출액	상위	2기간 매출액	하위	2기간 매출액	하위
2019년	631.1		54.07		-126.1		148.7	
	(417.7)		(79.14)		(85.52)		(168.8)	
2020년	485.8		14.81		-384.5***		-642.5**	
	(800.8)		(147.8)		(140.7)		(297.0)	
2021년	871.0		26.12		-585.3***		-781.4*	
	(1,104)		(206.0)		(204.4)		(427.1)	
2022년	788.4		79.29		-440.8**		-448.6	
	(857.8)		(159.6)		(177.6)		(381.9)	
상수	3,840		85.08		-1,120		2,539	
	(3,737)		(799.6)		(1,008)		(2,619)	
관측치수	5,184		6,762		5,478		7,756	
결정계수	0.300		0.131		0.407		0.114	
기업수	2,475		3,260		3,335		2,826	

주: 1. 괄호 안 수치는 표준오차임

2. 유의도는 *** p<0.01, ** p<0.05, * p<0.1

〈표 IV-39〉 지원 분야별 총자산영업이익률(%p) 효과(중기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	(2)	(3)	(4)	(5)	(6)	(7)	(8)	(9)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0.769 (0.787)								
L2.대출액	-0.000678*** (0.000247)	-0.000667*** (0.000247)	-0.000664*** (0.000247)	-0.000671*** (0.000247)	-0.000668*** (0.000247)	-0.000671*** (0.000247)	-0.000673*** (0.000247)	-0.000679*** (0.000247)	-0.000673*** (0.000247)
L2.총자산	0.00148*** (0.000123)	0.00148*** (0.000123)	0.00148*** (0.000123)	0.00148*** (0.000123)	0.00148*** (0.000123)	0.00148*** (0.000123)	0.00148*** (0.000123)	0.00148*** (0.000123)	0.00148*** (0.000123)
L2.영업이익	-0.0193*** (0.000681)	-0.0193*** (0.000681)	-0.0193*** (0.000681)	-0.0193*** (0.000681)	-0.0193*** (0.000681)	-0.0193*** (0.000681)	-0.0193*** (0.000681)	-0.0193*** (0.000681)	-0.0193*** (0.000681)
L2.산업중소 기업평균총자산	-0.00586 (0.00472)	-0.00589 (0.00472)	-0.00597 (0.00472)	-0.00595 (0.00472)	-0.00596 (0.00472)	-0.00588 (0.00472)	-0.00594 (0.00472)	-0.00585 (0.00472)	-0.00612 (0.00472)
L2.산업중소 기업평균대출액	0.00519* (0.00312)	0.00530* (0.00312)	0.00536* (0.00312)	0.00531* (0.00312)	0.00533* (0.00312)	0.00524* (0.00312)	0.00531* (0.00312)	0.00515* (0.00312)	0.00532* (0.00312)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영업이익	0.0135* (0.00775)	0.0134* (0.00775)	0.0135* (0.00775)	0.0135* (0.00775)	0.0134* (0.00775)	0.0137* (0.00775)	0.0135* (0.00775)	0.0136* (0.00775)	0.0137* (0.00775)
L2.산업중소 기업평균 연구개발비	0.0262 (0.220)	0.0342 (0.220)	0.0323 (0.220)	0.0322 (0.220)	0.0326 (0.220)	0.0314 (0.220)	0.0322 (0.220)	0.0256 (0.220)	0.0282 (0.220)

〈표 IV-39〉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2. 산업중소 기업평균총 자산영업 이익률	-0.570*	-0.572*	-0.568*	-0.573*	-0.570*	-0.582*	-0.574*	-0.571*	-0.577*
	(0.326)	(0.326)	(0.326)	(0.326)	(0.326)	(0.326)	(0.326)	(0.326)	(0.326)
2019. Year	1.200	1.002	0.980	1.002	0.991	1.051	1.008	1.249	0.931
	(1.694)	(1.682)	(1.682)	(1.682)	(1.682)	(1.683)	(1.682)	(1.695)	(1.683)
2020. Year	-5.954**	-6.203**	-6.254**	-6.215**	-6.238**	-6.136**	-6.208**	-5.889*	-6.305**
	(3.021)	(3.009)	(3.009)	(3.009)	(3.010)	(3.010)	(3.009)	(3.021)	(3.010)
2021. Year	-7.264*	-7.730*	-7.715*	-7.732*	-7.763*	-7.617*	-7.720*	-7.140	-7.704*
	(4.396)	(4.370)	(4.370)	(4.370)	(4.370)	(4.371)	(4.370)	(4.397)	(4.370)
2022. Year	-6.809*	-7.131*	-7.174**	-7.157**	-7.189**	-7.060*	-7.153**	-6.721*	-7.041*
	(3.666)	(3.649)	(3.648)	(3.649)	(3.649)	(3.650)	(3.648)	(3.666)	(3.649)
L.지원여부경영		-2.195							
		(3.126)							
L.지원여부금융			-1.553						
			(1.802)						
L.지원여부기술				-0.375					
				(12.64)					
L.지원여부기타					-8.512				
					(17.26)				

〈표 IV-39〉의 계속

VARIABLES	(1) 전체	(2) 경영	(3) 금융	(4) 기술	(5) 기타	(6) 내수	(7) 수출	(8) 인력	(9) 창업
L.지원여부내수						-43.84 (45.16)			
L.지원여부수출							-5.953 (15.91)		
L.지원여부인력								-0.948 (0.787)	
L.지원여부창업									3.611 (2.381)
L2.총자산영 업이익률									
Constant	38.94* (22.59)	38.61* (22.59)	38.44* (22.59)	38.81* (22.59)	38.70* (22.59)	39.14* (22.59)	38.85* (22.59)	39.05* (22.59)	39.39* (22.59)
Observations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R-squared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0.102
Number of FirmID	8,871	8,871	8,871	8,871	8,871	8,871	8,871	8,871	8,87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표 IV-40〉 지원 분야별 매출액(백만원) 효과(중기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정효과 패널모형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지원여부	97.13*** (35.89)								
L2.매출액									
L2.총자산	0.0187*** (0.00557)	0.0186*** (0.00557)	0.0189*** (0.00557)	0.0186*** (0.00557)	0.0187*** (0.00557)	0.0185*** (0.00557)	0.0186*** (0.00557)	0.0187*** (0.00557)	0.0185*** (0.00557)
L2.영업이익	-1.474*** (0.0269)	-1.474*** (0.0269)	-1.473*** (0.0269)	-1.475*** (0.0269)	-1.474*** (0.0269)	-1.474*** (0.0269)	-1.474*** (0.0269)	-1.474*** (0.0269)	-1.474*** (0.0269)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0.189 (0.215)	0.200 (0.215)	0.195 (0.215)	0.200 (0.215)	0.196 (0.215)	0.199 (0.215)	0.201 (0.215)	0.188 (0.215)	0.197 (0.215)
L2.산업중소기업평균매출액	-0.760*** (0.141)	-0.776*** (0.141)	-0.764*** (0.141)	-0.773*** (0.141)	-0.769*** (0.141)	-0.774*** (0.141)	-0.776*** (0.141)	-0.756*** (0.141)	-0.776*** (0.141)
L2.산업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	0.814** (0.352)	0.823** (0.352)	0.821** (0.352)	0.825** (0.352)	0.805** (0.352)	0.818** (0.352)	0.825** (0.352)	0.807** (0.352)	0.828** (0.352)
L2.산업중소기업평균연구개발비	-3.727 (10.01)	-4.480 (10.01)	-4.424 (10.00)	-4.240 (10.01)	-4.347 (10.01)	-4.471 (10.01)	-4.480 (10.01)	-3.669 (10.01)	-4.573 (10.01)
L2.산업중소기업평균총자산 영업이익률	31.67** (14.85)	32.06** (14.86)	32.94** (14.85)	32.26** (14.85)	32.74** (14.85)	32.28** (14.86)	31.94** (14.86)	31.79** (14.85)	31.96** (14.86)
2019.Year	185.5** (77.23)	210.4*** (76.70)	206.4*** (76.68)	209.1*** (76.70)	207.7*** (76.69)	209.2*** (76.73)	210.8*** (76.70)	180.2** (77.24)	208.8*** (76.73)

〈표 IV-40〉의 계속

VARIABLES	(10) 전체	(11) 경영	(12) 금융	(13) 기술	(14) 기타	(15) 내수	(16) 수출	(17) 인력	(18) 창업
2020. Year	-165.4 (137.7)	-132.7 (137.2)	-139.6 (137.1)	-135.2 (137.2)	-138.3 (137.2)	-134.7 (137.2)	-132.3 (137.2)	-172.3 (137.7)	-134.7 (137.2)
2021. Year	-124.6 (200.3)	-66.17 (199.2)	-63.13 (199.2)	-70.23 (199.2)	-73.74 (199.2)	-69.01 (199.3)	-65.40 (199.2)	-138.1 (200.4)	-65.65 (199.2)
2022. Year	104.8 (167.1)	148.3 (166.3)	145.5 (166.3)	146.0 (166.3)	140.9 (166.3)	145.8 (166.4)	148.4 (166.3)	95.36 (167.1)	150.7 (166.4)
L.지원여부경영		-8.740 (142.5)							
L.지원여부금융			-273.4*** (82.06)						
L.지원여부기술				-936.6 (576.2)					
L.지원여부기타					-2,013** (786.4)				
L.지원여부내수						1,106 (2,059)			
L.지원여부수출							-469.4 (725.6)		
L.지원여부인력								116.3*** (35.85)	
L.지원여부창업									78.67 (108.6)

〈표 IV-40〉의 계속

VARIAB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경영	금융	기술	기타	내수	수출	인력	창업
L2. 중자산업업이익률	-1.446*** (0.519)	-1.427*** (0.519)	-1.421*** (0.519)	-1.426*** (0.519)	-1.432*** (0.519)	-1.429*** (0.519)	-1.426*** (0.519)	-1.451*** (0.519)	-1.423*** (0.519)
Constant	2,201** (1,030)	2,216** (1,030)	2,151** (1,030)	2,197** (1,030)	2,188** (1,030)	2,209** (1,030)	2,219** (1,030)	2,188** (1,030)	2,229** (1,030)
Observations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25,180
R-squared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Number of FirmID	8,871	8,871	8,871	8,871	8,871	8,871	8,871	8,871	8,87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주: *** p<0.01, ** p<0.05, * p<0.1

V.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수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원수요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조사목적: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발굴
 - 조사시기: 2023년 9월
 - 조사대상: 중소·중견기업 210개사
 - ① 중소기업 (2021년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 ② 중소기업 (졸업유예상태 기업)
 - ③ 중견기업

※ 본 설문조사 결과를 업무영(2023)²⁵⁾에서 일부 활용하였으나, 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수출기업 여부를 수정하였기에, 해당 보고서 결과와 다른 부분이 존재함

25) 업무영(2023), 『중소기업 유예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시연구 23-10,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 응답 기업 기초통계

가. 기업규모 유형

- 응답 기업의 기업규모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²⁶⁾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졸업 유예기업(27.6%),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의 초기 중견기업(22.4%), 졸업 후 3년 이상의 후기 중견기업(2.9%) 순

〈표 V-1〉 기업규모 유형

(단위: 개, %)

구분	빈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업		초기 중견기업		후기 중견기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10	99	47.1	58	27.6	47	22.4	6	2.9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99	100.0	0	0.0	0	0.0	0	0.0
	졸업 유예기업	58	0	0.0	58	100.0	0	0.0	0	0.0
	초기 중견기업	47	0	0.0	0	0.0	47	100.0	0	0.0
	후기 중견기업	6	0	0.0	0	0.0	0	0.0	6	100.0
소재지	수도권	104	46	44.2	32	30.8	22	21.2	4	3.8
	충청권	23	11	47.8	9	39.1	3	13.0	0	0.0
	호남권	20	13	65.0	4	20.0	3	15.0	0	0.0
	대경권	25	9	36.0	6	24.0	9	36.0	1	4.0
	부울경	33	18	54.5	6	18.2	8	24.2	1	3.0
	강원, 제주	5	2	40.0	1	20.0	2	40.0	0	0.0
수출 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52	38.8	36	26.9	41	30.6	5	3.7
	내수기업	76	47	61.8	22	28.9	6	7.9	1	1.3
주요 판매처	B2C	26	20	76.9	5	19.2	1	3.8	0	0.0
	B2B	144	63	43.8	44	30.6	33	22.9	4	2.8
	B2G	5	1	20.0	3	60.0	1	20.0	0	0.0
	해외 판매처	35	15	42.9	6	17.1	12	34.3	2	5.7
업종	제조업 (C)	123	55	44.7	29	23.6	35	28.5	4	3.3
	도소매업 (G)	42	27	64.3	8	19.0	6	14.3	1	2.4
	건설업 (F)	16	9	56.3	4	25.0	3	18.8	0	0.0
	기타 업종	29	8	27.6	17	58.6	3	10.3	1	3.4

26) 중견기업에서 회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응답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졸업을 경험한 기업은 없음

나. 소재지

- 응답 기업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49.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어서 부울경(15.7%), 대경권(11.9%) 순

〈표 V-2〉 소재지

(단위: 개, %)

구분	빈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울경		강원, 제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10	104	49.5	23	11.0	20	9.5	25	11.9	33	15.7	5	2.4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46	46.5	11	11.1	13	13.1	9	9.1	18	18.2	2	2.0
	졸업 유예기업	58	32	55.2	9	15.5	4	6.9	6	10.3	6	10.3	1	1.7
	초기 중견기업	47	22	46.8	3	6.4	3	6.4	9	19.1	8	17.0	2	4.3
	후기 중견기업	6	4	66.7	0	0.0	0	0.0	1	16.7	1	16.7	0	0.0
소재지	수도권	104	10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충청권	23	0	0.0	23	100.0	0	0.0	0	0.0	0	0.0	0	0.0
	호남권	20	0	0.0	0	0.0	20	100.0	0	0.0	0	0.0	0	0.0
	대경권	25	0	0.0	0	0.0	0	0.0	25	100.0	0	0.0	0	0.0
	부울경	33	0	0.0	0	0.0	0	0.0	0	0.0	33	100.0	0	0.0
	강원, 제주	5	0	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수출 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58	43.3	15	11.2	14	10.4	19	14.2	26	19.4	2	1.5
	내수기업	76	46	60.5	8	10.5	6	7.9	6	7.9	7	9.2	3	3.9
주요 판매처	B2C	26	16	61.5	4	15.4	3	11.5	1	3.8	0	0.0	2	7.7
	B2B	144	72	50.0	17	11.8	12	8.3	17	11.8	25	17.4	1	0.7
	B2G	5	3	60.0	0	0.0	1	20.0	0	0.0	0	0.0	1	20.0
	해외 판매처	35	13	37.1	2	5.7	4	11.4	7	20.0	8	22.9	1	2.9
업종	제조업 (C)	123	41	33.3	19	15.4	15	12.2	21	17.1	23	18.7	4	3.3
	도소매업 (G)	42	28	66.7	1	2.4	2	4.8	3	7.1	7	16.7	1	2.4
	건설업 (F)	16	10	62.5	2	12.5	3	18.8	1	6.3	0	0.0	0	0.0
	기타 업종	29	25	86.2	1	3.4	0	0.0	0	0.0	3	10.3	0	0.0

다. 수출기업 여부

- 응답 기업의 수출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기업 중 63.8%는 수출기업이었으며, 36.2%는 2022년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 기업규모 유형별로 구분하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은 52.5% 수준이었으며, 졸업 유예기업(62.1%), 초기 중견기업(87.2%) 등 기업규모가 클수록 수출기업 비율이 높아짐

〈표 V-3〉 수출기업 여부

(단위: 개, %)

구 분	빈도	수출기업		내수기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210	134	63.8	76	36.2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52	52.5	47	47.5
	졸업 유예기업	58	36	62.1	22	37.9
	초기 중견기업	47	41	87.2	6	12.8
	후기 중견기업	6	5	83.3	1	16.7
소재지	수도권	104	58	55.8	46	44.2
	충청권	23	15	65.2	8	34.8
	호남권	20	14	70.0	6	30.0
	대경권	25	19	76.0	6	24.0
	부울경	33	26	78.8	7	21.2
	강원, 제주	5	2	40.0	3	60.0
수출 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134	100.0	0	0.0
	내수기업	76	0	0.0	76	100.0
주요 판매처	B2C	26	13	50.0	13	50.0
	B2B	144	86	59.7	58	40.3
	B2G	5	0	0.0	5	100.0
	해외 판매처	35	35	100.0	0	0.0
업종	제조업 (C)	123	100	81.3	23	18.7
	도소매업 (G)	42	20	47.6	22	52.4
	건설업 (F)	16	2	12.5	14	87.5
	기타 업종	29	12	41.4	17	58.6

라. 주요 판매처 유형

- 응답 기업의 주요 판매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B2B 기업이 6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주요 판매처가 해외인 기업(16.7%), B2C 기업(12.4%) 순
- 중소기업 중 B2C 기업은 20.2%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B2C 기업 비중이 높았으며, 졸업 유예기업, 중견기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B2C 기업 비율이 감소

〈표 V-4〉 주요 판매처 유형

(단위: 개, %)

구분	빈도	B2C		B2B		B2G		해외 판매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10	26	12.4	144	68.6	5	2.4	35	16.7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20	20.2	63	63.6	1	1.0	15	15.2
	졸업 유예기업	58	5	8.6	44	75.9	3	5.2	6	10.3
	초기 중견기업	47	1	2.1	33	70.2	1	2.1	12	25.5
	후기 중견기업	6	0	0.0	4	66.7	0	0.0	2	33.3
	수도권	104	16	15.4	72	69.2	3	2.9	13	12.5
소재지	충청권	23	4	17.4	17	73.9	0	0.0	2	8.7
	호남권	20	3	15.0	12	60.0	1	5.0	4	20.0
	대경권	25	1	4.0	17	68.0	0	0.0	7	28.0
	부울경	33	0	0.0	25	75.8	0	0.0	8	24.2
	강원, 제주	5	2	40.0	1	20.0	1	20.0	1	20.0
수출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13	9.7	86	64.2	0	0.0	35	26.1
	내수기업	76	13	17.1	58	76.3	5	6.6	0	0.0
주요 판매처	B2C	26	26	100.0	0	0.0	0	0.0	0	0.0
	B2B	144	0	0.0	144	100.0	0	0.0	0	0.0
	B2G	5	0	0.0	0	0.0	5	100.0	0	0.0
	해외 판매처	35	0	0.0	0	0.0	0	0.0	35	100.0
업종	제조업 (C)	123	13	10.6	82	66.7	2	1.6	26	21.1
	도소매업 (G)	42	9	21.4	25	59.5	0	0.0	8	19.0
	건설업 (F)	16	1	6.3	14	87.5	1	6.3	0	0.0
	기타 업종	29	3	10.3	23	79.3	2	6.9	1	3.4

마. 영위 업종

- 응답 기업의 영위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8.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도
소매업(20.0%), 건설업(7.6%) 순

〈표 V-5〉 영위 업종

(단위: 개, %)

구 분	빈도	제조업 (C)		도소매업 (G)		건설업 (F)		기타 업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210	123	58.6	42	20.0	16	7.6	29	13.8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55	55.6	27	27.3	9	9.1	8	8.1
	중기업	58	29	50.0	8	13.8	4	6.9	17	29.3
	대기업	47	35	74.5	6	12.8	3	6.4	3	6.4
	초대기업	6	4	66.7	1	16.7	0	0.0	1	16.7
소재지	수도권	104	41	39.4	28	26.9	10	9.6	25	24.0
	충청권	23	19	82.6	1	4.3	2	8.7	1	4.3
	호남권	20	15	75.0	2	10.0	3	15.0	0	0.0
	대경권	25	21	84.0	3	12.0	1	4.0	0	0.0
	부울경	33	23	69.7	7	21.2	0	0.0	3	9.1
	강원, 제주	5	4	80.0	1	20.0	0	0.0	0	0.0
수출 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100	74.6	20	14.9	2	1.5	12	9.0
	내수기업	76	23	30.3	22	28.9	14	18.4	17	22.4
주요 판매처	B2C	26	13	50.0	9	34.6	1	3.8	3	11.5
	B2B	144	82	56.9	25	17.4	14	9.7	23	16.0
	B2G	5	2	40.0	0	0.0	1	20.0	2	40.0
	해외 판매처	35	26	74.3	8	22.9	0	0.0	1	2.9
업종	제조업 (C)	123	123	100.0	0	0.0	0	0.0	0	0.0
	도소매업 (G)	42	0	0.0	42	100.0	0	0.0	0	0.0
	건설업 (F)	16	0	0.0	0	0.0	16	100.0	0	0.0
	기타 업종	29	0	0.0	0	0.0	0	0.0	29	100.0

3.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관련 의견

가. 중소기업 우호적 제도적·정책적 혜택에 대한 인식

-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제도적·정책적 혜택의 존재에 대해, 응답 기업의 81.0%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혜택이 존재한다고 응답
-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에 우호적 혜택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3.7%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졸업 유예기업 중에서는 91.4%가 중소기업에 우호적 혜택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V-6〉 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 우호적 제도-정책 혜택 존재 여부

(단위: 개, %)

구 분	빈도	예		아니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210	170	81.0	40	19.0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73	73.7	26	26.3
	졸업 유예기업	58	53	91.4	5	8.6
	초기 중견기업	47	39	83.0	8	17.0
	후기 중견기업	6	5	83.3	1	16.7
소재지	수도권	104	86	82.7	18	17.3
	충청권	23	20	87.0	3	13.0
	호남권	20	14	70.0	6	30.0
	대경권	25	21	84.0	4	16.0
	부울경	33	25	75.8	8	24.2
	강원, 제주	5	4	80.0	1	20.0
수출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112	83.6	22	16.4
	내수기업	76	58	76.3	18	23.7
주요 판매처	B2C	26	20	76.9	6	23.1
	B2B	144	116	80.6	28	19.4
	B2G	5	5	100.0	0	0.0
	해외 판매처	35	29	82.9	6	17.1
업종	제조업 (C)	123	104	84.6	19	15.4
	도소매업 (G)	42	31	73.8	11	26.2
	건설업 (F)	16	13	81.3	3	18.8
	기타 업종	29	22	75.9	7	24.1

나. 중견기업 대비 중소기업 우호적인 제도적·정책적 혜택 유형²⁷⁾

- 중소기업에 우호적 제도적·정책적 혜택의 유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조세감면이 8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어서 중소기업 정책금융(59.4%),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제 부담(40.6%), 공공조달 참여 기회(32.9%) 순
- 중소기업 조세감면의 경우, 기업규모 유형에 상관없이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중 가장 크게 인식
- 공공조달 참여 기회의 경우, 참여 기회가 혜택이라는 응답은 중소기업 중에서 19.2%에 불과했으나, 졸업 유예기업(47.2%), 초기 중견기업(38.5%) 등에서는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혜택이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 규모별로 인식 차이가 큰 것을 확인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우, 수출기업은 정책금융이 혜택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5.2%였던 데 반해, 내수기업은 48.3%에 불과하여 수출 여부에 따라 정책금융 혜택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표 V-7〉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제도적·정책적 혜택 유형(복수응답)

(단위: 개, %)

구 분	빈도	중소기업 조세감면		중소기업 정책금융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제 부담		공공조달 참여 기회		인력·판로 지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70	147	86.5	101	59.4	69	40.6	56	32.9	48	28.2	
기업 규모	중소기업	73	63	86.3	41	56.2	22	30.1	14	19.2	18	24.7
	졸업 유예기업	53	46	86.8	34	64.2	30	56.6	25	47.2	19	35.8
	초기 중견기업	39	33	84.6	22	56.4	15	38.5	15	38.5	11	28.2
	후기 중견기업	5	5	100.0	4	80.0	2	40.0	2	40.0	0	0.0

27)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우호적 제도적·정책적 혜택 존재한다고 응답한 기업만 응답

〈표 V-7〉의 계속

(단위: 개, %)

구 분	빈도	중소기업 조세감면		중소기업 정책금융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제 부담		공공조달 참여 기회		인력·판로 지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재지	수도권	86	72	83.7	47	54.7	33	38.4	31	36.0	23	26.7
	충청권	20	19	95.0	12	60.0	9	45.0	7	35.0	10	50.0
	호남권	14	13	92.9	8	57.1	7	50.0	2	14.3	4	28.6
	대경권	21	17	81.0	13	61.9	6	28.6	5	23.8	5	23.8
	부울경	25	23	92.0	18	72.0	12	48.0	9	36.0	5	20.0
	강원, 제주	4	3	75.0	3	75.0	2	50.0	2	50.0	1	25.0
수출 기업 여부	수출기업	112	98	87.5	73	65.2	45	40.2	32	28.6	32	28.6
	내수기업	58	49	84.5	28	48.3	24	41.4	24	41.4	16	27.6
주요 판매처	B2C	20	18	90.0	10	50.0	7	35.0	7	35.0	8	40.0
	B2B	116	101	87.1	69	59.5	49	42.2	39	33.6	34	29.3
	B2G	5	4	80.0	1	20.0	1	20.0	4	80.0	0	0.0
	해외 판매처	29	24	82.8	21	72.4	12	41.4	6	20.7	6	20.7
업종	제조업 (C)	104	90	86.5	63	60.6	44	42.3	30	28.8	29	27.9
	도소매업 (G)	31	26	83.9	21	67.7	9	29.0	11	35.5	10	32.3
	건설업 (F)	13	12	92.3	5	38.5	5	38.5	3	23.1	1	7.7
	기타 업종	22	19	86.4	12	54.5	11	50.0	12	54.5	8	36.4

주: 앞선 설문에서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제도적·정책적 혜택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170개 기업 대상 설문

다. 중견기업의 적절한 조세감면 수준²⁸⁾

- 응답 기업은 평균적으로 중견기업에는 중소기업의 75% 수준에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
-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70.3%, 유예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은 평균적으로 70% 후반대로 인식하여 기업규모별 차이는 있으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70%대에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

28) 중소기업 조세감면을 100으로 두었을 때, 적절한 중견기업 조세감면의 상대적 수준

□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감면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34.3%,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32.9%로 각각 1/3 정도 수준을 차지

〈표 V-8〉 중소기업 대비 중견기업의 적절한 조세감면 수준

(단위: 개, %)

구분	빈도	평균	중소기업 조세 감면의 50% 미만 수준		중소기업 조세 감면의 50% 수준		중소기업 조세 감면의 50% 초과 80% 미만 수준		중소기업 조세 감면의 80% 이상 100% 미만 수준		중소기업과 동일 수준의 조세 감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10	74.8	5	2.4	69	32.9	30	14.3	34	16.2	72	34.3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70.3	4	4.0	40	40.4	15	15.2	11	11.1	29	29.3
	졸업 유예기업	58	79.7	1	1.7	12	20.7	9	15.5	14	24.1	22	37.9
	초기 중견기업	47	78.5	0	0.0	14	29.8	6	12.8	8	17.0	19	40.4
	후기 중견기업	6	71.7	0	0.0	3	50.0	0	0.0	1	16.7	2	33.3
소재지	수도권	104	74.3	4	3.8	34	32.7	13	12.5	17	16.3	36	34.6
	충청권	23	74.3	0	0.0	9	39.1	3	13.0	3	13.0	8	34.8
	호남권	20	72.5	0	0.0	8	40.0	2	10.0	5	25.0	5	25.0
	대경권	25	73.8	0	0.0	9	36.0	5	20.0	3	12.0	8	32.0
	부울경	33	79.1	1	3.0	7	21.2	6	18.2	5	15.2	14	42.4
	강원, 제주	5	71.0	0	0.0	2	40.0	1	20.0	1	20.0	1	20.0
수출 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74.5	4	3.0	43	32.1	21	15.7	21	15.7	45	33.6
	내수기업	76	75.3	1	1.3	26	34.2	9	11.8	13	17.1	27	35.5
주요 판매처	B2C	26	75.6	0	0.0	9	34.6	2	7.7	7	26.9	8	30.8
	B2B	144	75.6	3	2.1	47	32.6	19	13.2	22	15.3	53	36.8
	B2G	5	75.0	0	0.0	1	20.0	2	40.0	1	20.0	1	20.0
	해외 판매처	35	70.7	2	5.7	12	34.3	7	20.0	4	11.4	10	28.6
업종	제조업 (C)	123	73.9	4	3.3	40	32.5	20	16.3	19	15.4	40	32.5
	도소매업 (G)	42	74.3	0	0.0	15	35.7	7	16.7	7	16.7	13	31.0
	건설업 (F)	16	69.4	1	6.3	7	43.8	1	6.3	2	12.5	5	31.3
	기타 업종	29	81.9	0	0.0	7	24.1	2	6.9	6	20.7	14	48.3

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 차이

- 응답 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규제 차이 중에서 고용 분야의 규제(30.0%)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졸업 유예기업(39.7%)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임
- 영업활동 규제 차이가 크다는 응답은 전체 기업 중에서는 21.0%에 불과하였으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면 3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영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크게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9〉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 차이

(단위: 개, %)

구 분	빈도	소유·지배 구조 관련 제한 (의결권 제한 등)		영업 활동 규제 (특정 산업 영업 활동 제한 등)		고용 규제 (안전, 보건 등 책임자 선임의무 등)		진입 규제 (지분취득 금지 규제 등)		공시 규제 (기업 현황 공시 의무 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210	41	19.5	44	21.0	63	30.0	25	11.9	37	17.6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24	24.2	17	17.2	26	26.3	14	14.1	18	18.2
	졸업 유예기업	58	9	15.5	9	15.5	23	39.7	4	6.9	13	22.4
	초기 중견기업	47	7	14.9	16	34.0	12	25.5	7	14.9	5	10.6
	후기 중견기업	6	1	16.7	2	33.3	2	33.3	0	0.0	1	16.7
소재지	수도권	104	18	17.3	26	25.0	29	27.9	17	16.3	14	13.5
	충청권	23	4	17.4	3	13.0	9	39.1	1	4.3	6	26.1
	호남권	20	7	35.0	5	25.0	4	20.0	1	5.0	3	15.0
	대경권	25	3	12.0	4	16.0	7	28.0	3	12.0	8	32.0
	부울경	33	8	24.2	5	15.2	11	33.3	3	9.1	6	18.2
	강원, 제주	5	1	20.0	1	20.0	3	60.0	0	0.0	0	0.0
수출 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24	17.9	30	22.4	41	30.6	17	12.7	22	16.4
	내수기업	76	17	22.4	14	18.4	22	28.9	8	10.5	15	19.7
주요 판매처	B2C	26	4	15.4	3	11.5	9	34.6	4	15.4	6	23.1
	B2B	144	25	17.4	28	19.4	45	31.3	19	13.2	27	18.8
	B2G	5	2	40.0	1	20.0	2	40.0	0	0.0	0	0.0
	해외 판매처	35	10	28.6	12	34.3	7	20.0	2	5.7	4	11.4

〈표 V-9〉의 계속

(단위: 개, %)

구 분	빈도	소유·지배 구조 관련 제한 (의결권 제한 등)		영업 활동 규제 (특정 산업 영업 활동 제한 등)		고용 규제 (안전, 보건 등 책임자 선임의무 등)		진입 규제 (지분취득 금지 규제 등)		공시 규제 (기업 현황 공시 의무 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업종	제조업 (C)	123	18	14.6	23	18.7	45	36.6	16	13.0	21	17.1
	도소매업 (G)	42	9	21.4	12	28.6	6	14.3	4	9.5	11	26.2
	건설업 (F)	16	5	31.3	2	12.5	5	31.3	1	6.3	3	18.8
	기타 업종	29	9	31.0	7	24.1	7	24.1	4	13.8	2	6.9

마. 중소기업 성장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 중소기업 성장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모든 기업군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표 V-10〉 중소기업 성장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단위: 개, %)

구 분	빈도	대기업과의 생산성, 임금 등 격차 해소		유망산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 규제 완화		신속한 자금 집행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210	108	51.4	20	9.5	40	19.0	42	2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54	54.5	7	7.1	16	16.2	22	22.2
	중소기업	58	28	48.3	6	10.3	11	19.0	13	22.4
	초기 중견기업	47	21	44.7	7	14.9	13	27.7	6	12.8
	후기 중견기업	6	5	83.3	0	0.0	0	0.0	1	16.7
소재지	수도권	104	55	52.9	9	8.7	21	20.2	19	18.3
	충청권	23	10	43.5	3	13.0	5	21.7	5	21.7
	호남권	20	11	55.0	3	15.0	3	15.0	3	15.0
	대경권	25	11	44.0	3	12.0	4	16.0	7	28.0
	부울경	33	18	54.5	2	6.1	7	21.2	6	18.2
	강원, 제주	5	3	60.0	0	0.0	0	0.0	2	40.0

〈표 V-10〉의 계속

(단위: 개, %)

구 분		빈도	대기업과의 생산성, 임금 등 격차 해소		유망산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 규제 혁파		신속한 자금 집행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출 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70	52.2	13	9.7	25	18.7	26	19.4
	내수기업	76	38	50.0	7	9.2	15	19.7	16	21.1
주요 판매처	B2C	26	12	46.2	0	0.0	6	23.1	8	30.8
	B2B	144	75	52.1	16	11.1	23	16.0	30	20.8
	B2G	5	4	80.0	0	0.0	1	20.0	0	0.0
	해외 판매처	35	17	48.6	4	11.4	10	28.6	4	11.4
업종	제조업 (C)	123	68	55.3	13	10.6	24	19.5	18	14.6
	도소매업 (G)	42	17	40.5	3	7.1	6	14.3	16	38.1
	건설업 (F)	16	9	56.3	2	12.5	4	25.0	1	6.3
	기타 업종	29	14	48.3	2	6.9	6	20.7	7	24.1

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 다만, 졸업 유예기업은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견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규제 차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아 기업규모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 방향성에 다소 차이 존재

〈표 V-11〉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1순위)

(단위: 개, %)

구 분	빈도	유예기간 확대로 준비기간 보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규제 차이 개선		중견기업 조세부담 완화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210	49	23.3	57	27.1	85	40.5	19	9.0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19	19.2	28	28.3	43	43.4	9	9.1
	졸업 유예기업	58	21	36.2	11	19.0	24	41.4	2	3.4
	초기 중견기업	47	9	19.1	15	31.9	15	31.9	8	17.0
	후기 중견기업	6	0	0.0	3	50.0	3	50.0	0	0.0
소재지	수도권	104	21	20.2	32	30.8	42	40.4	9	8.7
	충청권	23	8	34.8	3	13.0	9	39.1	3	13.0
	호남권	20	6	30.0	5	25.0	7	35.0	2	10.0
	대경권	25	3	12.0	6	24.0	14	56.0	2	8.0
	부울경	33	10	30.3	9	27.3	11	33.3	3	9.1
	강원, 제주	5	1	20.0	2	40.0	2	40.0	0	0.0
수출 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34	25.4	29	21.6	54	40.3	17	12.7
	내수기업	76	15	19.7	28	36.8	31	40.8	2	2.6
주요 판매처	B2C	26	5	19.2	9	34.6	10	38.5	2	7.7
	B2B	144	36	25.0	34	23.6	60	41.7	14	9.7
	B2G	5	2	40.0	3	60.0	0	0.0	0	0.0
	해외 판매처	35	6	17.1	11	31.4	15	42.9	3	8.6
업종	제조업 (C)	123	33	26.8	31	25.2	48	39.0	11	8.9
	도소매업 (G)	42	6	14.3	11	26.2	23	54.8	2	4.8
	건설업 (F)	16	4	25.0	5	31.3	5	31.3	2	12.5
	기타 업종	29	6	20.7	10	34.5	9	31.0	4	13.8

〈표 V-12〉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1, 2순위)

(단위: 개, %)

구 분	빈도	유예기간 확대로 준비기간 보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규제 차이 개선		중견기업 조세부담 완화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210	69	32.9	108	51.4	159	75.7	84	4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99	26	26.3	52	52.5	72	72.7	48	48.5
	졸업 유예기업	58	29	50.0	24	41.4	48	82.8	15	25.9
	초기 중견기업	47	14	29.8	28	59.6	33	70.2	19	40.4
	후기 중견기업	6	0	0.0	4	66.7	6	100.0	2	33.3
소재지	수도권	104	28	26.9	58	55.8	81	77.9	41	39.4
	충청권	23	10	43.5	13	56.5	14	60.9	9	39.1
	호남권	20	8	40.0	12	60.0	14	70.0	6	30.0
	대경권	25	9	36.0	10	40.0	20	80.0	11	44.0
	부울경	33	13	39.4	12	36.4	26	78.8	15	45.5
	강원, 제주	5	1	20.0	3	60.0	4	80.0	2	40.0
수출 기업 여부	수출기업	134	46	34.3	71	53.0	101	75.4	50	37.3
	내수기업	76	23	30.3	37	48.7	58	76.3	34	44.7
주요 판매처	B2C	26	6	23.1	15	57.7	16	61.5	15	57.7
	B2B	144	50	34.7	69	47.9	112	77.8	57	39.6
	B2G	5	3	60.0	3	60.0	4	80.0	0	0.0
	해외 판매처	35	10	28.6	21	60.0	27	77.1	12	34.3
업종	제조업 (C)	123	44	35.8	62	50.4	91	74.0	49	39.8
	도소매업 (G)	42	9	21.4	22	52.4	35	83.3	18	42.9
	건설업 (F)	16	7	43.8	6	37.5	13	81.3	6	37.5
	기타 업종	29	9	31.0	18	62.1	20	69.0	11	37.9

4. 요약 및 시사점

- 본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위해,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업 및 중견기업 등 피터팬증후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피터팬증후군 현황을 확인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81.0%는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혜택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조세 감면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정책금융, 규제 차이 순으로 나타남
 - 적절한 중견기업 조세감면 수준은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75%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이 되었으나, 75%에 응답이 밀집된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이 적절하다는 비율(34.3%)과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이 적절하다는 비율(32.9%)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면서 중간인 75%에서 평균이 형성
 - 규제 분야 중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규제는 고용 분야 규제(3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졸업 유예기업(39.7%)에서 이러한 인식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정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기업과의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조세부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 두 번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졸업 유예기업은 조세부담에 이어 유예기업 확대를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준비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정
 - 반면 중견기업은 조세부담에 이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규제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두 번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조세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서는 재정정책보다는 ‘조세정책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조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으로 안전과 보건 등 ‘고용에 대한 규제’가 나타났으며, 이에 고용 분야의 규제를 중점 점검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불합리한 규제 차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

-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후보군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향후 중소기업 생산성 대책 마련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Ⅵ.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중소기업의 중견기업·대기업 성장 시의 인센티브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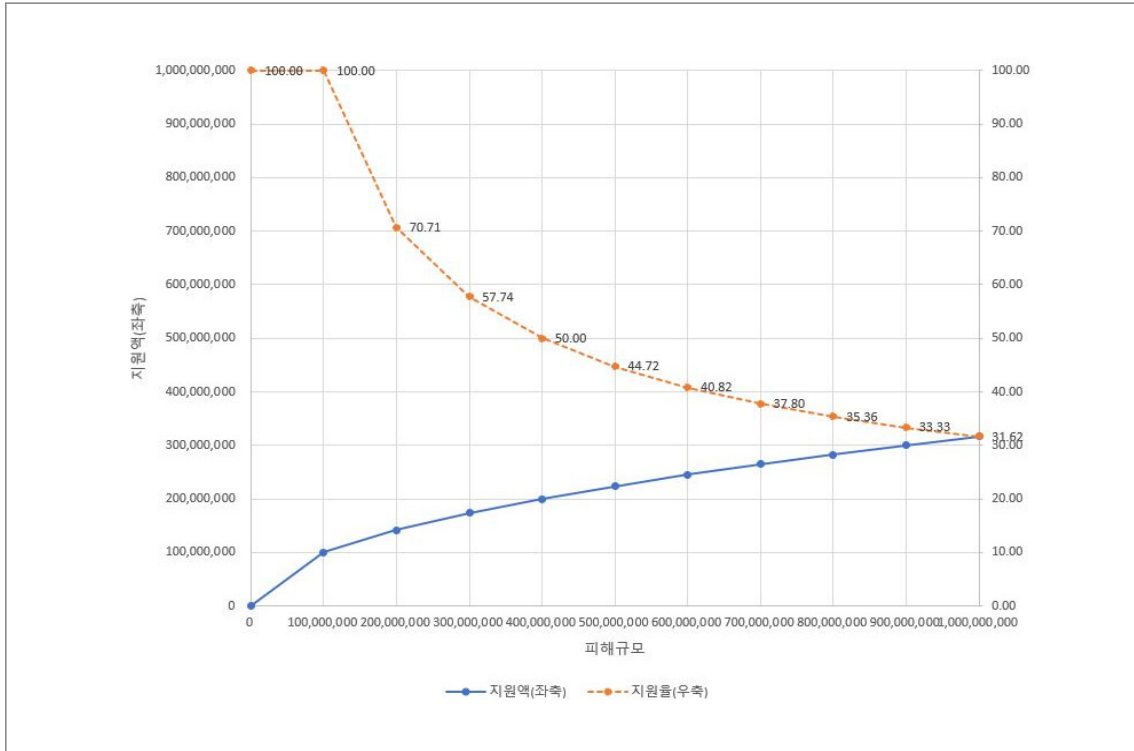
가. 중소기업 정책 지원규모와 중견기업 정책 지원규모의 격차 완화 필요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정책 설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격차가 크게 설계되어 절벽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향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단계형·연속형 정책설계로 전환할 필요
 - 근로장려금(EITC) 설계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절벽형으로 설계해 왔음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절벽이 존재하는 한 피터팬 효과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바, 계단형-연속형 정책 설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함

- 다음 사례는 단계형-연속형 정책 설계의 예시로, 장우현·김우현(2022)에서 제시한 코로나19 등 긴급위기 발생 시 기업 손실보전금 설계를 연속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 내용임
 - 지금까지의 손실보전금은 매출 기준을 만족하면 전액 지급, 만족하지 못하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태
 -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액은 증가시키되, 큰 기업일수록 피해 감수능력과 피해 분산 능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가의 정도는 낮추는 합리적 설계가 가능
 - 특정 피해규모(1억원)까지는 100% 보상하고, 피해규모 증가에 따라 지원액은 증가시키되 증가율은 낮춰, 4억원의 피해는 2억원, 10억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3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접근방법
 -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급의 시장 평균피해로 1조원 영업이익 감소가 확인된다고 해도 해당 수식을 적용하면 10억원 수준의 보상금액이 결정되어 수용성은 높이고 부작용은 낮출 수 있음

-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들도 이처럼 절벽형 설계를 유연한 연속형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

[그림 VI-1] 단계형-연속형 정책 설계의 예시: 손실보전금 개선안 설계



주: 지원액 = 평균피해규모, 평균피해규모 ≤ 100,000,000

지원액 = 10,000 × √평균피해규모, 평균피해규모 ≥ 100,000,000

자료: 장우현·김우현(2022)

- SIMS 기준 중소기업 지원금액이 2023년 41조원에 달하는 반면, 명시적인 중견기업 지원금액은 2024년 기준 405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SIMS의 포괄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격차로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제고하고 중견기업의 성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은 규모에 따라 점감하되 중견기업 진입 시 충격은 되도록 줄이도록 정책 설계를 개선할 필요

나. 중견기업정책의 대상과 규모 조정 필요

- 중견기업정책은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비해 규모나 설계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 외부효과가 높은,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규모는 패키지화하여 지원할 필요
 - 경쟁력이 높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대상을 선정하거나, 파편화하여 지원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과 마찬가지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원샷법)과 같이 성장 및 구조조정 계획을 심의하고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입법단계까지 목표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공급 과잉업종의 기업들이 변화를 추구할 때 변화 계획을 받아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운사이징과 전환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공정거래, 규제 차등화 등의 정책을 기업 신청에 따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음²⁹⁾
 - 중소기업을 유지하겠다는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시장 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정책성과를 기대 가능함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장사다리 기능 보완 필요

가. 지원 파편화 개선

- 현재 중소기업 정책 지원 조준을 평가한 결과, 사업의 수와 지원기업의 수가 과도하여 실제 지원금액이 파편화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을 기대하기 힘든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 적절한 규모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은 정량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의 선택과 집중도를 개선하여 지원 파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9) 「기활법」이 축소를 지원한다면, 새로운 법은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여 완결성을 기할 수 있음

- 참고로 2021년 소기업 1개당 지원금액은 2,500만원, 중기업 1개당 지원금액은 1억 4,800만원에 그쳐, 총매출 대비 각각 2.05%, 1.01%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원기업에 한정하여 살펴보아도 매출액 대비 지원액이 소기업은 3.49%, 중기업은 1.63%에 그쳐 효과를 보기에 지나치게 과소함

〈표 VI-1〉 기업규모별 지원금액 비중

(단위: 백만원, %)

연도	규모별	매출액	총자산	지원금액	총매출 대비 지원금액	총자산 대비 지원금액
2021	소기업	666,600,000	1,008,000,000	25.42	2.05	1.36
2021	소상공인	94,901,489	130,400,000	35.22	2.87	2.09
2021	중견기업	1,109,000,000	1,316,000,000	36.75	0.02	0.02
2021	중기업	1,219,000,000	1,216,000,000	148.8	1.01	1.01

나. 지원 적합도 개선

- 세부 분야는 물론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규모가 큰 온렌딩,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의 사업에서 낮은 지원 적합도가 확인되는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됨
 - 7조 8천억원 규모로 가장 큰 세부 사업인 온렌딩대출은 2019년 지원 적합도가 -45.66으로 심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 고수익성 기업이 아닌 저수익성 기업에 조준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부가가치, 규모 측면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에게 조준된 지원은 명확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반면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조준된 지원은 성장과 부가가치에 도움이 되므로, 정책 조준 변경 필요
 - 수익성 상위 50%에 지원되는 지원을 70%, 하위 50%에 지원되는 지원을 30%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제언함(적합도 지표 기준 40)
 - 해당 지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세부 분야, 세부 사업별로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충족되는 사업의 예산을 증가시킬 필요
 - 참고로 상위 하위 기준 총자산영업이익률 중간값은 6~7%로 높지 않으며, 금융이나 유통처럼 산업 특성상 낮을 수 있는 경우는 산업 중간값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함

〈표 VI-2〉 연도별 상위, 하위 총자산영업이익률 기준

	상위 50% 총자산영업이익률 기준
2017	7.07%
2018	6.83%
2019	6.60%
2020	6.37%
2021	6.56%
2022	6.17%

참고문헌

- 곽관훈,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및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중견기업연구』 제10권 제1호, 2023.
- 권중호·곽관훈·권용수, 『중견기업 특별법령 입법효과 분석 및 개정방향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11.
- 김성태, 「중견기업법의 제정과 상시화에 대한 소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중견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4. 8, pp. 14-16.
- 김한준 외, 「국내 중견기업의 특성분석과 발전방안」, 한국기술혁신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2007. 11, p. 124.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2021.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알기 쉽게 풀어쓴 중견기업 범위해설」, 2022. 2, p. 4.
- 이종영·김성천·백옥선·김송옥·박기선,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3.
- 장우현, 『중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지원사업 개편방안 연구』, 기획재정부·KDI, 2017.
- 장우현, 『일자리 재정정책의 효과성 개선을 위한 제언』, 『재정포럼』 2019년 1월호 현안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장우현,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장우현·김우현, 『긴급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연구보고서 22-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장우현·양용현·우석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 KDI 연구보고서, 2013.
- 장우현·우석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I』, KDI 연구보고서, 2014.
- 조병선·김보수·권용수,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연구』, 중견기업연구원, 2021.
- 중소기업중앙회, 「023년 중소기업현황」, 2023. 1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한국평가데이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제공 데이터베이스, 2024.

웹페이지: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0, 접속일:
2024. 8. 1.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연구